

계약 분야 법령 가이드

silmu.kr — 공무원 실무 법령 가이드

수록 토픽 57건 · 생성일 2026-06-04

본 자료는 공무원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관할 기관·법무담당관·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추가계약 한도
2. 선금(선급금)
3. 입찰공고
4. 입찰보증금
5. 입찰
6. 유찰 후 수의계약
7.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8. 적격심사
9. 준공 후 대금지급 전 서류 체크리스트
10. 공사 준공검사
11. 계약금액 조정 사유
12. 계약체결
13. 계약보증금
14.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15. 계약기간 연장 절차
16. 계약해제·해지
17. 원가계산 체계
18. 하자보증
19. 설계변경
20. 직접생산확인
21. 2인 이상 견적
22. 전자입찰
23. 전자입찰 오류 대응 FAQ
24. 긴급수의
25.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계약
26.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27. 예정가격
28. 펜스 설치 계약
29. 물품선정위원회
30. 물품구매 vs 용역계약 구분
31. 검수·검사
32. 공동도급
33. 지체상금
34. 장기계속계약
35. 낙찰하한율
36.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종합쇼핑몰
37. 복수예비가격
38.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39. 대금지급
40. 지체상금 감면 절차
41. 이행보증
42. 물가변동
43. 수의시담
44. 수의계약
45. 수의계약 금액
46.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47. 수의계약 한도
48. 공공조달 개론
49. 적격심사 탈락 사유
50. 비교견적서 수집 방법
51. 1인견적
52. 소액수의
53. 규격가격 분리입찰

- 54. 분할계약 금지
- 55. 분할발주 금지
- 56. 하도급
- 57. 단가계약

1. 추가계약 한도

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증감 공사량은 계약단가 규칙으로 조정하며, 한도 회피용 분할 발주는 금지

법령 기준일: 2026.06.03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22조) →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집행기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합니다. **오해 주의**: 설계변경 조정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 이내'라는 단일 증액 상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증감된 공사량을 단가 규칙(계약단가 원칙)으로 조정하며, 일부 경우 단체장 승인·심사 절차가 추가됩니다(아래 시행령 참조).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조정 원칙**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시행령 제74조제1항).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적용합니다. **단가 적용 기준 (시행령 제74조제4항)** | 구분 | 적용 단가 |-----|-----| | 증감 공사량 |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 | | 신규 비목 | 설계 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요구 | 설계 변경 당시 단가와 그 단가×낙찰률 범위에서 협의(불성립 시 [단가 + 단가×낙찰률] × 50/100) | **저가낙찰 공사 증액 승인 (시행령 제74조제3항)**: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을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증액 조정금액(누계)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기준** -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로 인한 변경은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4조제2항). -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감액 조정합니다(제74조제5항). - 증액 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적법성을 심사합니다(제74조제8항). - 제조·용역 계약도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제74조제9항).

시행규칙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절차 1단계: 설계변경·물량 증감 사유 발생 및 확인 2단계: 변경 내역·단가 산정 (계약단가 원칙,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3단계: (저가낙찰 공사 증액분 10% 이상 등) 필요 시 단체장 승인·적법성 심사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요 시 준공기한 연장) **감사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는 증액, 단가 규칙 위반, 발주기관 귀책 변경에 계약상대자 불리한 단가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조정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위반으로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정 시 검토사항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사유 확인** | 물가변동·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법 제22조 사유에 해당하는가? | | **단가 확인** | 증감 공사량에 계약단가(또는 규정 단가)를 정확히 적용했는가? | | **승인 확인** | 저가낙찰 공사 증액분이 원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단체장 승인을 받았는가? | | **예산 확인** | 증액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

실무 해설

추가계약 한도 실무 가이드 ### 10% 한도 계산 방법 **계산식**: 추가계약 한도 = 당초 계약금액 × 10% **예시 1: 공사계약** - 당초 계약금액: 1억원 - 추가계약 한도: 1,000만원 (10%) - 최종 계약금액: 최대 1억 1,0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 당초 계약금액: 5,000만원 - 추가계약 한도: 500만원 (10%) - 최종 계약금액: 최대 5,500만원 --- ## 추가계약 vs 신규 입찰 판단 ### 추가계약 가능 (10% 이내) **사례**: - 공사 중 지반 상태 불량으로 추가 터파기 필요 (8% 증액) - 물품 수량이 예상보다 많아져서 5% 추가 구매 - 용역 범위가 확대되어 7% 추가 조사 **실무 팁**: - 10%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 견적서 제출 + 단가 적정성 검토 필수 --- ### 신규 입찰 필요 (10% 초과) **사례**: - 설계 대폭 변경으로 15% 증액 필요 - 당초 계약에 없던 새로운 공종 추가 - 물품 사양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 **실무 팁**: - 10% 초과 시 새로운 입찰 공고 진행 - 추가계약으로 임의 증액 시 감사 지적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0% 한도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A: 네,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1억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면 추가계약 한도는 1,100만원입니다. **Q2. 추가계약을 2번 나눠서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누적 금액이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차 5% + 2차 5% = 10% OK) **Q3. 추가계약 시 새로 입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추가계약은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Q4. 감액도 추가계약인가요? A: 네, 계약금액을 줄이는 것도 추가계약(변경계약)입니다. 감액은 10%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Q5. 10%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사 지적을 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계약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규 입찰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추가할 때 한도가 있나요?

A. 네. 추가계약(설계변경·물량 증감 등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은 법령·집행기준에 정해진 한도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의 신규 계약(수의계약 요건 검토 또는 경쟁입찰)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한도 비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확인하세요.

Q. 물가변동 증액분도 추가계약 한도에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분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분과 별도로 관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두 사유를 합산해 단일 한도로 보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상대자(시공사) 잘못으로 생긴 추가 공사도 계약금액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추가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의 지시, 설계도서 오류, 현장 조건 변경 등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인한 변경만 계약금액 증액 대상입니다.

Q. 추가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공사를 나눠 발주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물을 인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위반으로 감사원 지적 및 담당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정식으로 별도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additional-contract-limit>

2. 선금(선급금)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의 지급 요건, 요율, 정산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사·용역·물품 계약별 선금 한도와 사용 제한, 환수 기준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의 지급 비율·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법률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구체적인 지급 비율·방법·정산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강제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시행규칙 제56조~제58조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제65조 (선금 지급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 (선금 지급 비율)** 선금 지급 비율 (계약금액 대비) | 계약 유형 | 선금 지급 한도 | |-----|-----| | 공사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계약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학술·연구 | 계약금액의 50% 이내 | 선금 지급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선금 사용 제한)**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임 지급 2. 자재 구입 3. 외주비 지급 4. 그 밖에 계약 이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선금 정산)** 선금은 기성금(기성대가) 지급 시 정산하되, 정산 비율은 지급된 선금 비율 이상으로 한다.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선금 미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실무) ### 선금보증서 제출 요건 선금 지급 전 계약상대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금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선금)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기타 공제조합 | 선금이행보증서 | ### 선금 정산 방법 - **기성 청구 시** :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 후 지급 - **예시** : 선금 30% 지급 → 기성 청구액의 30% 차감 - **최종 기성** : 선금 잔액 전액 정산 후 지급 ### 선금 지급 절차 1. 계약상대자 선금 지급 신청서 제출 2. 선금보증서 확인 (보증액 = 선금 지급액) 3. 지급 결의 → 선금 지급 4. 기성 청구 시 정산(차감) 5. 준공 전 선금 전액 정산 완료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선금 지급 후 공사 미착수 방치 → 선금 회수 곤란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확인 소홀 → 보증 공백 선금 정산 누락 → 이중 지급 선금 한도 초과 지급 → 예산 부당 집행 실무 적용 포인트 선금(선급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선금 지급 한도: • 공사·제조: 계약금액의 70% 이하 • 물품 공급: 계약금액의 50% 이하 • 용역: 계약금액의 30% 이하 선금 지급 조건: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을 때 • 선금보증서 제출 (선금액과 동일 금액) • 공사는 착공 전까지 지급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 계약 이행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필요 선금 정산 방법: • 기성금·준공금 지급 시 선금을 공제하여 지급 • 정산 비율: 기성금 지급액 ÷ 계약금액 × 선금액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선금 7천만원, 1차 기성 3천만원 청구 시: → 정산액 = 3천만원 ÷ 1억원 × 7천만원 = 2,100만원 → 실제 지급액 = 3천만원 - 2,100만원 = 900만원 중요: 선금을 지급했는데 공사가 장기간 미착수되면, 선금보증서를 청구하여 선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선금 지급 후 방치하면 예산 부당 집행으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선금 지급 후 공사 미착수 상태 장기 방치" (관리 소홀) • "선금 정산 누락으로 이중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선금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선금은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신청하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소규모 계약이나 단기 계약은 통상 선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 선금보증서 없이 선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서 없이 지급하면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선금이행보증서를 제출한 후 지급합니다.

Q. 선금을 다른 공사에 유용하면?

A. 선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타 공사 유용, 대표자 개인 사용 등은 계약 해지 사유이며, 선금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선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성금 청구 시 선금 지급 비율만큼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에 선금 30%(3천만원)를 지급했다면, 기성금 청구 시마다

청구액의 30%를 차감 지급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advance-payment>

3. 입찰공고

입찰공고 작성 방법, 법정 공고기간, 필수 기재사항, 재공고·긴급공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 입찰공고의 법률적 근거 - **공고 의무:**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야 함 - **공고 방법:** 나라장터(G2B) 전자공고가 원칙 - **공고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시행령 제16조) > 입찰공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 관련 조항 - **제9조의2 (입찰의 무효):** 적법한 공고 없이 실시한 입찰은 무효 - **제10조 (입찰의 성립):** 공고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2인 이상 참가 시 성립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입찰공고) ### 공고기간 | 추정가격 | 최소 공고기간 | |-----|-----| | 10억원 미만 | **7일** 이상 | 10억원~50억원 미만 | **15일** 이상 | 50억원 이상 | **40일** 이상 | 긴급입찰 | **5일** (사유 명시) | ※ 기간 산정: 공고일·입찰일 제외, 역일() 기준 ### 제16조의2 (재공고입찰) 유찰 후 재공고 시: - 재공고 기간: **최초 공고기간의 절반** 이상 (최소 5일) - 입찰조건은 최초 공고와 **동일**해야 함 - 재공고에도 유찰 → 수의계약 전환 가능 ### 공고 매체 - **의무:** 나라장터(G2B) 전자공고 - **추가:** 관보, 일간신문, 해당 기관 게시판 (필요 시)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나라장터 공고 생략 가능 ### 긴급입찰 (제16조 제3항) 다음 경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 가능: - 천재지변, 전시, 사변 - 긴급한 행정 필요 - 국가안보 관련 사항 - **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해야 함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공고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입찰 건명 | 사업명, 품명, 공사명 | | 입찰·개찰 일시 | 마감일시, 개찰일시 | | 참가자격 | 면허, 실적, 지역 제한 등 | | 입찰보증금 | 금액, 납부 방법 | | 낙찰 방법 | 최저가/적격심사/협상 | | 이행기간 | 납품기한, 공사기간 | | 현장설명 | 일시, 장소 (해당 시) | | 설계서·규격서 | 열람·다운로드 방법 | ### 공고 변경·취소 - 입찰공고 후 조건 변경 시: **변경공고** 필수 - 변경공고 기간: 변경내용 반영 후 **당초 공고기간 이상** 재확보 - 공고 취소 시: 취소 사유 및 향후 계획 공지 ### 주의사항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고하면 안 됨 규격서에 특정 상표·브랜드명 기재 금지 (동등 이상 표기 가능) 불필요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경쟁 제한 금지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공고기간 부족 (7일/15일/40일 미준수) →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 경쟁 저해로 감사 지적 공고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 불일치 → 입찰자 민원 발생 규격서·설계도서 공개 누락 → 정확한 견적 산출 불가 실무 적용 포인트 입찰공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으로 최소 공고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찰공고 기간: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 15일 이상 • 추정가격 50억 이상: 40일 이상 • 긴급입찰: 5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공고 필수 기재사항: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규격, 수량 등) •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 입찰참가자격 (면허·등록·실적 등) • 입찰보증금 •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적격심사·협상에 의한 낙찰 등) • 계약이행 조건 (선금·기성금·준공기한 등) 중요: 입찰참가자격은 사업 수행 능력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특정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면 공정 경쟁 저해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서·설계도서는 입찰 공고와 함께 공개해야 하며,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에 첨부 파일로 게시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로 입찰 무효" (절차 위반) • "특정 업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자격 제한" (경쟁 저해) • "공고 내용과 계약서 조건 불일치" (공고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공고 기간은 최소 며칠인가요?

A. 추정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미만: 7일, 10억~50억원: 15일, 50억원 이상: 40일 이상입니다. 긴급한 경우 5일까지 단축 가능하나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재공고 시 공고기간은?

A. 최초 공고기간의 절반 이상이며, 최소 5일 이상입니다. 예: 최초 15일 공고 → 재공고 8일 이상.

Q. 입찰공고 후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변경공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변경 내용 반영 후 공고기간을 재산정해야 하며, 기존 참가등록 업체에 변경사항을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Q. 긴급공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긴급한 행정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연말 예산 집행이나 단순 업무 편의를 위한 긴급공고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4. 입찰보증금

경쟁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입찰보증금의 요율, 납부 방법, 면제 요건, 귀속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속 기준과 반환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1조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1조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및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위임 체계 법률은 입찰보증금 납부 권한과 귀속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납부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국채·공채 - 금융기관 보증서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 - 보험증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2. 중소기업자 단체(중기협동조합) 계약 3. 입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 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 전자보증서로 대체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보증금 실무) ### 입찰보증금 납부 실무 | 구분 | 기준 | |-----|-----| 납부 비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납부 시기 |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전자보증서) | 반환 시기 | 입찰 결과 확정 후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 ### 귀속 vs 반환 판단 기준 **귀속 사유 (몰수):**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 입찰 담합 적발 **반환 사유:**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 전원 -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계약 불가 낙찰자 - 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 미체결 ### 전자입찰 시 보증 처리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의 경우: - 보증기관에서 전자보증서 발급 - G2B 시스템에 자동 연동 - 낙찰 확정 후 자동 반환/귀속 처리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혼동 → 시기·목적 착오 낙찰자가 계약 포기 시 보증금 반환 → 국고 귀속해야 함 소액 입찰도 무조건 징수 → 불필요한 업체 부담 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 미확인 → 보증 효력 상실 실무 적용 포인트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낙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찰보증금 vs 계약보증금: • 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 → 낙찰 후 계약 체결 보장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 → 계약 이행 보장 입찰보증금 요율: • 추정가격의 5% 이상 • 소액 입찰: 면제 가능 (기관별 기준, 보통 5천만원 미만) 납부 방법: • 현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납부) • 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 보증보험증권 입찰보증금 반환: • 낙찰되지 않은 자: 개찰 후 즉시 반환 • 낙찰자: 계약 체결 후 반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몰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전자입찰의 경우: 나라장터(G2B)에서는 전자보증서로 자동 처리되며, 입찰 참가 신청 시 보증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중요: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자격이므로, 미납 시 입찰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낙찰자 계약 포기 시 입찰보증금 반환" (국고 귀속 누락) • "입찰보증금 미징수 상태에서 입찰 진행" (절차 위반) •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입찰 참가 인정" (보증 효력 상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보증금은 얼마나 내나요?

A.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입찰한다면 500만원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됐는데 계약 안 하면?

A.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몰수)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천만원 이하 소액 입찰도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 입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입니다. 입찰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낙찰 안 된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A. 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됩니다. 전자보증서의 경우 G2B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5. 입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경쟁입찰의 종류, 절차, 참가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입찰의 법률적 위치 - **원칙:****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제9조 제1항) - ****예외 1:**** 제한경쟁·지명경쟁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13~24조) - ****예외 2:**** 수의계약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25~26조) & 국가계약법 제7조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며,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명시 **### 관련 조항 - **제9조의2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은 무효 - ****제10조 (입찰의 성립):****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이어야 성립 - ****제13조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원칙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입찰 관련 조항 ### 제13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업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출 것 2. ****보안측정**** 등 필요한 인증을 받을 것 3.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 아닐 것 **### 제14조 (제한경쟁입찰) | 제한 사유 | 내용 |-----|-----| 실적 제한 | 동종·유사 계약 이행 실적 | 기술능력 제한 | 특수 기술·설비 보유 | 지역 제한 | 추정가격 일정액 이하 시 관할 지역 업체 | 재무상태 제한 | 신용등급, 자본금 등 | ### 제15조 (지명경쟁입찰) 지명경쟁은 다음 경우에 한정: - 계약의 성질·목적상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확보 필요 **### 제16조 (입찰공고) | 추정가격 | 공고기간 |-----|-----| 10억원 미만 | ****7일**** 이상 | 10억원~50억원 미만 | ****15일**** 이상 | 50억원 이상 | ****40일**** 이상 | 긴급입찰 | ****5일**** (사유 명시) | **### 제18조 (입찰의 성립과 유찰) - 입찰자 ****2인 이상**** 참가해야 입찰 성립 - 1인만 참가 → 유찰 → ****재공고입찰**** -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 → 그 1인과 ****수의계약**** 가능 **### 제20조 (낙찰자 결정) | 낙찰 방식 | 적용 대상 |-----|-----| 최저가 낙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용역 | 적격심사 낙찰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300억원 미만 공사 | 종합심사 낙찰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중심 용역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4장 경쟁입찰 — 공고 사항 입찰공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품명, 수량, 규격)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4.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 방법 6. 계약의 ****이행기간**** 7. 예정가격 작성 여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 나라장터(G2B)에 등록 필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보증서 등) - 입찰 무효 사유: 자격 미충족, 보증금 미납, 담합 등 **### 개찰 및 낙찰 - 개찰은 **입찰 마감 즉시** 실시 - 전자입찰은 시스템 자동 개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 발송 → ****10일 이내**** 계약 체결**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입찰공고 기간 부족 (7일/15일/40일 기준 미준수) → 입찰 무효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 경쟁 저해로 지적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지연 → 계약 포기 위험 예정가격 사전 누설 → 형사처벌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원칙적인 계약 방법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이 기본이며, 제한경쟁·지명경쟁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 10억원 미만: 7일 이상 • 10억~50억 미만: 15일 이상 • 50억 이상: 40일 이상 입찰 참가자격은 사업 수행 능력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특정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제한하면 경쟁 저해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예정가격은 절대 사전 누설 금지입니다 (형법 제129조 적용 가능). 감사 지적 패턴 •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로 입찰 무효" (절차 위반) • "특정 업체만 참가 가능하도록 과도한 자격 제한" (공정 경쟁 저해)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차이는?

A. 일반경쟁입찰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고, 제한경쟁입찰은 실적·기술·지역 등의 조건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원칙은 일반경쟁이며,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

Q. 입찰이 유찰되면 어떻게 하나요?

A. 1인만 참가하거나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찰됩니다. 유찰 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1인만 참가하면 그 1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Q. 입찰공고는 최소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A. 추정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50억원은 15일, 50억원 이상은 4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5일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Q.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사용해야 하나요?

A.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이 의무입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은 나라장터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률(투찰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투찰 금액의 비율입니다. 최저가 낙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물품), 86% 이상(공사)이면 낙찰 가능합니다. 적격심사의 경우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bidding>

6. 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요건, 절차,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유찰 후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2회 이상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즉, **경쟁입찰을 2회 실시했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회 유찰 후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1회 입찰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입찰자 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낙찰자 없음:** 입찰자가 있었으나 낙찰기준을 충족한 자가 없는 경우 > **실무 핵심:** 2회 유찰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1회 유찰 후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관련 조항 | 조문 | 내용 | |-----|-----| |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의 기본 요건 | | 시행령 제26조 제2항 | 1인 입찰 등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한 특례 | | 시행령 제19조 | 재공고 입찰 절차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수의계약 운용 기준 |

시행령

유찰 후 수의계약 — 시행령 기준 절차 ### 유찰 판단 유형 | 유찰 유형 | 내용 | 수의계약 전환 가능 시점 | |-----|-----| |-----|-----| | **입찰자 없음** | 입찰 마감까지 입찰자가 없는 경우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낙찰자 없음** | 입찰자는 있으나 낙찰기준 미충족 | 2회 유찰 후 (또는 1회 후 즉시) | | **1인 입찰**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 | **낙찰자 계약 포기**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 차순위자 협의 또는 재공고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 표준 절차: 2회 유찰 → 수의계약 **1단계:** 1차 입찰 공고 (공고기간: 입찰마감일 7일 이상 전) **2단계:** 1차 입찰 유찰 확인 (입찰자 없음 또는 낙찰자 없음) **3단계:** 재공고 (1회 유찰 시 재공고 — 공고기간 단축 가능) **4단계:** 2차 입찰 유찰 확인 **5단계:** 수의계약 전환 결재 (수의계약 요건 확인 및 결재 상신) **6단계:** 견적 요청 (2인 이상 견적 징구 원칙) **7단계:** 수의계약 체결 ### 특례: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 가능 요건 | 특례 요건 | 세부 내용 | |-----|-----| | **1인 입찰** | 적합한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 **전문성·기술력** | 해당 물품·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임을 증명 | | **긴급성** | 지체 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별도 요건) | ### 수의계약 전환 후 견적 징구 기준 | 추정가격 | 견적 징구 방법 | |-----|-----| |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1인 견적 후 구매 가능 — 지자체 예규에 따라 다름) | | **2,000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 반드시 징구 | | **특수한 경우** | 유일 공급자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요건 확인 필요) |

시행규칙

유찰 후 수의계약 실무 처리 기준 ### 재공고 시 주의사항 **재공고 공고기간 단축 가능:** - 일반 입찰: 7일 이상 - 재공고 시: **5일 이상**으로 단축 가능 **재공고 내용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가능한 항목 | 변경 불가한 항목 | |-----|-----| | 입찰 방법 (일반→제한) | 계약 목적물·내용·규격 | | 공고기간 단축 |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 | |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 예정가격 (재산정은 가능) | ### 수의계약 전환 결재 서류 수의계약 전환 시 아래 서류를 결재서류에 포함: 1. **유찰 경위서:** 유찰 일시, 입찰자 수, 유찰 사유 2. **수의계약 사유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해당 근거 3. **견적 징구서:** 2인 이상 견적 징구 결과 4. **계약서 초안:** 수의계약 조건 ### 유찰 후 수의계약과 분할계약의 관계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주의사항: - 유찰된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에 해당 - 동일 목적물은 동일 건으로 유찰 처리 후 동일 건으로 수의계약 전환 - 일부만 발주하고 나머지를 별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분할계약 위험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1회 유찰 후 즉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재공고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재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 일부 완화, 공고기간 단축(5일 이상), 입찰 방법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계약 목적물의 규격, 설계서·내역서의 핵심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수의계약 전환 후에도 견적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징구해야 합니다. 공급 가능한 업체가 1인뿐인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확인한 후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유찰 후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유찰 사유가 예정가격의 현실성 부족이라면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재산정 후 재공고하거나, 재산정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합니다.

Q.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면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즉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업체와 협의하거나 새로운 견적을 징구하여 계약합니다.

7.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부정당업자는 1~2년 입찰 참가 제한. 부실 시공, 담합, 뇌물 등 13가지 제한 사유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법을 위임 구조** 법률(제31조) → 시행령(제92조) → 집행기준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의 구체적 사유와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최대 2년) | 위반 사유 | 제한 기간 | 비고 | |-----|-----|-----| | **부정당업자 (중대)** | 2년 | 담합, 뇌물, 허위 서류 | | **부정당업자 (일반)** | 1년 |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 | **부정당업자 (경미)** | 6개월 | 경미한 부실, 지연 | **중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으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가 불가**입니다. (나라장터 통합 관리) ### 13가지 제한 사유 담합, 뇌물, 허위 서류,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물품 불량, 용역 부실, 하도급 부정, 안전사고, 환경오염, 대금 편취, 기타 부정행위, 제재(가중)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 제재 절차 (5단계) 1단계: 위반 사실 적발 2단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7일) 3단계: 심의위원회 개최 4단계: 제재 결정 통보 5단계: 나라장터 등록 (전국 적용) **소명 기회 필수** 제재 전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명 없이 제재 시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한 기간 중 금지 사항 입찰 참가 불가, 계약 체결 불가, 공동 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우회 계약 적발 시** 법인 명의 변경, 대표자 변경 등으로 제한을 우회하다 적발되면 **2년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실무 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실무 가이드 ### 제재 수준별 기준 ** 2년 제한 (중대 위반):** 입찰 담합, 뇌물 제공, 허위 서류, 중대 재해, 공사비 편취 ** 1년 제한 (일반 위반):**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물품 불량, 무단 하도급 ** 6개월 제한 (경미 위반):** 경미한 부실, 납기 지연, 서류 미제출 --- ## 부정당업자 조회 방법 **나라장터 조회 (필수):** 1. 나라장터 접속 (www.g2b.go.kr) 2. 정보마당 > 부정당업자 현황 3. 업체명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 4. 제재 기간 확인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재 기간 중 기존 계약은?** A: 제재 전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재는 신규 입찰 참가만 제한합니다. **Q2. 대표자 변경 시 제재 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제재는 법인에 부과되므로 대표자 변경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Q3.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1명이 제재받으면?** A: 공동 수급체 전체가 입찰 참가 불가입니다. **Q4. 제재 기간 만료 후 즉시 입찰 가능한가요?** A: 네, 제재 종료일 다음날부터 즉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Q5. 제재 이력은 영구 기록되나요?** A: 나라장터에 5년간 보관되며, 이후 삭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얼마나 받나요?

A.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됩니다. 담합·뇌물·허위서류 등 중대 위반은 2년, 부실시공·계약 불이행 등 일반 위반은 1년, 경미한 위반은 6개월 등 사유별로 기간이 정해집니다(시행령 제92조).

Q. 한 기관에서 제재받으면 다른 공공기관 입찰도 막히나요?

A. 네. 부정당업자 제재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되며,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공동수급·하도급 참여도 제한됩니다. 발주기관은 개찰 전 낙찰예정자의 부정당업자 이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Q. 제재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쟁송 대상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일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재 전 반드시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소명 없이 제재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법인 명의를 바꾸면 제재를 피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제재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법인 단위로 부과되어 면허·등록 양도나 대표자 변경만으로 회피되지 않으며, 합병 시 존속 법인에 승계됩니다.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분할이 적발되면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bid-participation-restriction>

8. 적격심사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자가 아닌 가격·이행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사·물품·용역별 평가 기준과 낙찰하한율을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적격심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원칙은 최저가 낙찰이지만, 계약의 성질·규모에 따라 "적격심사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6조 (적격심사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 다음 각 호의 계약은 적격심사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 유형 | 적용 기준 |-----|-----| | 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해당 요건 충족 시) |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적격심사는 이행능력(시공능력, 경영상태), 가격, 신인도를 종합 평가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적격심사 기준)** 적격심사는 다음 항목을 평가한다. **공사 적격심사 배점:** - 이행능력 (시공경험, 기술인력, 시공평가결과): 30~40점 - 입찰가격: 50~60점 - 신인도 (사회적 책임, 계약이행 실적): ±5점 **물품·용역 적격심사:** -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평가 - 해당 분야 납품·용역 수행 실적 확인 낙찰하한율: 공사 87.745%~88%(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추정가격 구간 | 낙찰하한율 |-----|-----| | 10억원 미만 | 87.745% | | 10억~50억원 미만 | 87.745%~88% | | 50억~300억원 미만 | 88% | ### 적격심사 절차 1.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위별 심사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 3. 이행능력·가격·신인도 종합 평가 4. 합격 점수 이상(공사 95점 (100억 미만 기준), 물품·용역 92점) + 낙찰하한율 이상 → 낙찰 5. 미달 시 차순위자 심사 ### 자주 혼동하는 개념 -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 (단순) - **적격심사제**: 최저가 입찰자의 능력·실적 심사 후 낙찰 -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적용 (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가치 종합)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최저가낙찰과 적격심사 구분 착오 → 낙찰 방식 오류 적격심사 기준 공고 누락 → 입찰자 민원 심사 기준과 다르게 평가 → 낙찰 무효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미준수 → 절차 하자 실무 적용 포인트 적격심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가격과 품질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최저가가 아닌 종합적인 적격성을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추정가격 기준): • 공사: 3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용역(건설기술용역): 2억원 이상 • 물품: 일반적으로 최저가, 예외적으로 적격심사 가능 적격심사 평가 항목: • 가격 (입찰가격 적정성) • 시공능력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 이행실적 (유사 실적, 하자 이력) • 시공계획 (공정·품질·안전 관리계획) 적격 판정 기준: • 총점 85점 이상 → 적격 • 85점 미만 → 부적격 (차순위자 심사) 낙찰자 결정 방법: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적격 판정을 받으면 낙찰 부적격이면 차순위자 심사 (최대 3순위까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5~9인) • 외부 전문가 2/3 이상 (공정성 확보) • 관련 분야 전문가 (건축사, 기술사, 교수 등) 중요: 적격심사 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해야 하며, 공고하지 않은 기준으로 평가하면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0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별도 기준). 감사 지적 패턴 • "적격심사 기준 미공고 상태에서 낙찰" (절차 위반) • "공고한 기준과 다르게 평가" (낙찰 무효 사유) • "외부 전문가 비율 미준수" (위원회 구성 부적정)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하한율이 뭔가요?

A.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능한 최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하한율 87.745%라면, 예정가격 1억원 공사에서 87,745,000원 이상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면 낙찰 불가입니다.

Q.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A. 적격심사 점수 미달(공사 95점 미만 (100억 미만 기준), 물품·용역 92점 미만) 또는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다음 순위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모든 입찰자 탈락 시 유찰 처리됩니다. 구체적 합격 점수는 행안부 고시(낙찰자 결정기준)를 확인하세요.

Q. 물품 구매에도 적격심사가 있나요?

A.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실적, 납품능력, 신용도 등을 평가합니다.

Q.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는 언제 쓰나요?

A.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시공계획, 품질관리 등)과 사회적가치(고용, 안전 등)까지 종합 평가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bid-qualification>

9. 준공 후 대금지급 전 서류 체크리스트

공사 준공 후 대금지급 전 필수 서류 목록. 수의계약(1인/2인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름

법령 기준일: 2026.06.03

법률

지방계약법 제18조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검사를 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선금급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3원칙** 1. **서류 완비** → 2. **검사 합격** → 3. **기한 내 지급**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검사 개시 불가, 대금 지급 불가입니다. --- ## 지방계약법 제17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소액 계약 등은 생략 가능).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검사 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 | 구분 | 검사 기한 | |-----|-----| | **원칙(공사·물품·용역)** | 14일 이내 | | **재난·경제위기 고시 시** | 7일 이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검사를 못 하면 사유 소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 시정 완료 통지일로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재난·경제위기 고시 시 3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둘 수 있습니다. 기성 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합니다.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대가 지급 지연 이자)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공사 계약은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금률은 공종별로 시행령 별표 및 계약서에서 정하며, 소액 공사 등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준공 서류 체크리스트 (유형별) ### 공통 필수 서류 (모든 공사)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준공계 (준공신고서) | 계약상대자 | 법정 양식 또는 계약서상 양식 | 공사 완료 현장 사진 | 계약상대자 | 착공 전·후 비고 | | 세금계산서 | 계약상대자 |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 --- ### 수의계약 (1인, 2천만원 이하) 추가 서류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견적서 (원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했던 견적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 후 보관 | | 통장 사본 | 계약상대자 | 대금 입금 계좌 확인 | --- ### 건설업 면허 필요 공사 추가 서류 | 서류명 | 제출 주체 | 비고 | |-----|-----|-----| | 건설업 등록증 사본 | 계약상대자 | 계약 시 제출 후 보관 | | 건설업 면허 적합 확인 | 담당자 | 해당 공종 면허 보유 여부 | | 안전관리비 집행 실적 | 계약상대자 | 1억원 이상 시 필수 | ---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서류 | 서류명 | 내용 | 비고 |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 현금 납부 영수증 | 보증금 납부 확인 | | 하자보수보증서 | 보증보험 증권 | 서울보증보험 등 | | 하자보수보증금 계산 내역 | 담당자 작성 | 금액·기간 명기 | --- ### 준공검사 담당자 지정 여부 (시행령 제65조) **원칙: 계약담당자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준공검사는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공무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검사담당 공무원 별도 지정 (결재문서 또는 내부 지정서 작성) | | **소액 예외** | 행안부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소액 계약은 계약담당자 직접 검사 허용 | | **주의** | 소액 기준 금액은 소속 기관 계약업무편람·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 **감사 지적 주의** | 계약담당자가 검사까지 직접 수행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 기준 이하더라도 기관 내부 규정상 분리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별도 검사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무 해설

실무 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가이드 ### 준공 처리 흐름 준공신고 접수 → 서류 검토 → 검사 실시 → 검사조서 작성 → 하자보증 확인 → 대금 지급 --- ### 서류 검토 시 주의사항 **1. 세금계산서 확인** - 공급자: 계약상대자 사업자 - 공급받는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번호 정확 여부) - 공급가액 + 부가세 = 계약금액 일치 여부 - 발행일: 준공 신고일 이후 **2. 하자보수 기간 계산** - 기산일: 준공검사 합격일 (검사조서 작성일) - 종료일: 준공검사 합격일 + 하자보수 기간 -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 이상인지 확인 **3. 안전관리비 확인 (1억원 이상 공사)** - 집행 실적표 제출 여부 - 미사용 안전관리비 반환 여부 --- ### 자주 발생하는 문제 **문제 1: 세금계산서 오발행** - 현상: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오류 - 해결: 세금계산서 취소 후 재발행 요청 - 주의: 발행 취소 기한(다음 달 10일) 내 처리 **문제 2: 하자보증 기간 부족** - 현상: 보증보험 만료일이 하자기간 종료일보다 짧음 - 해결: 보증보험 갱신 후 대금 지급 **문제 3: 현장 사진 미제출** - 현상: 착공 전·후 비고 사진 누락 - 해결: 준공신고 반려 후 재제출 요청 --- ### 공사 규모별 서류 요약표 | 공사 규모 | 하자보증 | 안전관리비 | 면허 확인 | |-----|-----|-----|-----| | **2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 불필요 | 500만원 이상 필요 | | **2천만원~1억원** | 필요 | 불필요 | 필요 | | **1억원 이상** | 필요 | **집행 실적 제출** | 필요 | --- ### FAQ **Q1.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대금지급이 안 되나요? A: 네, 세금계산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2. 준공검사

합격 전에 대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 합격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성금은 기성검사 후 지급.
**Q3.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납부와 보증보험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 A: 현금 납부는 하자기간 종료 후 반환받습니다. 보증보험은 매년 보험료 납부이지만 현금 유동성 유지 가능. 업체 선택에 따릅니다. **Q4. 1인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도 하자보수보증금이 필요한가요? ** A: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소액 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5. 준공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 A: 나라장터 서식 자료실 또는 지자체 내부 양식을 사용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양식이 규정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검사 없이 대금을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검사를 완료한 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검사 전 전액 지급은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은 물론 담당자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항이 있으면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준공 후 대금 지급 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준공검사 조서, 준공계산서(최종 정산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확인서, 세금계산서, 준공도서(준공도면·시방서), 각종 시험·검사 성적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야 검사와 대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공사 계약은 준공대금 지급 전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계약 집행 부적정에 해당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는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안 주면 발주기관이 직접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발주기관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원도급사에 통보한 뒤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mpletion-payment-checklist>

10. 공사 준공검사

공사 완료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제출 방법, 검사 기간, 불합격 처리, 준공금 지급까지 실무 흐름 완벽 정리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공사 준공검사)**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는 공사 목적물이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검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준공검사원 접수 후 14일 이내 검사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형 공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 처리 흐름** 1. **공사 완공** → 계약상대자 현장 정리·청소·안전시설 철거 2. **준공검사원 제출** (공사 완성 통지 + 준공검사 신청서) 3. **검사 담당자 지정** (발주기관 내 검사관 또는 검사 위원회) 4. **현장 검사** (설계서·시방서 대조, 규격·수량·품질 확인) 5. **검사 결과 통보** (합격 또는 불합격) 6. **준공금 지급** (합격 후 5일 이내) **준공검사원 제출 서류** | 서류 | 내용 | |----|-----| | 준공검사 신청서 |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 일자 | | 준공내역서 | 설계 변경 내역 포함 최종 수량·금액 | | 사진 대지 | 착공 전·공사 중·준공 후 비교 사진 | | 품질시험 성과표 | 콘크리트 강도, 토질 등 시험 결과 | | 각종 준공도서 | 준공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

시행규칙

준공검사 불합격 및 재검사 **검사 불합격 처리** - 불합격 통보 → 계약상대자 보완·재시공 요청 - 보완 완료 후 재검사 신청 - 재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보완 기간 중 지체상금 산정 (불합격 통보일부부터 재검사 합격일까지) **준공금 지급 기한** | 구분 | 기한 | |----|-----| | 준공검사 완료 → 지급 청구 | 검사 합격 통보 후 즉시 | | 지급 청구 → 대금 지급 |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 | 지연 지급 시 | 지연이자 발생 (지체상금을 적용) | **부분 준공** - 공사 일부가 완성된 경우 부분 준공 처리 가능 -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금 지급 가능 - 전체 준공은 전체 완성 후 별도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준공검사는 며칠 이내에 완료되나요?

A. 발주기관은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준공검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공사 목적물이 설계서·시방서·산출내역서 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Q.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면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준공검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nstruction-completion>

11. 계약금액 조정 사유

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금액 조정) ### 조정 가능 사유 (6가지) 1. **물가변동** :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2. **설계변경** :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3. **관계 법령 변경** : 공사 중 법령 개정 4. **천재지변** : 태풍, 지진 등 5. **불가항력** : 전쟁, 감염병 6. **계약내용 변경** : 수량 증감 **조정 vs 추가계약** - **조정** : 물가·법령 변경 등으로 단가 변경 - **추가계약** : 공사 범위·수량 증가 (10% 한도)

시행령

물가변동 조정 기준 ### 조정 시기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 조정 주기 - **분기별** 조정 권장 - 계약기간 중 수시 조정 가능 ### 조정 범위 - 변동 품목만 조정 (전체 계약금액 변경 아님) - 증가분만 조정 (감소분은 조정 안 함)

시행규칙

조정 절차 (4단계) 1단계: 물가 변동 확인 (통계청 자료) 2단계: 조정 신청서 제출 3단계: 발주기관 검토·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 필수 서류 - 물가 변동 증빙 (통계청) - 조정 산출 내역서 - 계약상대자 견적서

실무 해설

계약금액 조정 FAQ **Q1: 물가 3% 미만이면 조정 안 되나요?** A: 네, 3% 이상 변동해야 조정 가능합니다. **Q2: 조정 주기는?** A: 분기별 조정이 일반적이나, 급격한 변동 시 수시 조정 가능합니다. **Q3: 감소분도 조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증가분만 조정됩니다. 감소 시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Q4: 조정 vs 추가계약 차이는?** A: 조정은 단가 변경, 추가계약은 수량·범위 증가입니다. **Q5: 조정 한도는?** A: 물가조정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계약의 10% 한도와 무관)

자주 묻는 질문

Q.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약 체결(또는 입찰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며,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다시 90일이 지나야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Q.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A. 물가변동(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천재지변·불가항력,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법정 최저임금 인상도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아,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없어도 증가한 인건비 범위에서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정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소급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이행 중에 신청해야 하며,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하지 않은 결과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Q.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진 기간의 물가 상승분도 조정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기간에 발생한 물가변동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한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amount-adjustment>

12. 계약체결

계약 체결 절차, 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 변경·해제·해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체결의 법률적 근거 - **원칙**: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 (제14조 제1항) -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 시 계약서 생략 가능 (제14조 제2항) - **낙찰자**: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의무 ### 관련 조항 - **제1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보증금 납부 - **제19조 (계약의 변경)**: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 변경 가능 (대통령령 범위 내)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체결 관련 조항 ###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계약불이행 시 조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0조 (계약서 작성 생략) 다음 경우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계약서 생략 시에도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 보관 필수 ### 제49조의2 (계약 체결 기한) -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체결 →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발주기관 사유로 지연 시 → 지연일수만큼 이행기간 연장 ### 제65조 (계약의 변경) | 변경 사유 | 내용 | |-----|-----| | 설계변경 |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물가변동 | 물가변동(3% 이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 기타 변경 | 계약 조건, 이행기간 변경 등 | ### 제67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발생 -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 (30일 이상)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첨부서류 | 서류 | 비고 | |-----|-----| | 계약서 (2부) | 발주기관·계약상대자 각 1부 | | 청렴서약서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 날인 | |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분 | | 계약보증금 납입증명 | 또는 면제 확인 | | 산출내역서 | 공사·용역 해당 시 | | 공정예정표 | 공사 해당 시 | | 하도급계획서 | 해당 시 | ### 계약 체결 절차 낙찰통지 → 계약서류 징구 → 계약서 작성 → 계약보증금 납부 → 계약서 날인 → 결재 → 계약서 교부 ### 전자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계약 의무 - 전자서명으로 계약서 날인 대체 - 원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보관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 법적 효력 불분명 계약보증금 미징구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곤란 계약금액·기간·내용 불명확 → 분쟁 발생 시 입증 곤란 계약 체결 전 착수 또는 납품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 체결은 지방계약법 제13조에 따라 서면 계약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6조):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계약금액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 • 이행기간 또는 납기 • 계약보증금 (일반 10%, 소액 면제 가능)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지체상금 (공사 1/2000, 물품·용역 3/4000) • 하자보수 보증(공사의 경우) 중요: 계약 체결 전에 공사 착공 또는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면 절차 위반이며, 계약 불이행 시 법적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날인 완료 후 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사업 진행" (계약 절차 위반) • "계약 체결 전 공사 착공 또는 납품 완료" (선이행 후계약)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체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A.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일 때 생략 가능합니다. 단, 청구서·납품서 등 증빙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계약변경 시 꼭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계약내용(금액, 기간, 규격 등)이 변경되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사후 정산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Q.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고(소급효),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공사의 경우 기성 부분 정산 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3.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입찰보증금·하자보증금의 납부 기준, 금액 산정, 면제 요건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증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전적 보장수단 - **원칙:** 계약금액의 10% 이상 납부 의무 - **귀속:** 계약 불이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위임:** 납부 면제, 납부 방법, 귀속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납부 의무와 귀속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 ### 제14조 (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관련 조항 - **제14조 (입찰보증금):** 입찰참가 시 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제21조 (하자보증):** 공사 등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보증금 관련 조항 ### 제37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 - **현금** (국고·지방금고 납부) -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 발행) - **은행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 보증서** (건설·전기·소방 등) - **정기예금 증서** (은행) ### 제38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사유 | 면제 범위 | |-----|-----|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계약 | 전액 면제 |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전액 면제 가능 |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공사) | 전액 면제 가능 | |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업체** 중 신용 양호 | 일부 면제 | ### 제39조 (계약보증금 귀속)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지자체에 귀속 - 계약보증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 **납부면제 시** 불이행하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입찰보증금 관련 (제33~36조) | 항목 | 내용 | |-----|-----| | 납부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 | 납부방법 | 현금,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등 | | 귀속사유 | 낙찰자가 **계약 미체결** 시 귀속 | | 면제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소액수의계약 등 | ### 제51조 (하자보증금) - 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 차등 납부 - 하자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보관 - 하자 미발생 시 기간 만료 후 반환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 **5%** | | 지붕·방수·도로 | **3~4%** | | 창호·전기·설비 | **3%** | | 도장·미장 등 | **2%**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보증금 납부 절차 **납부 시기:** - **입찰보증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 - **하자보증금:** 준공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 보증서 종류별 발행기관 | 보증서 종류 | 발행기관 | 비고 | |-----|-----|-----| | 보증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 가장 일반적 | | 지급보증서 | 시중은행 | 현금 대체 | | 공제조합 보증서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 건설업 특화 | | 이행보증서 | 보증보험·은행 | 이행보증 방식 | | 현금 | | 직접 납부 | ### 보증금 면제 실무 **면제 판단 기준:**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시 면제 가능 -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시 면제 가능 - 면제 시에도 계약불이행 시 **10% 상당액 징수** 가능 **이행보증 방식:** - 계약보증금 납부 대신 **이행보증서** 제출 가능 - 이행보증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보장 - 보증기관이 계약 불이행 시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거나 보증금 지급 ### 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 낙찰자 결정 후 **미낙찰자에게 즉시 반환** -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완료 후 반환 -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 (하자 미발생 확인)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소액 계약도 무조건 10% 징수 → 불필요한 업체 부담 보증서 유효기간 미확인 → 만료 후 계약 이행 불가 시 손해배상 곤란 계약금액 변경 시 보증금 조정 누락 → 보증금액 부족 현금 보증금을 계약 종료 후 즉시 반환 → 하자보수 보증과 혼동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확보를 위해 징수합니다. 계약보증금 요율: • 일반 계약: 계약금액의 10% 이상 • 소액 수의계약(3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 임대차 계약: 5% 이상 납부 방법: • 현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납부) • 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 보증보험증권 중요 체크 포인트: • 보증서 유효기간: 계약 이행기간 + 여유기간 (하자보수기간 고려) • 계약금액 변경 시: 보증금액도 조정 (증액 시 추가 징수, 감액 시 반환) • 보증금 반환: 계약 이행 완료 + 하자보수 보증 대체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국고 귀속(몰취)하여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감사 지적 패턴: • "계약보증금 미징수로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곤란" (절차 위반) •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에서 계약 이행" (보증 공백) • "계약금액 증액 시 보증금 추가 징수 누락" (보증금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는 1억원 이하인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제해도 계약불이행 시 10%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A.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를 납부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합니다. 별개의 보증금으로 각각 납부·반환됩니다.

Q. 보증금이 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불이행 시 보증금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됩니다.

Q. 하자보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A.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됩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 3년, 도장·미장 1년 등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도 가능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guarantee-deposit>

14.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3천만원 이하 계약은 보증금 면제 가능. 국가기관, 지자체 등 특정 상대방과 계약 시에도 면제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면제 및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15조) → 시행령(제48조) → 집행기준 계약보증금 면제의 구체적 기준(금액, 대상 등)은 시행령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기본 요율 | 계약 종류 | 보증금 요율 | |-----|-----| | **일반 계약** | 계약금액의 **10%** (기본) | | **공사 (장기)** | 계약금액의 **15%** 이내 (1년 초과 공사) | | **공사 (소액)** | **면제 가능** (3천만원 이하) | ### 면제 가능 금액 기준 3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제 대상 상대방 (금액 관계없이 면제) | 대상 | 면제 사유 | |-----|-----| | **국가기관** | 신용도 최고 | | **지방자치단체** | 신용도 최고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 ****예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 금액 관계없이 보증금 면제 가능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 면제 가능한 추가 사례 ##### 1. 소액 계약 (3천만원 이하) - **공사**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단, 발주기관이 필요 시 보증금 징수 가능 ##### 2. 특정 계약 방식 - **개산계약** : 정확한 수량 산정 불가 시 - **단가계약** : 수시 발주 단가 계약 - **긴급 계약** :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 ##### 3. 신용도 높은 상대방 - **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 **신용평가 AA 이상** 기업 (신용평가기관 인증) - **국가유공자 단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 4. 물품 특성상 면제 - **긴급 구매 물품** (재해 복구용) - **소모성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 - **반복 계약** (동일 업체와 연속 계약 시) ****감사 주의사항**** 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반드시 면제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실무 해설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 면제 판단 5단계 절차 ##### 1단계: 금액 확인 **Q: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가? - YES → 면제 가능 (2단계로) - NO → 3단계로 **실무 팁** : 추정가격 2,900만원 → 면제 가능 - 계약금액 3,100만원 → 면제 불가 (원칙) --- ##### 2단계: 면제 필요성 판단 **Q: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소액 계약이고 계약상대자 신용도 문제없음 → 면제 권장 - 과거 불이행 이력 있음 → 면제 불가 **실무 팁** : 신규 업체: 보증금 징수 권장 - 거래 이력 있는 업체: 면제 가능 --- ##### 3단계: 상대방 신용도 확인 **Q: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 **자동 면제 대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조건부 면제 대상**** : 상장법인 (상장 사실 확인) - 신용평가 AA 이상 (평가서 제출) ****면제 불가**** : 일반 민간 기업 (3천만원 초과 계약) - 개인 사업자 --- ##### 4단계: 계약 방식 확인 **Q: 특수한 계약 방식인가? - **면제 가능한 계약** : 개산계약 (수량 불명확) - 단가계약 (연간 단가 계약) - 긴급계약 (재해, 재난 등) --- ##### 5단계: 면제 사유 명시 **계약서에 면제 사유 반드시 명시** ****예시**** : > "본 계약은 추정가격 2,800만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 ## 계약보증금 면제 불가 사례 (감사 지적) ### 1. 면제 사유 미기재 (경고) ****지적사항**** : 3천만원 이하 계약임에도 면제 사유 미명시 - 감사 시 적법 면제인지 판단 불가 ****조치방법**** : 계약서 특약사항에 면제 사유 명기 - "시행령 제48조 제○항에 따라 면제" 문구 필수 --- ### 2. 3천만원 초과 계약 무단 면제 (주의) ****지적사항**** : 계약금액 4,500만원 계약에서 보증금 면제 - 법령 근거 없는 면제 ****조치방법**** : 3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보증금 징수 - 예외적으로 면제하려면 결재권자 승인 필요 --- ### 3. 일반 기업에 무단 면제 (경고) ****지적사항**** : 민간 기업과 5천만원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면제 -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면제 적용 ****조치방법**** : 면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상장법인/AA 등급 기업만 조건부 면제 --- ### 4. 과거 불이행 업체에 면제 (경고) ****지적사항**** : 과거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와 재계약 시 보증금 면제 - 이행 보장 장치 부재 ****조치방법****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 조회 (필수) - 불이행 이력 업체는 보증금 징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점검 -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가? - []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 과거 불이행 이력 조회 (나라장터) - [] 특수 계약 방식 해당 여부 (개산, 단가, 긴급) ### 계약 체결 시 - [] 면제 사유 계약서에 명시 - [] 법령 근거 조항 명기 (시행령 제48조) - [] 결재권자 승인 (3천만원 초과 면제 시) ### 감사 대비 - [] 계약서 사본 보관 - [] 면제 근거 서류 첨부 (상장 증명, 신용평가서 등) - [] 결재 문서 보관 (면제 승인 문서)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A: 아닙니다.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상장법인이면 10억원 계약도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은 신용도가 높아 금액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 판단) **Q3. 계약서에 면제 사유를 꼭 써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감사 시 적법한 면제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법령 조항과 면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Q4.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도 면제 가능한가요? A: 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금의 "납부 방법" 중 하나이므로, 보증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면제는 보증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Q5. 개인 사업자와 2천만원 계약 시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하 계약이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업체이거나 신용도가 불확실하면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보증금은 얼마이고, 면제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해야 하지만(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를 고려해 면제하거나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액 계약(예: 3천만원 이하)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 등이 대표적 면제 가능 사유입니다.

Q. 소액 계약이면 보증금이 무조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계약 위험을 평가해 면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소액이라도 이행 위험이 크면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소액 기준을 맞추려고 계약을 나눠 면제받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동일한 목적·장소·시기의 계약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소액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분할발주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 납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위반 시 담당자에게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계약보증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보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금 외에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공공기관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증 기간이 계약 기간을 모두 커버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라도 발주기관은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guarantee-exemption>

15. 계약기간 연장 절차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정당 사유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연장 신청 → 심사 → 변경계약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계약기간 연장 근거) 계약기간 연장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과 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연장 가능 사유**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관계 법령 변경,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 가능합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추가계약) ###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유 1.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2. **발주기관 귀책**: 설계 변경, 부지 미확보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 4. **불가항력**: 전쟁, 감염병 5.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 인정 사유 **연장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로 인한 지연은 연장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연장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연장 신청서 제출 (준공 30일 전 권장) 2단계: 발주기관 검토 3단계: 심의위원회 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 필수 첨부 서류 - 연장 사유 증빙 - 공사 진행 현황 - 잔여 공사 일정표

실무 해설

계약기간 연장 실무 가이드 ### 연장 신청 시기 **권장**: 준공기한 30일 전 **최소**: 준공기한 10일 전 ### FAQ **Q: 연장 한도는? A: 법적 한도는 없으나, 연장 사유에 비례하여 합리적 기간만 인정됩니다. **Q: 지체상금 부과되나요? A: 정당 사유로 연장 승인받으면 지체상금 없습니다. 승인 전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 내에 못 끝내면 무조건 지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부지 인도 지연 등),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장 사유와 기간을 증빙과 함께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 발생 즉시 또는 만료 최소 14일 전까지 신청할 것이 권장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이 불가합니다.

Q.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연장받을 수 있나요?

A. 발주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공식 지시한 경우는 발주기관 귀책에 해당하므로 중지 기간만큼 연장해야 하며, 중지 기간의 간접비(현장 유지비 등)도 추가 계약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공식 지시 없이 상대방이 자체 판단으로 중단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보증보험도 연장해야 하나요?

A. 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이행보증보험(계약보증금 보증서)·하자보증보험의 유효기간도 함께 연장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공사 기간을 커버하지 못하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장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나, 전적으로 발주기관 귀책이면 간접비로 보전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period-extension>

16. 계약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절차, 법적 효과, 부정당업자 제재와의 관계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3조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제와 해지의 법률적 차이 - **계약해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것 (**소급효**) → 원상회복 의무 발생 - **계약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 (**장래효**) → 기이행 부분은 유효 - **실무 적용:**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은 해지, 물품 등 일시적 계약은 해제가 일반적 > 계약해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해지는 "지금부터 끝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 위임 체계 - **법률 (제23조):** 해제·해지의 근거 및 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제60조~제62조):** 구체적 사유, 절차, 효과 등 규정 - **계약집행기준:** 실무 처리 절차 및 서식 ##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해제·해지 시 보증금 귀속 여부 - **제30조 (지체상금):** 지체상금 누적 시 해제·해지 사유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제·해지 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연계 - **제12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이행 ##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주요 제재 사유 (계약해제·해지 관련):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자 ##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의 관계 - 계약해제·해지가 **부정당업자 제재의 전제조건은 아님** (별도 판단) - 다만, 해제·해지 사유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제재 **병행 가능** - 실무에서는 해제·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가 필수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계약 해제·해지 관련 조항 ## 제60조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구분 | 해제·해지 사유 | 비고 | |-----|-----|-----| | **계약 불이행**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때 | 가장 일반적 사유 | | **지체상금 한도 도달** |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 | 의무적 해제·해지 검토 | | **이행 포기** | |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포기한 때 | 의사표시 확인 필요 | | **부도·파산** | |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이행 불가능한 때 | 객관적 이행불능 | | **부정당업자 제재**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 | 제재 통보 후 판단 | | **부실 시공** | | 부실·조잡한 시공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검사 등으로 확인 | | **공사 중단** |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한 때 | 현장 확인 | | **하도급 위반** | | 불법 하도급 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 하도급법 위반 | ## 제61조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 계약상대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계약 해제·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구분 | 해제·해지 사유 | 비고 | |-----|-----|-----| | **공사 중지 명령** | |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명하고 장기간(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때 | | **대금 미지급** | |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때 | | **설계 변경 불이행** |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때 | ## 제62조 (해제·해지의 효과) **계약보증금 귀속:** -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해제·해지 → 보증금 **해당 지자체에 귀속** - 발주기관 귀책에 의한 해제·해지 → 보증금 **반환** **기시공(기납) 부분 정산:** - 해지 시: 기이행 부분에 대해 **대가 지급** (기성 정산) - 해제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이행 부분 **정산 가능**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 귀책 →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발주기관 귀책 →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 **지체상금과의 관계:** - 해제·해지 시 해제·해지일까지의 지체상금 **별도 징수** - 지체상금과 보증금 귀속은 **중복 적용 가능**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계약 해제·해지 절차 **전체 흐름:** 해제·해지 사유 발생 → 사실 확인 → 시정 요구(최고) → 최고 기한 경과 → 해제·해지 결정 → 통보 → 정산 ## 사전 통지(최고) 절차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사유 확인 | 계약불이행, 지체 등 해제·해지 사유 객관적 확인 | 현장 확인, 서류 검토 | | 2. 이행 최고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 부여** | 보통 14일 이상 | | 3. 최고 기한 경과 |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해제·해지 가능 | 기간 만료 확인 | | 4. 해제·해지 결정 | 내부 결정 후 해제·해지 결정 | 법률 검토 포함 | | 5. 통보 |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해제·해지 사유, 효과 명시) | 내용증명 권장 | ※ 즉시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파산, 이행포기 의사표시, 부도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제·해지 통보서 기재사항 | 기재 항목 | 내용 | |-----|-----| | 계약 정보 | 계약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 | 해제·해지 구분 | 해제 또는 해지 여부 명확히 기재 | | 사유 | 구체적 해제·해지 사유 및 근거 법령 | | 효력 발생일 | 통보 도달일 또는 지정일 | | 정산 사항 | 보증금 귀속, 기성 정산, 손해배상 등 | | 향후 조치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여부 | ## 해제 vs 해지 선택 기준 | 구분 | 해제 | 해지 | |-----|-----|-----| | **효력** | 소급 소멸 | 장래 소멸 | | **적용 대상** |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계약 | 공사·용역 등 계속적 계약 | | **기이행 부분** | 원상회복 원칙 | 기이행 부분 유효·정산 | | **실무상 빈도** | 상대적으로 적음 | 대부분의 공사·용역에 적용 |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해제와 해지 개념 혼동 → 법적 효과 차이 간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지 → 손해배상

책임 해지 통지 없이 구두로만 통보 → 입증 곤란 기성 부분 정산 누락 → 계약상대자 재산권 침해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의 해제·해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 • 해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 • 해지: 계약을 앞으로 효력을 상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유효) 발주기관의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 지체 • 공사·제조·납품의 부실 또는 부정행위 • 계약서 또는 법령 중대한 위반 • 부도·파산 등으로 계약 이행 불가능 • 공익상 필요로 사업 중지 해제·해지 절차: 사유 발생 확인 시정 촉구 (상당한 기간 부여) 시정 불이행 시 서면 통지 (해제·해지 통보) 기성 부분 정산 (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필요시) 중요: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이행된 기성 부분은 정산하여 대금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의한 해지: 발주기관의 일방적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감사 지적 패턴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해지" (손해배상 책임) • "기성 부분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 패소" (재산권 침해) •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절차 하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며(소급효),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지는 장애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며(장래효), 기이행 부분은 유효합니다.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대부분 해지를 적용합니다.

Q.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하면 계약보증금이 해당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발주기관 귀책이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해지 전에 반드시 이행 최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해제·해지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기한을 부여하는 이행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파산·이행포기 등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Q. 계약상대자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 후 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해제·해지 시 부정당업자 제재도 받나요?

A. 해제·해지 자체가 자동으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해제·해지 사유가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계약 불이행, 부실 시공, 이행 포기 등)에 해당하면 별도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ntract-termination>

17. 원가계산 체계

공공계약 예정가격 산정의 핵심인 원가계산 구조. 제조·용역·공사 유형별 원가 구성요소(직접비·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 및 적용 기준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국가계약법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에 앞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두어야 한다.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행의 난이도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가계산이 필요한 이유 예정가격은 낙찰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시장에서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가를 직접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 바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방식입니다. ※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 제9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 거래 실례가격 (시장가격 조사)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3. 감정가격 4. 유사 사례의 계약단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한다. ■ 원가계산 적용 조건 (거래 실례가격이 없을 때) -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 - 특수한 규격·사양으로 일반 시장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 - 신규 개발 용역 또는 맞춤형 제조품 - 공사비 산출 (공사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 적용)

시행령

원가계산의 3가지 유형 비교 공공계약에서 원가계산은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용역원가**, **공사원가**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제조원가 | 용역원가 | 공사원가 | |----|-----|-----|-----| | 직접비 |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간접비 |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 | 이윤 | 이윤(10% 이내) | 기술료 | 이윤(15% 이내) | | 부가세 | VAT 10% | VAT 10% | VAT 10% | --- ## 1. 제조원가 구성 상세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합니다.** ** 직접재료비** - 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의 구입 원가 -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포함 - 산정 기준: 물량 × 단가 (시중 거래가격 조사) ** 직접노무비** -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작업 시간 × 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 직접경비** - 특정 계약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 (특허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등) **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제조간접비)** -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배분 (전력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 산정: 직접비 합계액 기준 일정 비율 가산 ** 일반관리비**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 (임원급여, 사무비 등) - 산정 기준: 제조원가 합계의 일정 비율 (통상 5~15%) ** 이윤** - 기업이 얻는 정상적인 이익 - 상한: ** $(\text{직접노무비} + \text{경비} + \text{일반관리비}) \times 10\%$ 이내** --- ## 2. 용역원가 구성 상세 **컨설팅, 연구용역, IT 개발, 청소·경비 등 용역 계약에 적용합니다.** ** 직접인건비** - 용역 수행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투입 인원 × 투입 기간 × 노임단가 (직종별 적용 기준 상이) ** 직접경비** - 용역 수행에 직접 발생하는 비용 (여비, 전문가 자문비, 시험비 등) ** 제경비 (간접비)** - 직접인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산정 기준: $\text{직접인건비} \times 110\sim 120\%$ ** - 포함 내용: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등 ** 기술료 (이윤에 해당)** - 기업의 기술력·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보상 - **산정 기준: $(\text{직접인건비} + \text{제경비}) \times 20\sim 40\%$ ** - 용역 특성상 이윤 대신 기술료 개념 적용 --- ## 3. 공사원가 구성 상세 **건설공사, 토목, 전기·통신공사 등에 적용합니다.** ** 재료비** -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자재의 구입 원가 - 주재료비, 부재료비, 작업설비비 ** 노무비** - 공사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노임 - 산정 기준: 노임단가 × 노무량 (대한건설협회 공시노임단가 적용) ** 경비** - 공사 수행에 발생하는 직접경비 -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품질관리비 등 ** 일반관리비** - 기업 공통 관리비용 - **산정 기준: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 \text{경비}) \times \text{일반관리비율}$ ** - 공사 규모·종류별 요율표 적용 ** 이윤** - 시공 기업의 적정 이윤 - **상한: $(\text{노무비} + \text{경비} + \text{일반관리비}) \times 15\%$ 이내** - 공사원가는 제조(10%)보다 높은 15% 상한 적용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 조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예정가격조서 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정가격 결정 방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 선택 사유) 2. 산출 근거 (원가계산서, 가격조사서 등 첨부) 3. 예정가격 금액 4. 작성일 및 작성자 --- ##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원가계산서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산출하여 작성합니다. | 순서 | 항목 | 작성 방법 | |----|-----|-----| | 1 | 재료비 (직접재료비) | 품명·수량·단가·금액 명시 | | 2 | 노무비 | 직종·인원·노임단가·기간 명시 | | 3 | 경비 | 항목별 금액 (공통비 배분 근거 포함) | | 4 | 소계 (직접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 5 | 일반관리비 | 소계 × 요율 | | 6 | 이윤 | $(\text{노무비} + \text{경비} + \text{일반관리비}) \times \text{요율}$ | | 7 | 합계 (공급가액) | 1~6 합산 | | 8 | 부가가치세 | 합계 × 10% | | 9 | 예정가격 | 합계 + 부가가치세 | --- ## 노임단가 적용 기준 **1. 공시노임단가 (한국노동연구원·협회 발표)** -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적용 - 용역업: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또는 정보통신 등 분야별 공시 **2. 최저임금 준수** - 어떠한 경우에도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시간급) 이상이어야 함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최저임금 기준 적용 **3. 실제 지급 노임 확인** - 계약 후 실제 지급 노임이 계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감사 시 확인 가능 --- ## 관급재료 처리 방법 **관급재료**: 발주기관이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재료 - **원가계산서 반영 방법**: 관급재료는 재료비에 포함하되, 별도로

구분하여 표기 - **계약금액 제외** : 관급재료비는 계약금액에서 제외 (발주기관이 별도 구매) - **일반관리비·이윤 계산** :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로 산정 - **감사 주의사항** : 관급재료를 원가계산에 이중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면 원가계산을 생략해도 되나요?

A. 네. 원가계산은 시중에서 해당 물품·용역의 거래 실례가격 확인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장가격 조사로 적정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가계산 없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용역 발주 시 제경비율·기술료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계약예규에서 제경비율은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율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용역의 성격·난이도·시장 현황을 고려해 결정하며, 범위를 벗어난 임의 적용은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Q. 이윤율 상한을 초과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이윤율 상한은 제조 10%, 공사 15%로 법령에서 정한 한도입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고, 감사 지적 및 과다 계상으로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 이윤 개념 대신 기술료(20~40%)를 적용합니다.

Q. 원가계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원가계산 오류(과다·과소 계상)는 감사 지적 1순위입니다. 과다 계상은 예산 낭비, 과소 계상은 계약 불이행 유발로 모두 문제가 됩니다. 주요 지적 사례는 이윤율 상한 초과, 제경비 기준을 미적용, 관급재료 이중 계상, 노임단가 오적용 등입니다.

Q.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 원가계산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A. 각 유형별(제조·용역·공사) 원가 구성요소 명칭과 계산 순서가 핵심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용역원가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40%' 공식, 이윤율 상한(제조 10%, 공사 15%)이 자주 출제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cost-calculation-guide>

18.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공종별로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1조 (하자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금의 납부·보관·반환 및 하자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자보증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공사 등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 성격: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금전적으로 보장 - 적용: 공사계약에서 주로 적용, 물품·용역은 제한적 - 위임: 보증금액, 보증기간, 납부·반환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이후의 품질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담보 → 하자보증은 이행 후 품질 담보 - 제16조 (검사):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후 잔금 지급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자보증 관련 조항 ## 제69조 (하자보증기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기간 | |-----|-----| | 구조체 (건물 골조, 기초 등) | 5년 | | 지붕·방수공사 | 3년 | | 도로포장 (아스콘·콘크리트) | 3년 | | 창호·유리공사 | 2년 | | 전기·소방·설비공사 | 2년 | | 도장·미장·타일공사 | 1년 | | 조경식재공사 | 2년 | | 그 밖의 공종 | 1년 |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 ## 제70조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납부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공종 | 5% | | 지붕·방수·도로 관련 | 3~4% | | 창호·전기·설비 관련 | 3% | | 도장·미장 등 | 2% | 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가장 일반적) - 은행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 보증서 ## 제71조 (하자보증금 반환) -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반환 - 공종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 하자보수 불이행 시: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 제72조 (하자검사)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 보수 기한: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기한 부여 ## 제73조 (하자보수) - 하자 발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보수 착수 - 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통보 → 재검사 - 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 보증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하자보증 업무 절차 전체 흐름: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하자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하자보수 → 보증금 반환 ## 하자보증금 납부 실무 - 납부 시기: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전 - 납부 방법: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일반적 - 보증서 유효기간: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 복수 공종: 공종별로 보증금률과 기간이 다르므로 별도 보증서 제출 가능 ## 하자검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검사 계획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 검사 일정 수립 | | 2. 현장 검사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 3. 하자 통보 |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보수 요구 | | 4. 보수 실시 | 계약상대자가 하자 보수 | | 5. 보수 확인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 ##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 처리 - 하자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미발견: 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 발견: 보수 완료 후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공종별 하자보수기간 착오 적용 → 조기 또는 과다 부담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 하자 발생 시 수리 곤란 하자보수 완료 확인 없이 보증금 반환 → 미수리 하자 방치 경미한 하자도 모두 하자보수 요구 → 업체 부담 과다 실무 적용 포인트 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공종별 차등): • 구조체: 5년 • 지붕·방수·도로·토목: 3년 • 창호·전기·설비·조경·실내건축: 2년 • 도장·미장·타일: 1년 하자보수보증서: • 공사 준공 시 계약금액의 3~10% (공종별 차등) •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전체 • 보증금 반환: 하자보수기간 만료 +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 하자보수 요청 시 주의사항: • 하자인지 통상적인 노화·마모인지 구분 • 사용자 과실에 의한 훼손은 하자 아님 • 하자보수 요청은 서면으로 (증빙 확보) • 계약상대자가 보수 거부 시 보증서 청구 또는 직접 보수 후 구상권 행사 중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기간 만료 전에 전체 시설물을 점검하여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로 하자 발생 시 수리 곤란" (절차 위반) • "하자보수기간 적용 오류" (기간 산정 착오) • "하자 미보수 상태에서 보증금 조기 반환" (관리 소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A. 공종별로 다릅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도로 3년, 창호·전기·설비 2년, 도장·미장 1년입니다. 준공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합니다.

Q. 하자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입니다. 구조체 5%, 지붕·방수·도로 3~4%, 창호·전기·설비 3%, 도장·미장 2%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Q.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기한 내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을 총당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Q. 하자보증금은 분할 반환이 가능한가요?

A. 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공종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의 보증금을 분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도장(1년) → 1년 후 반환, 구조체(5년) → 5년 후 반환.

Q. 물품이나 용역에도 하자보증이 적용되나요?

A. 하자보증은 주로 공사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은 품질보증기간으로, 용역은 계약 조건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설치를 포함한 물품 납품 등에서는 하자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defect-warranty>

19. 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요건,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계변경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공사 현장의 실제 조건에 맞게 설계를 수정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성격:**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내용 변경 (설계서 변경 + 금액 조정) - **의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되면 계약금액을 반드시 조정 (기속행위) - **위임:** 구체적인 조정 방법, 절차, 신규비목 단가 산정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제22조의2)과 구별된다 ### 관련 조항 - **제19조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일반 근거 규정 - **제22조의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에스칼레이션 — 설계변경과 별개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증가 시 보증금 추가 납부 필요 - **제30조 (지체상금):** 설계변경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 가능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설계변경 관련 조항 ### 제65조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구분 | 설계변경 사유 | 내용 | |-----|-----|-----| | **1호**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 간 상호 모순 포함 | | **2호** |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지반조건 상이, 지하매설물 등 | | **3호** | 설계서에서 정한 공법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 현장 여건상 시공 불가 | | **4호** | 발주기관이 공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반영 등 | | **5호** | 기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관련법 개정, 안전기준 변경 등 | ### 설계변경 절차 1. 설계변경 사유 발생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 요청 2.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3. 설계변경 승인 (변경설계도서 작성) 4. 변경 계약금액 산정 (증감 내역 확인) 5. 변경계약 체결 ### 제65조의2 (설계변경의 범위 제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가는 당초 **총공사비의 10% 이내**에서 가능 - 10%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예산 확보 및 상급기관 승인 등 추가 절차 필요 -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예외적으로** 10% 초과 가능 (별도 사유서 작성) ### 제6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증감 물량의 계약금액 조정 > **증감 물량의 조정금액 = 증감 물량 x 계약단가** - 당초 계약 시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비목: **계약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감소분은 **예정가격 단가** 적용 #### 2.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 | 우선순위 | 산정 기준 | 내용 | |-----|-----|-----| | **1순위**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변경 시점의 시장가격 기준 | | **2순위** | 거래실례가격 | 실제 거래되는 가격 (조달청 단가 등) | | **3순위** | 감정가격 또는 유사단가 비교 | 감정평가 또는 유사 비목 참고 | #### 3. 계약금액 조정 시기 - 설계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청구 기준) - 예산 부족 시: 추가 예산 확보 후 조정 (지연 사유 통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설계변경 실무 절차 **절차:** 1. 설계변경 사유 발생 확인 2. 설계변경 요청서 접수 (계약상대자) 또는 설계변경 지시 (발주기관) 3. 현장 조사 및 타당성 검토 (감독관 확인) 4. 설계변경 심의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 5. 변경설계도서 작성 (변경 도면, 변경 수량산출서, 변경 내역서) 6. 계약금액 산정 (증감 내역, 신규비목 단가 등) 7. 변경계약 체결 (변경계약서 + 변경산출내역서) 8. 변경 대장 기록 및 관리 ### 설계변경 시 필요 서류 | 서류 | 내용 | |-----|-----| | 설계변경 사유서 | 변경 사유, 필요성 소명 | | 변경설계도면 | 변경 전·후 대비 도면 | | 변경수량산출서 | 물량 증감 내역 | | 변경산출내역서 | 단가 적용, 금액 산출 | | 현장확인서 | 감독관의 현장 상태 확인 | | 기술검토 의견서 | 기술적 타당성 검토 (해당 시) | ### 설계변경과 물량변경의 구분 | 구분 | 설계변경 | 단순 물량변경 | |-----|-----| | **의미** |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 | 당초 설계 범위 내 수량 증감 | | **도면 변경** | 있음 | 없음 | | **사유** | 현장 조건 상이, 공법 변경 등 | 실시공 물량과 설계물량의 차이 | | **단가 적용** | 신규비목은 변경 시점 단가 | 계약단가 적용 | | **절차** | 설계변경 심의 필요 | 정산 시 물량 조정 | ### 설계변경 산출내역서 작성 요령 - **증가 물량:** (+) 표시로 기재, 계약단가 적용 - **감소 물량:** (-) 표시로 기재 - **신규비목:** 별도 구분하여 산정 근거 명시 - **순증감액:** 증가액 - 감소액 = 변경 금액 - 변경 전·후 총괄표 작성 필수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설계변경 승인 없이 시공 → 절차 위반 및 공사비 분쟁 경미한 사항도 모두 설계변경 처리 → 업무 과다 설계변경 증액 시 예산 확보 미확인 → 계약금액 조정 불가 설계변경 사유 불명확 → 설계 부실 또는 예산낭비 의혹 실무 적용 포인트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 설계변경은 계약 위반이며, 증액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발견 • 현장 여건 변화 (지질·지하매설물 등) • 관련 법령·기준 개정 • 물가변동 또는 자재 수급 차질 •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설계변경 승인 절차: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발주기관이 타당성 검토 (기술·예산 측면) 승인 후 계약금액·공기 조정 변경계약서 작성 (금액 또는 공기 변경 시) 중요: 설계변경 증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면 설계 부실로 감사 지적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동이 없고 공사 품질·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설계변경 승인 없이 무단 시공" (계약 위반) • "설계 부실로 과다한 설계변경 발생" (설계 부실 및 예산낭비) • "설계변경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부당" (예산낭비 또는 특혜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설계서 오류·누락, 현장 조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Q.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A. 기존 비목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물량 x 계약단가로 산정합니다.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순으로 산정합니다.

Q. 설계변경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총공사비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10%를 초과하는 경우 기관장 승인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신규비목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1순위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 2순위 거래실례가격(조달청 단가 등), 3순위 감정가격 또는 유사단가 비교 순서로 산정합니다.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Q. 설계변경과 물량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설계변경은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고(도면 변경 수반), 물량변경은 당초 설계 범위 내에서 실시공 수량과 설계 수량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도면 변경 없음).

출처: <https://silmu.kr/topics/design-change>

21. 2인 이상 견적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인 이상 견적 필수 대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종합 4억, 전문 2억)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0조 (2인 이상 견적)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견적서를 받은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중요: 2인 이상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1인만 제출한 경우에도 그 견적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체결 가능 안내공고: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금액 등을 3일 이상 인터넷(나라장터·학교장터)에 공고하여야 함 (시행령 제25조제5항) G2B 전자견적 필수 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는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를 통한 전자견적으로 진행해야 함 (시행령 제39조)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시행규칙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계약종류 2인 이상 견적 대상 물품 구매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핵심: 견적요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은 1인이어도 가능!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동일업체에 2번 견적 요청 → 위법 (별개 업체여야 함) 견적서 규격·조건이 다름 → 공정한 비교 불가능 최저가 아닌 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 무효 사유 견적서 징구 전 발주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2인 이상 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별개 업체로부터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최저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 전에 징구해야 하며, 견적 요청 시 제시한 규격서와 견적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최저가 업체가 아닌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 절차 위반) • "동일 규격이 아닌 견적서로 비교" (공정성 결여) • "견적서 징구 전 납품 완료 후 사후 징구" (형식적 절차)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인 이상 견적 요청했는데 1인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A. 2인 이상에게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증빙이 있으면 1인만 제출하더라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견적 요청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 동일 업체에서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으면 2인 견적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서로 다른 2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 업체의 복수 견적은 1인 견적으로 간주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dual-quote>

22. 전자입찰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절차, 입찰서 제출 방법, 전자계약 체결 과정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전자조달**"이란 조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나라장터)을 말한다. ### 제6조 (전자조달의 촉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조달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계약법 제14조의2 (전자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계약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은 **서면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전자입찰의 법률적 위치 - **의무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전자입찰 의무 (전자조달법 시행령) - **원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전자조달법 제6조) - **효력**: 전자입찰·전자계약은 서면과 동일한 법적 효력 (지방계약법 제14조의2) - **위임**: 전자입찰의 세부 절차·방법은 시행령과 조달청 고시에 위임 > 전자조달법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을 국가·지방·공공기관 모두에 적용하는 일반법이며,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계약 효력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음 ### 관련 조항 - **전자조달법 제7조 (전자입찰)**: 전자입찰 절차 및 효력 - **전자조달법 제9조 (전자계약)**: 전자계약 체결의 효력 및 절차 -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원칙 → 전자입찰로 실시 -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서 작성 가능

시행령

전자조달법 시행령 — 전자입찰 관련 조항 ### 제6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 다음의 조달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입찰 및 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용 의무 예외 | 예외 사유 | 내용 | |-----|-----| 시스템 장애 | 나라장터 장애로 전자입찰 불가 시 | 비밀 계약 | 국가 비밀에 관한 사항 | 긴급 계약 |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 소액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전자입찰 관련 조항 ### 제16조의2 (전자입찰)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7조 (전자개찰) | 절차 | 내용 | |-----|-----| | 개찰 시기 | 입찰마감 직후 시스템 자동 개찰 | | 개찰 방법 | 시스템이 암호화된 입찰서를 자동 복호화 | |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 자동 추첨·산출 (2억원 이상) |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 자동 판정 | ### 제49조의2 (전자계약) - 전자입찰 낙찰자와의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서 날인 대체 - 계약서 원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보관 - 낙찰통지일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 체결 ### 입찰참가자 인증 | 인증 수단 | 용도 | |-----|-----| |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 입찰서 제출, 전자서명 | | 나라장터 보안토큰 | 전자입찰 전용 인증매체 | | 지문인증 | 나라장터 본인확인 (추가 인증) |

시행규칙

전자조달 이용 기준 (조달청 고시) ### 나라장터 이용 등록 절차 **발주기관 등록**: 1. 나라장터 기관회원 가입 2. 계약담당자 지정 및 인증서 등록 3. 입찰공고 등록 권한 부여 **입찰참가자 등록**: 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기반) 2. **공동인증서** 발급 (사업자용 범용인증서) 3. **나라장터 보안토큰** 수령 (조달청 또는 대행기관) 4. 나라장터 입찰 참가 신청 ### 전자입찰서 제출 기준 | 항목 | 기준 | |-----|-----| | 제출 시한 | 입찰마감일시까지 (초 단위까지 적용) | |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 | | 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 + 보안토큰 이중 인증 | | 투찰 횟수 | 마감 전까지 철회·재제출 가능 | | 입찰금액 | 숫자로 입력,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 전자입찰 운영 시간 - **입찰공고**: 24시간 등록 가능 - **입찰서 제출**: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 (통상 10:00~16:00) - **전자개찰**: 마감 즉시 자동 실행 - **시스템 점검**: 매일 00:00~06:00 (정기점검) ### 나라장터 전자입찰 보안 체계 **이중 인증**: 공동인증서 + 보안토큰 (물리적 매체) **암호화**: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 처리 → 개찰 시까지 열람 불가 **시간 기록**: 입찰서 제출·철회 시간 초 단위 기록 **감사 추적**: 모든 조작 이력 로그 보관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나라장터 의무 대상을 오프라인으로 진행 → 절차 위반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입찰 취소 → 입찰자 민원 발생 개찰 시각 이후 낙찰자 결정 지연 → 예정가격 누설 의혹 입찰 참가업체 정보 사전 확인 → 공정성 훼손 실무 적용 포인트 전자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입찰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수 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을 전자입찰로 운영합니다. 전자입찰 의무 대상: •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물품·용역: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 전자입찰 시스템: • 나라장터(G2B):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학교장터(S2B): 학교(유·초·중·고) 전자입찰 절차: 입찰공고 (나라장터 게시)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서 제출 (마감시각까지) 개찰 (자동 개찰, 담당자 참관) 낙찰자 결정 (최저가·적격심사 등) 낙찰 통지 (시스템 자동 발송) 중요: 전자입찰은 자동 개찰이 원칙이며, 개찰 즉시 입찰가격이 공개됩니다. 개찰 후에는 입찰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공고 내용·규격서를 사전에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에 즉시 문의하고, 입찰 일정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전자입찰 의무 대상을 오프라인 입찰로 진행" (절차 위반) • "개찰 전 입찰 참가업체 정보 조회" (공정성 훼손) • "개찰 후 예정가격 조작 의혹" (비리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입찰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A.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이 의무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이용하도록 권장됩니다.

Q.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나라장터 보안토큰 3가지가 필요합니다. 최초 등록에 3~5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입찰 참가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입찰서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는 기존 입찰서를 철회하고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수정·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 기준으로 개찰이 진행됩니다.

Q.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입찰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조달청이 시스템 장애를 공식 인정하면 장애 시간만큼 입찰 마감시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개인 PC나 네트워크 문제는 시스템 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환경을 점검해야 합니다.

Q. 학교장터(S2B)와 나라장터(G2B)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나라장터(G2B)는 조달청이 운영하며 국가·지방·공공기관 대상입니다. 학교장터(S2B)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며 초·중·고등학교 물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적용 법령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bidding>

23. 전자입찰 오류 대응 FAQ

나라장터 입찰 마감 시간 오류, 서류 업로드 실패 등 자주 발생하는 전자입찰 오류 해결 방법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전자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오류는 법령이 아닌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상의 문제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입찰 공고 취소 또는 연장 가능합니다. **시스템 장애 시 조치**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입찰 참가 불가 시, 발주기관은 입찰 마감 시간 연장 또는 재공고 조치를 합니다.

시행령

주요 오류 유형 1. **입찰 마감 시간 접속 폭주** : 마감 30분 전 제출 권장 2. **서류 업로드 실패** : PDF 용량 10MB 이하, 파일명 특수문자 제거 3. **전자 서명 오류**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만료 확인,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4. **입찰 금액 입력 오류** : 콤마(,) 제거, 숫자만 입력 5. **적격심사 서류 누락** : 제출 전 체크리스트 확인

시행규칙

오류 대응 방법 ### 시스템 오류 시 - 나라장터 고객센터 즉시 연락 (1588-0800) - 오류 화면 캡처 보관 - 발주기관에 오류 신고 ### 제출 실패 시 - 마감 30분 전까지 제출 완료 - 백업 PC 준비 (동시 접속 대비) - 다른 브라우저 시도 (크롬, 엣지)

실무 해설

전자입찰 오류 FAQ **Q1: 마감 1분 전 접속 안 되는데? A: 시스템 과부하가 혼합니다. 최소 30분 전 제출 완료하세요. **Q2: 서류 업로드가 안 돼요? A: PDF 용량을 10MB 이하로 줄이고, 파일명에 한글·특수문자를 제거하세요. **Q3: 입찰 후 정정 가능한가요? A: 마감 전에는 취소 후 재제출 가능합니다. 마감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Q4: 시스템 장애로 제출 못했는데? A: 나라장터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발주기관에도 오류를 알리세요. 입찰 연장 또는 재공고 가능합니다. **Q5: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오류는? A: 인증서 만료 확인, 보안 프로그램 재설치, 브라우저 설정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 마감 직전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에 신고해 접수번호를 받고 오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조달청이 시스템 장애를 공식 인정하면 장애 시간만큼 마감시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개인 PC·네트워크나 인증서 문제는 시스템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구제가 어렵습니다.

Q. 잘못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 입찰 마감 전이라면 기존 입찰서를 철회하고 정정된 입찰서를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감시간이 지난 후에는 투찰 금액 정정·취소가 불가능하며, 오류가 있는 입찰서 그대로 개찰이 진행됩니다. 단위·부가세 오기입은 업체 책임입니다.

Q. 공동인증서 오류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 구제받나요?

A. 어렵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자체의 장애만 공식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대상이며, 개인(업체)의 공동인증서·보안토큰 문제는 마감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서 만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마감 30분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이 귀속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거부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bidding-error-faq>

24. 긴급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 (특명수의)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긴급수의계약의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합니다: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행령

긴급수의 인정 사례 인정되는 경우 · 자연재해(태풍, 지진, 폭우 등) 복구 · 긴급 행사 개최 (국가적 행사 등) · 시설물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 · 감염병 대응 물품 긴급 구매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업무 지연으로 인한 긴급 · 예산 집행 시한 촉박 · 사전에 예측 가능한 행사 ·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시행규칙

긴급수의 계약 절차 1단계: 긴급 사유 발생 확인 - 객관적으로 긴급성 입증 가능해야 함 2단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 긴급 사유 구체적·상세 기재 (단순히 "긴급" 기재는 불충분) - 경쟁입찰 불가 사유 명시 - 증빙자료(공문, 보도자료 등) 첨부 3단계: 견적서 징구 - 긴급 시 1인 견적 가능 - 단, 가능한 경우 2인 이상 권장 4단계: 계약 체결 - 신속하게 진행 - 서류는 사후 보완 가능 (단, 계약 전 결재 필수)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수의 적용 → 법적 요건 불충족 사전 예측 가능한 사항을 긴급으로 처리 → 업무 태만 지적 긴급 사유 기록 미비 → 남용 의혹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필요 건을 승인 없이 계약 → 무효 실무 적용 포인트 긴급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 가격급등 등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로 경쟁입찰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됩니다. "업무가 바빠서", "예산 집행 기한이 촉박해서" 등은 긴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반적인 입찰 절차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을 입증해야 감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상 긴급수의는 기획재정부장관(지방은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예측 가능한 사항을 긴급으로 처리하여 경쟁 배제" (긴급 사유 부적절) · "긴급 사유 없이 특정 업체와 반복 긴급계약" (특혜 의혹) · "승인 필요 금액을 승인 없이 계약" (절차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산 집행 마감에 임박하면 긴급수의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예산 집행 마감 임박은 긴급수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긴급수의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긴급수의라도 예정가격 조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간략하게 작성하고 사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mergency-contract>

25.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계약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를 활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절차 안내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4조 (전자조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효율적인 조달을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계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포인트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임 체계** : 지방계약법 → 시행령 제39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하되, 학교의 경우 학교장터(S2B)를 병행 사용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전자입찰) ### 전자입찰 의무 대상 | 구분 | 전자입찰 의무 기준 | |-----|-----|-----| | 공사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 수의계약 (전자견적)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 나라장터(G2B) vs 학교장터(S2B) | 구분 | 나라장터(G2B) | 학교장터(S2B) | |-----|-----|-----| | 운영 | 조달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대상 | 모든 공공기관 | 유·초·중·고등학교 | | URL | www.g2b.go.kr | www.s2b.kr | | 주 용도 | 시설공사, 대형 물품·용역 | 학교 물품구매, 소규모 용역 | | 수의계약 | 전자견적 (2인 이상) | 전자견적 (2인 이상) | | 입찰 | 전자입찰 | 전자입찰 | ### 전자견적(수의계약) 절차 1. **견적정보 등록** → 업체에 공개 2. **업체 견적 제출** (최소 2일 이상 기간 부여) 3. **견적 마감·개봉** → 최저가 자동 선정 4. **계약 체결** → 전자계약서 작성

시행규칙

전자조달 실무 절차 ### 나라장터 수의계약 (전자견적) 절차 | 단계 | 절차 | 담당 | |-----|-----|-----| | 1 | 수요등록 (업무관리시스템) | 수요부서 | | 2 | 나라장터 로그인 → 견적정보 등록 | 계약담당자 | | 3 | 규격·수량·납품장소·마감일시 입력 | 계약담당자 | | 4 | 업체 견적서 제출 (전자) | 업체 | | 5 | 견적 마감 → 최저가 업체 확인 | 계약담당자 | | 6 |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 계약담당자 | | 7 | 검수·대금지급 | 수요부서·재무부서 | ### 학교장터(S2B) 물품구매 절차 1. **S2B 접속** → 학교장터 로그인 (NEIS 연동) 2. **상품 검색** → 학교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견적요청 3.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500만원 이상 권장) 4. **주문·계약** → 전자서명으로 계약 확정 5. **납품·검수** → 검수소서 작성 6. **대금지급** → 에듀파인 연동 지급 ### 유의사항 - 전자견적 마감시간은 **최소 2일** 이상 부여 - 업체 견적서는 **전자서명** 필수 - 개찰 전 견적가격 열람 금지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 사용 구분 착오 → 시스템 오류 전자견적 마감시각 경과 후 "기술적 오류"로 수동 처리 → 공정성 훼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오류로 계약 지연 → 업체 민원 나라장터 의무 사용 대상을 오프라인 처리 → 법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입찰서 전자 제출 원칙) 및 전자조달법에 따라 전자조달을 이용합니다. 시스템 구분: • 나라장터(G2B):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학교장터(S2B): 유·초·중·고등학교 (우선 사용) 학교는 S2B 우선, 예외적으로 G2B: • 물품 소액구매: 학교장터(S2B) 사용 • 시설공사·대형 용역: 나라장터(G2B) 사용 가능 •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오프라인 가능 전자계약 주요 기능: • 입찰공고 및 입찰 참가 신청 • 전자견적 요청 및 제출 • 계약서 전자 작성 및 전자서명 • 대금 청구 및 지급 전자견적 유의사항: • 견적 마감시각 엄수 (시스템 자동 마감, 수동 연장 불가) • 2인 이상 견적에서 1개 업체만 참여 → 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 견적 내역 확인: 규격·수량·금액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시스템 오류 발생 시: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교장터: 1544-0079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오프라인 처리는 불가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전자계약 의무 대상을 오프라인 처리" (법 위반) • "전자견적 마감 후 수동으로 견적 수정" (공정성 훼손) • "학교가 S2B 미사용하고 G2B 사용" (우선 사용 의무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라장터와 학교장터 중 어디를 사용해야 하나요?

A. 학교(유·초·중·고)는 학교장터(S2B)를 우선 사용하고, 시설공사나 대형 용역은 나라장터(G2B)를 사용합니다.

- ▶ 물품 소액구매: 학교장터(S2B)
- ▶ 시설공사 입찰: 나라장터(G2B)
- ▶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 오프라인 가능

Q. 전자견적에 업체가 1개만 참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2인 견적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합니다.

- ▶ 1차: 견적 기간 연장

- ▶ 2차: 재공고 (규격 완화 검토)
- ▶ 재공고에도 1인만 참여: 1인 수의계약 가능

단, 재공고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Q. 나라장터 전자서명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 ▶ 기관용 인증서: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에서 발급
- ▶ 인증서 등록: 나라장터 → 인증서 관리 메뉴
- ▶ 대리인 지정: 기관 관리자가 사전 등록

Q. 학교장터에서 물품선정위원회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 위원회 구성: 3~5인 (업무담당자, 사용부서, 외부 전문가 등)
- ▶ 심의 내용: 규격, 모델, 가격 적정성
- ▶ 회의록 작성 필수

출처: <https://silmu.kr/topics/e-procurement-guide>

26.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공공계약에서 헛갈리기 쉬운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 세 개념을 법령 정의로 구분합니다. 추정가격은 계약방법·국제입찰을 가르는 기준값(관급자재 제외), 추정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가격을 더한 금액,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 기준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소액수의 한도 등 실무 분기점도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06.01

법률

세 가지 금액 개념 — 한눈에 구분 공공계약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추정가격·추정금액·예정가격**입니다. 셋은 쓰임과 산정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 개념 | 무엇을 정하나 | 핵심 산식 | 근거 | |---|---|---|---| | **추정가격** | 계약방법·국제입찰·공고기간 등의 **판단 기준** | 규격서·설계서 등으로 산정, **관급자재 제외** | 시행령 §2 1호·§7 | | **추정금액** | 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의 **기준**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시행규칙 §2 2호 | | **예정가격** | 입찰의 **낙찰자·계약금액 결정 상한** | 입찰·계약 전 미리 작성한 가액 | 시행령 §2 2호·§9 | ### 추정가격 — 계약의 갈림길을 정하는 값 시행령 제2조 제1호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이 값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입찰 방식, 공고기간, 분리발주 여부가 갈립니다. ### 예정가격 — 낙찰의 기준선 시행령 제2조 제2호 (예정가격)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입찰을 붙인 뒤 낙찰자를 가르는 **상한선**입니다. 추정가격이 "어떻게 계약할까"를 정한다면, 예정가격은 "누가 얼마에 낙찰받나"를 정합니다. > 순서로 기억하세요: **추정가격(계약방법 결정) → 예정가격 작성 → 입찰·낙찰**. 추정가격은 항상 예정가격보다 앞섭니다.

시행령

추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 시행령 제7조 시행령 제7조 (추정가격의 산정)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핵심은 **관급자재(기관이 직접 사는 자재) 가격을 빼고**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순수 도급 부분만이 추정가격입니다. ### 계약 유형별 추정가격 산정 특칙 (§7 각 호) | 계약 유형 | 추정가격 산정 | |---|---| | **단가계약** | 추정단가 × 예정수량 | | **분할·복수 조달** | 직전 12개월 유사계약 총액 조정분 또는 해당연도 계약 총액 | | **리스·임차·할부** (기간 정함) | 총계약기간 추정금액 | | **리스·임차·할부** (기간 미정) | 1개월 추정지급액 × 48 | | **선택사항** 있는 조달 |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포함 | ## 추정가격이 가르는 실무 분기 — 수의계약 한도 (§25 5호) 추정가격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추정가격 기준 소액 수의계약 한도 (시행령 §25 5호) 종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등: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이 한도를 맞추려고 하나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조개면(분할계약)** 시행령 §77 위반**입니다. 추정가격을 임의로 낮춰 수의계약 생략하는 것이 감사 단골 지적입니다(아래 감사사례 참조).

시행규칙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추정금액)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관급자재·부가세를 뺀 순수 도급액"이라면, 추정금액은 그 위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다시 더한 총사업 규모**입니다. 계산 예시 어떤 공사의 순수 도급 부분(관급자재 제외)이 3억원, 계약상대자가 설치할 관급자재가 2천만원이라면: · 추정가격 = 3억원 (관급자재 제외) · 추정금액 = 3억원 + 부가가치세 3천만원 + 관급자재 2천만원 = 3억5천만원 ### 왜 두 값을 따로 쓰나 - **추정가격**: 계약방법·국제입찰·공고기간 판단 → "부가세 빼고, 순수 경쟁 대상 규모"를 봐야 하므로 - **추정금액**: 적격심사의 공사규모 구분 등 → "실제 투입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봐야 하므로 > 입찰공고·계약서에 두 값이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준을 쓰는 규정인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추정가격이랑 추정금액이 뭐가 달라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딱 한 줄로: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관급자재를 뺀 순수 도급 규모, 추정금액은 그걸 다시 더한 총사업 규모입니다. 그럼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추정가격·추정금액이 "어떻게 계약할지"를 정하는 사전 기준값이라면, 예정가격은 입찰을 붙인 뒤 "누가 얼마에 낙찰받나"를 가르는 낙찰 기준선(상한)입니다. 시간 순서도 추정가격이 먼저, 예정가격이 나중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수의계약 한도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 (→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관급자재를 추정가격에 포함 (→ 추정가격은 관급자재 제외, 추정금액에만 포함) 한도를 맞추려 계약을 분할 (→ 시행령 §77 위반, 중징계) 왜 이걸 정확히 알아야 하나 추정가격 2천만원이나 아니냐가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가르고, 1억원이나 아니냐가 물품 규격·가격 분리입찰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금액 개념 하나를 잘못 잡으면 계약방법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순수 도급 부분(시행령 §7), 추정금액은 거기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더한 총사업 규모(시행규칙 §2 2호)입니다. 추정가격은 계약방법·국제입찰 판단에, 추정금액은 적격심사 공사규모 구분 등에 씁니다.

Q.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기준인가요, 추정금액 기준인가요?

A.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시행령 §25 5호는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종합공사 4억원 이하 등을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합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한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 더해집니다(시행규칙 §2 2호).

Q.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같은 것인가요?

A. 다릅니다.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계약방법·국제입찰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산정하는 기준값입니다(시행령 §2 1호). 예정가격은 입찰·계약 직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준선입니다(시행령 §2 2호). 추정가격이 먼저, 예정가격이 나중입니다.

Q. 한도를 맞추려고 계약을 나눠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수의계약 한도나 입찰 방식을 회피하려고 단일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는 분할계약은 시행령 §77로 금지됩니다. 목적·기간·이행자가 실질적으로 같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보며, 의도적 분할은 중징계와 형사책임(직권남용·배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stimated-amount>

27.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3조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밝혀 미리 작성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개찰 전까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정가격의 법률적 위치 - **목적:****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사전 산정 - ****원칙:**** 경쟁입찰 시 반드시 작성 (법률상 의무) - ****비공개:**** 개찰 전까지 예정가격 누설 금지 - ****위임:**** 구체적 결정 방법,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 **### 관련 조항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누설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형사처벌은 형법 제315조에 의함) - ****제9조 (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원칙,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 결정 - ****제10조 (경쟁입찰의 성립):**** 2인 이상 유효 입찰 시 입찰 성립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정가격 관련 조항 ###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산정 방법 | 적용 대상 | |-----|-----| | ****거래실례가격**** | 물품·용역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 | ****원가계산**** |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가격**** | 새로운 품목, 비교 가능 품목 | **### 제8조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해당 물품의 ****최근 거래가격**** (2곳 이상 견적 비교) **### 제9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원가계산 구성요소: | 구분 | 내용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경비**** | 산재보험료, 기계경비, 운반비 등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일정비율 | | ****부가가치세**** | 공급가격의 10% | **### 제10조 (복수예비가격)**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입찰에서 적용 절차: 1.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2. 입찰참가자가 ****4개** 추천**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3. 추천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국가계약) 또는 ****±3%**** (지방계약) 범위 내에서 작성 - 공사·물품·용역 모두 동일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예규 **### 제11조 (예정가격조서)** - ****예정가격조서**** 작성 필수 (산출근거 포함) - 밀봉하여 보관, 개찰 시 공개 -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관리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실무 **예정가격 작성 절차:** 1. 사업 내용·규격 확인 2. 산정 방법 결정 (거래실례/원가계산/감정) 3. 기초금액 산정 4. 복수예비가격 작성 (2억원 이상) 5. 예정가격조서 밀봉·보관 **### 시장조사 방법** | 조사 방법 | 내용 | |-----|-----| | 조달청 나라장터 | 단가계약 가격, 종합쇼핑몰 가격 | | 물가정보지 |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등 | | 직접 견적 | ****2곳 이상**** 업체에서 견적 징구 | | 유사 계약 실적 | 동종·유사 계약의 낙찰가격 참고 | **### 예정가격 비공개 의무**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절대 비공개**** 예정가격 누설 시: - 공무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전자입찰 시 시스템에 등록 → 관리자도 열람 불가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관계** - ****기초금액:**** 원가계산·시장조사 등으로 산출한 기본가격 -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된 낙찰 기준가격 -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기초금액 ±2% (국가계약) 또는 ±3% (지방계약)에서 15개 작성 — 공사·물품·용역 동일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 가격 적정성 판단 불가 시장 조사 없이 업체 제시 금액 그대로 수용 → 예산낭비 부가세 포함/미포함 혼동 → 예산 초과 또는 부족 예정가격 사전 누설 → 형사처벌 대상 실무 적용 포인트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모든 계약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정가격 산정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시장가격 조사 (견적서 징구 등) 중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비밀이며, 사전에 누설하면 형법 제129조(뇌물죄) 또는 제133조(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기 전에 예정가격을 먼저 산정해야 하며, 업체 제시 금액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절차 위반) • "업체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채택" (가격 적정성 검토 부족)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등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이면 기초금액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Q.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A.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초금액 등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도 포함됩니다.

Q. 복수예비가격은 언제 적용하나요?

A.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에 적용됩니다. 15개 가격 작성 → 4개 추첨 →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차이는?

A.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으로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에 사용됩니다.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정확한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Q. 수의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estimated-price>

28. 펜스 설치 계약

공공기관 펜스 설치 발주 — 추정가격 한도(전문공사 2억·일반공사 4억)에 따른 계약 방식 라우팅. 펜스 4유형(방호·안전·보안·가설)별 적용 법령과 산업안전·도로법 부수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5.21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펜스 설치 발주의 법적 위치 펜스 설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통상 **전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방식 결정은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1. **추정가격 산정** — 자재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2. **공종 분류 확인**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그 밖의 공사 3. **법 §9 단서** → **시행령 §25** 수의계약 가능 사유 검토 4. **시행규칙 §33**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 펜스 종류와 설치 환경(도로·학교·시설 경계·공사 현장)에 따라 적용되는 부수 법령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도로법, 어린이보호구역 규칙 등은 본문 하단 「부수 의무」에서 안내합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가 (수의계약 한도 —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펜스 종류 × 공종 분류 × 수의계약 한도 | 펜스 유형 | 통상 공종 | 수의계약 한도 | |---|---|---| | 보안·경계 펜스 (강철·메쉬) | 전문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추정가격 ≤ 2억원 || 학교 운동장·교문 펜스 | 전문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추정가격 ≤ 2억원 || 조경 펜스·울타리 (목재·식재 연계) | 전문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추정가격 ≤ 2억원 || 방호울타리 (도로·낙석방지) | 일반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 4억원 또는 1억6천만원 | 가설펜스 (공사현장 임시) | 통상 본 공사에 포함 | 별도 분리발주 시 위 기준 적용 | > 시행령 §25 5호 가의 "전문공사 2억원"은 단일 도급 기준입니다. 단일 펜스 설치를 부당 분할하여 수의계약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은 시행령 §77 (수의계약 부당분할 금지) 위반입니다. ### 시행령 §25 5호 가 외 수의계약 사유 (참고) 펜스 한도 초과 시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 가능: - **§25 1호** — 천재지변·긴급복구 등 입찰 여유가 없는 경우 - **§25 4호 가·나** — 직전 시공자 책임 구분 곤란 또는 작업 혼잡으로 경쟁 불가 - **§25 4호 마** — 특허공법·신기술 적용 펜스로 사실상 경쟁 불가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펜스 설치 견적 절차 | 추정가격 | 견적서 제출 | 견적 업체 수 | |---|---|---| | 200만원 미만 | 생략 가능 (시행규칙 §33 2호) — 단 펜스는 통상 "공사"라 §33 2호 직접 적용 곤란, 200만원 미만 공사는 사실상 드물 || 200만원 ~ 2,000만원 | 1인 견적 가능 (영 §30 1호) | 1개 업체 || 2,000만원 초과 ~ 2억원(전문공사) | 2인 견적 (영 §30 2호) | 2개 이상 업체 || 2억원 초과 (전문공사) | 일반입찰 (법 §9 본문) | 공고를 통한 경쟁 | > **공사** (펜스 설치 포함)의 견적서 제출 생략은 시행규칙 §33 2호의 "물품"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시행규칙 §33은 주로 물품·용역에 적용됩니다.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펜스 설치 = 공사 발주의 미니어처 펜스 설치는 단순해 보이지만 「발주 방식 라우팅」「산업안전 의무」「하자담보」 세 축이 모두 적용되는 소규모 공사 발주의 표본 케이스입니다. 핵심 법령실무 처리 발주 방식지방계약법 §9 + 시행령 §25추정가격으로 수의/입찰 라우팅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2가설펜스 시공자 안전난간·추락방호 하자담보지방계약법 §20 + 시행령 §69철근콘크리트·금속구조물 통상 2년 펜스 4유형별 부수 의무 방호펜스 (도로 가드레일·낙석방지) - 「도로법」 §61 도로의 안전시설 적용 - 한국산업표준 KS F 4042 (도로용 방호울타리), KS F 8016 (낙석방지망) 등 자재 기준 - 발주처: 통상 지자체 건설과·도로과 안전펜스 (어린이보호구역·학교)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보호울타리 설치 기준 적용 -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별 안전 규정 검토 - 발주처: 교육청·학교·지자체 협조 필요 시 합동 발주 보안·경계 펜스 (시설 경계) - 부수 법령 거의 없음, 지방계약법 단일 적용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결합 시 별도 검토 가설펜스 (공사현장 임시) - 통상 본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 별도 발주 사례 적음 - 시공자 의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 (안전난간 구조), §42 (추락의 방지) 준수 - 안전난간: 상부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 이상 하중에 견딜 것 자주 하는 실수 분할발주로 수의계약 한도 맞추기 — 단일 펜스 라인을 구간 분리해 한도 내로 쪼개는 것은 시행령 §77 위반 견적서 생략 오용 — 시행규칙 §33은 물품 대상. 공사(펜스 설치)는

200만원 미만이라도 견적서 생략 직접 근거 없음 전문공사 vs 일반공사 혼동 — 펜스가 본 공사의 부속이 아닌 단독 발주이면 통상 전문공사 (2억 한도) 도로변 펜스의 도로점용 허가 누락 — 도로 경계 또는 점유 펜스는 도로법 §61 별도 허가 실무 적용
포인트 견적 수집: 펜스는 자재(강철·메쉬·목재)와 시공방식(매립·매트앵커·기성품 조립)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큼.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시 동일 사양·동일 길이·동일 마감 기준으로 동일해야 비교 가능합니다. 표준 시방서 활용: 발주처 자체 시방서가 없으면 「조달청 표준시방서」 또는 「국토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펜스 항목 인용. 자재 등급(SUS304 vs 일반강 도금)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 방지. 하자담보: 펜스는 통상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외 구조」로 분류되어 시행령 §69 별표 1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입니다. 단 부속 시설(자동문·CCTV·조명)은 별도 기간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운동장 펜스 100m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나요?

A.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이고 전문공사(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 5호 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통상 운동장 펜스 100m는 자재·시공 합계 5천만~1억5천만원 범위이므로 수의계약 한도 내입니다. 다만 견적서는 2,000만원 초과 시 2개 이상 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영 §30 2호).

Q. 방호울타리에 한국산업표준(KS) 적용이 의무인가요?

A. 도로법상 도로의 안전시설로 설치되는 방호울타리는 KS F 4042(도로용 방호울타리) 등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KS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발주처 시방서에 KS 적용 의무를 명시해야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학교·시설 경계용 일반 보안펜스에는 KS 적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Q. 공사현장 가설펜스를 200만원 미만이면 견적서 없이 구매할 수 있나요?

A.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33 2호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용역 계약에 적용됩니다. 가설펜스가 시공 없이 「자재만 구매」하는 경우(이미 제작된 패널 단순 임차 등)에는 §33 2호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치 시공」을 포함하면 공사 계약이므로 §33 2호의 견적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설펜스는 통상 본 공사의 시공자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42)이므로 별도 발주 자체가 드뭅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펜스를 설치해야 하나요?

A.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의 차도와 보도 분리, 차량 진입 차단을 위해 보호울타리·방호펜스 설치가 권장됩니다. 의무 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시 도로 폭·교통량·인근 시설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발주는 교통과·도로과 협업이 일반적이며, 어린이 안전 기준 적합한 자재(KS·인증 제품) 사용을 시방서에 명시합니다.

Q. 펜스 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가요?

A. 지방계약법 시행령 §69 별표 1에 따라 펜스(금속구조물)는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입니다. 다만 자동문·CCTV·전기·조명 등 부속 시설은 별표 1의 해당 항목 기준이 적용되어 보통 1~3년 범위입니다. 계약서 「하자담보 특약」에 펜스 본체와 부속 시설의 기간을 분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fence-installation>

Q.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A. 최소 3개 이상 제품을 비교 조사합니다.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확인
- ▶ 제조사 카탈로그·견적서 수집
- ▶ 인터넷 최저가 조사
- ▶ 비교표 작성 (성능·가격·A/S 등)

Q. 규격서에 브랜드명을 쓸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원칙: 성능·규격 위주로 작성
- ▶ 예외: '○○ 또는 동등 이상'으로 표기 가능
- ▶ 호환성 문제 시: 기존 장비와의 호환 사유 명시

특정 브랜드 직접 지정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goods-selection-committee>

30. 물품구매 vs 용역계약 구분

물품구매는 재화 취득, 용역은 노무 제공이 핵심. 설치·시운전 포함 시 판단 기준 제시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물품의 제조·구매"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조사·설계·감리·기술용역·정보화사업, 그 밖의 노무 제공 등을 말한다. **핵심 차이** - **물품**: 유형의 재화를 취득하는 것 (결과물이 "물건") - **용역**: 무형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 (결과물이 "서비스" 또는 "지적 산출물") 설치·시운전이 포함되더라도, 주된 목적이 물품 취득이면 물품계약입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서 "그 밖의 노무 제공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술연구·조사·검사·측량 등의 용역 2. 시설물의 설계·감리 용역 3. 정보처리시스템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4. 물품의 보관·운송·경비 등의 용역 5. 행사·교육훈련 등의 운영 대행 용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노무 제공 **혼동 사례** - **컴퓨터 구매 + 설치**: 물품구매 (설치는 부수적)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무형의 지적 산출물) - **시스템 구축**: 용역 또는 물품 (내용에 따라 판단) ### 판단 기준 (입찰집행기준) | 구분 | 물품구매 | 용역 | |-----|-----|-----| | **주된 목적** | 유형 재화 취득 | 노무·서비스 제공 | | **결과물** | 물건 (기계, 장비, 소모품) | 보고서, 설계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 | **대가 산정** | 물품 단가 + 부수비용 | 노무비 + 경비 | | **소유권 이전** | 있음 (물품 소유권 취득) | 없음 (용역 결과만 취득)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 구분이 애매한 경우 판단 기준 ##### 1. 설치·시운전 포함 물품 **판단 기준: 물품 가액이 전체의 70% 이상이면 물품계약** **예시:** - 냉난방기 구매 + 설치: **물품계약** (설치비 30% 이하) - 대형 설비 구매 + 설치: **물품계약** (설치는 부수적) - 복잡한 설비 설치 공사: **공사계약** (설치가 주목적) --- ##### 2.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판단 기준: 기성품 vs 맞춤형** | 유형 | 계약 종류 | 예시 | |-----|-----|-----| | **패키지 SW 구매** | 물품계약 | MS Office, 백신 프로그램 | | **맞춤형 SW 개발** | 용역계약 | 업무 시스템 개발 | | **SW 유지보수** | 용역계약 |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 | **쉬운 판단법** - CD/USB로 제공되는 기성 SW → **물품** - 개발자가 직접 코딩하는 SW → **용역** --- ##### 3. 시스템 구축 사업 **판단 기준: H/W 비중 vs S/W 개발 비중** **예시:** - 서버·네트워크 장비 70% + SW 설치 30% → **물품계약** - H/W 30% + 맞춤형 SW 개발 70% → **용역계약** --- ##### 4. 임차·리스 계약 **판단 기준: 소유권 이전 여부** | 유형 | 계약 종류 | 소유권 | |-----|-----|-----| | **임차 (렌탈)** | 용역계약 | 이전 안 됨 (반납) | | **금융리스** | 물품계약 | 최종 이전 (매입 선택권) | | **운용리스** | 용역계약 | 이전 안 됨 | --- ##### 5. 유지보수 계약 **판단 기준: 소모품 교체 vs 점검 서비스** **예시:** - 정기 점검 + 고장 수리: **용역계약** - 소모품(필터, 부품) 정기 교체: **물품계약** - 복합 유지보수 (점검 + 소모품): **주된 목적** 판단 **감사 주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계약 체결 전 법무담당 부서 또는 계약 부서와 협의하세요. 잘못 분류 시 예산 과목 오류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해설

물품 vs 용역 구분 실무 가이드 ### 3단계 판단 프로세스 ##### 1단계: 결과물 확인 **Q: 계약 종료 후 무엇을 받는가?** **물품계약** - 유형의 물건 (기계, 장비, 가구, 소모품) - 소유권이 우리 기관으로 이전 **용역계약** - 보고서,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 서비스 제공 (청소, 경비, 운송 등) --- ##### 2단계: 주된 목적 확인 **Q: 왜 이 계약을 하는가?** **물품계약** - 물건이 필요해서 - 예: "사무실에 책상이 필요해서" → 책상 구매 **용역계약** - 노무·서비스가 필요해서 - 예: "청소가 필요해서" → 청소 용역 --- ##### 3단계: 대가 산정 방식 확인 **Q: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물품계약** - 물품 단가 × 수량 - 예: 컴퓨터 150만원 × 10대 = 1,500만원 **용역계약** - 인력 투입 시간 × 단가 - 예: 개발자 1명 × 3개월 = 〇〇〇만원 --- ## 구분이 헷갈리는 10대 사례 ##### 1. 컴퓨터 구매 + 설치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컴퓨터 취득 - 설치하는 부수적 (20% 이하) - 소유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실무 팁:** - 견적서에서 물품 가액과 설치비 구분 명시 - 설치비가 30% 넘으면 재검토 필요 --- ##### 2.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기성 SW 취득 - CD/USB 또는 라이선스 키 제공 - 소유권(사용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실무 팁:** - "제조·판매하는 SW" = 물품 - "맞춤 개발 SW" = 용역 --- ##### 3.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개발 노무 제공 - 결과물: 소스코드, 프로그램 - 대가: 개발자 투입 인력 × 기간 **실무 팁:** - "개발한다" → 용역 - "구매한다" → 물품 --- ##### 4. 서버·네트워크 구축 **결론: 내용에 따라 다름** **물품계약인 경우:** - H/W (서버, 스위치 등) 70% 이상 - 기성 SW 설치 (패키지 OS, DBMS) **용역계약인 경우:** - 맞춤형 SW 개발 70% 이상 - 시스템 설계·구축 노무 제공 **실무 팁:** - 견적서에서 H/W vs S/W 비율 확인 - 애매하면 계약 부서와 협의 --- ##### 5. 청소 용역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청소 서비스 제공 - 결과물: 없음 (서비스만 제공) - 소모품(세제 등)은 부수적 --- ##### 6. 복사기 임차 (렌탈)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사용권 제공 - 소유권: 임대업체 보유 (계약 종료 시 반납) - 월 사용료 지급 **실무 팁:** - 계약 종료 후 반납 → 용역 - 계약 종료 후 소유권 이전 → 물품 --- ##### 7. 냉난방기 구매 + 설치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냉난방기 취득 - 설치비: 20~30% (부수적) - 소유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 ##### 8. 홈페이지

제작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웹사이트 개발 - 결과물: 소스코드, 디자인 - 대가: 개발·디자인 노무비 **실무 팁:** - 맞춤 제작 = 용역 - 템플릿 구매 = 물품 (드물게) --- ### 9. 책상·의자 구매 **결론: 물품계약** - 주된 목적: 가구 취득 - 조립 설치: 부수적 - 소유권: 우리 기관으로 이전 --- ### 10. 시스템 유지보수 **결론: 용역계약** - 주된 목적: 점검·수리 서비스 - 결과물: 없음 (서비스 제공) - 소모품 교체는 부수적 **실무 팁:** - 소모품 교체가 70% 이상 → 물품계약 검토 - 점검·수리가 주목적 → 용역계약 --- ## 잘못 분류 시 문제점 ### 1. 예산 과목 오류 **문제:** - 물품비 예산에서 용역 계약 집행 - 감사 지적: 예산 목적 외 사용 **해결:** - 계약 체결 전 예산 부서 확인 - 필요 시 예산 전용 또는 추경 --- ### 2. 입찰 방식 오류 **문제:** - 물품 입찰 공고로 용역 계약 추진 - 공고 내용과 계약 내용 불일치 **해결:** - 공고 전 계약 종류 확정 - 잘못된 공고는 취소 후 재공고 --- ### 3. 계약서 양식 오류 **문제:** - 물품계약서로 용역 계약 체결 - 계약 조항 불일치 (검수 vs 준공) **해결:** - 물품: 검수조서 - 용역: 준공검사 - 올바른 양식 사용 --- ##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점검 - [] 결과물이 유형의 물건인가? - [] 소유권이 우리 기관으로 이전되는가? - [] 물품 가격이 70% 이상인가? (설치 포함 시) - [] 예산 과목과 일치하는가? ### 애매한 경우 - [] 계약 부서 또는 법무 부서와 협의 - [] 유사 사례 조회 (나라장터 검색) - [] 견적서에서 물품·용역 비율 명시 요청 ### 계약 체결 시 - [] 올바른 계약서 양식 사용 - [] 입찰공고와 계약 내용 일치 확인 - [] 예산 과목 재확인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H/W 50%...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물품구매는 유형의 재화(물건)를 취득하는 것이고, 용역은 무형의 노무·서비스나 지적 산출물을 제공받는 것입니다(지방계약법 제2조).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물품, 없으면 용역에 가깝습니다.

Q. 소프트웨어 계약은 물품인가요, 용역인가요?

A.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라이선스·패키지)을 구매하면 물품, 새로 개발하거나 유지·보수받으면 용역입니다. 하나의 계약에 혼재하면 계약금액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Q. 물품과 용역(서비스)이 섞인 계약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주된 목적과 계약금액 배분 비율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쪽을 기준으로 삼으며, 설치·시운전이 포함되어도 주된 목적이 물품 취득이면 물품계약입니다. 불명확하면 계약 전 법무·계약부서와 협의합니다.

Q. 계약 유형을 잘못 분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적용 법령·낙찰 기준·적격심사 기준이 달라져 계약 절차 위반이 될 수 있고 감사 지적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공사를 용역으로 처리하면 건설업 면허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위법 상태가 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goods-vs-service-contract>

31. 검수·검사

물품 검수, 기성검사, 준공검사의 절차와 검수조서·검사조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6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검사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 이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 - **의무:** 계약이행 완료 시 반드시 검사 실시 (법률상 의무) - **주체:** 계약담당자, 검사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 **위임:** 검사 절차, 기한, 검사조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검사는 대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검사 완료 후에야 대금 지급이 가능 ### 관련 조항 - **제17조 (대가의 지급):**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의무 (14일 이내) - **제21조 (하자보증):** 준공검사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 **제15조 (계약보증금):** 검사 합격 시 계약보증금 반환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검사 관련 조항 ### 제64조 (검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검사 시 **계약서·설계서·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 내용을 확인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전문기관 의뢰** 가능 - 시험·분석이 필요한 물품: 공인시험기관 활용 ### 제65조 (검사의 구분) | 검사 구분 | 적용 대상 | 내용 |-----|-----|-----| **준공검사** | 공사 완료 시 | 설계도서 대비 전체 시공 내용 확인 | | **기성검사** | 공사 진행 중 | 기성부분에 대한 중간검사 (대가 지급용) | | **납품검수** | 물품 납품 시 | 규격·수량·품질 확인 | | **완료검사** | 용역 완료 시 | 과업지시서 대비 이행 내용 확인 | ### 제66조 (검사조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사조서에 포함할 사항: - 계약 건명 및 계약번호 - 계약금액 및 이행 내용 - 검사일시 및 검사자 - **합격·불합격 판정** 및 사유 - 시정 요구사항 (불합격 시) 다만,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7조 (기성검사) -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 기성 검사 후 **기성대가** 지급 - 기성률에 따라 검사 실시 (월별 또는 공정률 기준) - 기성검사 시에도 **검사조서 작성** 필요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검사·검수 절차 **물품 검수 절차:** 1. 계약상대자가 **납품 통보** 2. 검수담당자가 **규격·수량·품질** 확인 3. **검수조서 작성** (합격/불합격) 4. 합격 시 → 물품 인수 → 대금 지급 청구 5. 불합격 시 → 교환·보완 요구 ### 검수 항목 | 확인 항목 | 내용 |-----|-----| **규격** | 계약 규격서·사양서와 일치 여부 | | **수량** | 계약 수량과 납품 수량 일치 | | **품질** | 성능 테스트, 외관 검사, 시험성적서 | | **납품기한** | 계약상 납품기한 준수 여부 | | **포장·운송** | 파손·훼손 여부 확인 | ### 검사자 지정 - **원칙:**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 지정 권장 - **소액계약 (5천만원 이하):**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 가능 - **전문검사:**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의뢰 - 검사자와 계약담당자의 **분리 원칙** (내부 견제 기능) ### 불합격 처리 불합격 통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 시정 기한: 합리적 기한 부여 (통상 7~14일) 재검사: 시정 완료 후 재검사 실시 시정 불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 검토, 자체상금 부과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없이 대금 지급 → 절차 위반 및 예산 부담 집행 납품과 동시에 즉시 검사 완료 → 형식적 검사 의혹 검사조서 미작성 또는 부실 작성 → 검사 실시 입증 곤란 규격 불일치 납품을 그대로 수용 → 계약 이행 부실 실무 적용 포인트 검수·검사는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대금 지급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서상의 규격·수량·품질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시 확인사항: • 계약서·견적서와 납품 물품의 규격·수량 일치 여부 • 하자 또는 훼손 여부 • 유효기간·인증서·보증서 등 구비 여부 • 설치·시운전 필요 물품의 경우 정상 작동 여부 검사 결과 불합격이면 반품 또는 교체를 요구해야 하며, 불합격 물품을 그대로 수용하면 예산낭비 및 업무 부실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조서는 법적 증빙 서류이므로, 담당자·검사자 날인, 검사일시, 합격·불합격 판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검사 없이 대금 지급" (절차 위반) • "계약 규격과 다른 물품을 수용" (계약 이행 부실) • "검사조서 미작성으로 검사 실시 여부 확인 불가" (증빙 부족)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는 며칠 이내에 해야 하나요?

A.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검사조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는 생략 가능하나, 검사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검사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고, 합리적 기한(통상 7~14일)을 부여합니다.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합니다.

Q. 물품 검수와 공사 검사의 차이는?

A. 물품 검수는 규격·수량·품질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공사 검사는 설계도서 대비 시공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공사에는 기성검사(중간)와 준공검사(최종)가 있습니다.

Q. 검사담당자는 누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담당자가 아닌 별도의 검사담당자를 지정합니다. 5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inspection>

32. 공동도급

공동도급(공동계약)의 유형, 구성원 자격, 지분율 기준, 이행방식별 차이점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9조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계약의 법률적 위치 - ****목적****: 대규모 공사 등에서 복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원칙****: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동계약 가능 -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 없는 입찰에서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포함 의무 - ****위임****: 공동도급의 유형, 구성원 간 책임한계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국가계약법 제25조도 동일한 취지로 공동계약을 규정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세부사항을 정함 ### 관련 조항 - ****제9조 (계약의 방법)****: 일반경쟁입찰 원칙 - 공동도급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 ****제15조 (계약보증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보증금 연대 납부 의무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참가 불가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공동도급의 유형 비교 | 구분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혼합방식 | |-----|-----|-----|-----| | ****정의**** | 자금·인력 등을 공동 출자·파견하여 이행 |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이행 | 공동이행 + 분담이행 혼합 | | ****이익/손실**** |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분담 | 각자 분담 부분에 대해 독립 | 방식별 적용 | | ****책임**** | 연대 책임 (원칙) | 분담 부분에 대해 각자 책임 | 방식별 적용 | | ****보증**** | 연대보증 | 분담보증 가능 | 혼합 적용 | | ****적합 유형**** | 종합건설 공사 | 전문공종 분리 가능 공사 | 대형 복합 공사 | ###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 항목 | 기준 | |-----|-----| | 최소 구성원 수 | ****2인 이상**** |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 ****5% 이상**** (원칙) | | 지분율 조정 범위 | 4%~6% (20% 범위 내 조정 가능) | | 대표사 최소 지분율 | 공동이행: ****30% 이상**** (원칙) | | 자격요건 | 해당 업종의 면허·허가·등록 등 보유 필수 | | 구성 시기 | ****입찰 전**** (현장설명 의무 시 현장설명일 전) | | 구성 변경 | 입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원칙) | ### 지역의무공동도급 (법 제29조 제2항)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지역제한 없는 공사 입찰 | | 지역업체 요건 |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 소재**** | | 의무 포함 | 지역업체 ****1인 이상**** 공동수급체에 포함 | | 예외 | 해당 지역 자격업체 10인 미만 시 면제 | | 국제입찰 | 외국건설업자 포함 시 ****적용 제외****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 ****구성 시기 및 방법****: 1. 입찰공고에 공동도급 허용 여부, 이행방식, 구성원 수 등 명시 2.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 완료 (현장설명 의무 시 현장설명일 전)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협정서**** 작성·제출 4. 대표사 선정 및 지분율 확정 ### 공동수급협정서 기재 사항 | 항목 | 내용 | |-----|-----| | 공동수급체 명칭 | 구성원 연명 또는 별도 명칭 | | 구성원 현황 | 상호, 대표자, 소재지, 면허 사항 | | 대표사 지정 | 공동이행: 대표사 1인 지정 | | 지분율 | 구성원별 출자비율 (최소 5%) | | 이행 책임 | 방식별 책임 범위 명시 | | 하자보수 | 구성원별 하자보수 책임 범위 | ### 공동이행방식 운영 기준 -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계약 이행 - 자금·인력·장비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투입 - 대표사가 대외적 업무 수행 (발주처 창구 역할) - 하도급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 필요 ### 분담이행방식 운영 기준 -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독립적으로 이행 - 각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해 직접 책임**** - 분담 내용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분담 부분의 하도급은 해당 구성원이 단독 결정 ### 혼합방식 허용 요건 - 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을 혼합하지 않으면 ****입찰진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 한정 - 공동이행 참여 구성원이 분담이행으로 중복 참여 ****불가**** (원칙)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혼동 → 책임 범위 착오 공동계약 구성원 간 분쟁 시 발주기관 개입 → 민사 문제 간섭 출자비율대로 공사 분담 미확인 → 이행 분쟁 대표사 단독 결정을 전체 의사로 간주 → 법적 효력 다툼 실무 적용 포인트 공동도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도급 방식: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전체가 연대하여 책임 (어느 업체든 전체 공사 책임) • 분담이행방식: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 공동계약 구성 요건: • 대표사 선정 (구성원 중 1개사) • 공동계약 협정서 작성 (출자비율, 분담내역 명시) • 모든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 충족 발주기관 유의사항: • 계약서는 대표사 명의로 작성하되, 구성원 전원 날인 필요 • 대금 지급: 대표사 계좌로 지급 (구성원 간 배분은 내부 문제) • 구성원 간 분쟁: 민사 문제이므로 발주기관 불개입 원칙 중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어느 구성원 1개사만 부도·파산이 발생해도 나머지 구성원이 전체 공사를 완수해야 하므로, 구성원의 재무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한 구성원의 부실 이행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공동계약 구성원 일부가 실제 공사 미참여" (형식적 공동계약) • "분담이행 비율과 실제 공사 분담 불일치" (협정서 위반) • "구성원 간 분쟁에 발주기관 부당 개입" (민사 불간섭 원칙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도급(공동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계약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대규모 공사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Q.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는?

A.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이 자금·인력을 공동 출자하여 함께 이행하고 연대 책임을 지며, 분담이행방식은 공종별로 분담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이행하고 분담 부분에만 책임을 집니다.

Q.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A.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입니다. 공사 특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20% 범위 내에서 4%~6%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사는 30% 이상 지분 보유가 권장됩니다.

Q.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무엇인가요?

A. 지역제한 없는 입찰에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본점이 있는 지역업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 자격업체가 10인 미만이면 면제됩니다(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

Q.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이행방식은 연대 책임이므로 나머지 구성원이 이행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부도 업체의 분담 부분에 대해 발주기관과 나머지 구성원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하에 구성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joint-contract>

33.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공종별 지체상금률, 면제·감면 사유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5.19

법률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체상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 ****성격:****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실손해 입증 불요) - ****의무:**** 지체 발생 시 반드시 징수 (재량이 아닌 기속행위) - ****위임:**** 지체상금률, 산정 방법, 면제 사유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을 독촉하고, 지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 **### 관련 조항 - **제16조 (검사):**** 이행기한 내 완료 여부를 검사로 확인 - ****제17조 (대가의 지급):****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공제 가능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복 지체 시 제재 가능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체상금 관련 조항 ### 제90조 (지연배상금) + 시행규칙 제75조 (지연배상금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한을 넘긴 경우, 지체일수에 지연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계약 유형 | 지연배상금률 (1일당) | |-----| |-----| ****공사**** | 계약금액의 ****0.5/1,000****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0.8/1,000**** |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 | 계약금액의 ****1.3/1,000**** | | ****운송·보관·양곡가공**** | 계약금액의 ****2.5/1,000**** | **### 지연배상금 산정 공식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 × 지체일수** **한도:** 지체상금의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3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 지체일수 산정 - **기산일:**** 계약상 이행기한의 ****다음 날**** - ****종료일:**** 이행 완료 통보일 (검사 합격일이 아님) - ****산입 제외:****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일수는 제외 **### 시행령 제90조 (지연배상금 — 면제·감면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면제 사유 | 내용 | |-----| |-----| ****천재지변**** | 불가항력적 사유 (태풍, 지진, 홍수 등) | | ****발주기관 귀책**** | 설계변경 지연, 용지 미확보, 민원 발생 등 | | ****설계변경**** |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기간 | | ****관급자재 지급 지연**** | 발주기관이 지급할 자재의 공급 지체 | | ****불가피한 사유**** | 기타 계약상대자 귀책이 아닌 합리적 사유 | **### 부분 이행 시 지체상금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 - 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이행****한 경우 - 기 이행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 기 이행 부분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 산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체상금 징수 절차 **절차:** 1. 이행기한 경과 확인 2.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 귀책인지 판단 3. 면제·감면 사유 검토 4. 지체일수 산정 (면제일수 공제) 5.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 x 상금률 x 지체일수) 6. 대금에서 공제 또는 별도 징수 **### 지체상금 산정 예시 **예시 1: 공사 계약**** - 계약금액: 5억원 -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20일 (지체 20일) - 지체상금: 5억 x 1/2,000 x 20일 = ****500만원**** ****예시 2: 물품 구매**** - 계약금액: 1억원 - 이행기한: 2025년 12월 31일 - 이행완료일: 2026년 1월 10일 (지체 10일) - 지체상금: 1억 x 0.8/1,000 x 10일 = ****80만원**** **### 지체상금 한도 - 지체상금 합계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 30% 한도 초과 시 → 계약금액의 30% 한도로 징수 - 계약금액의 30% 도달 시 → ****계약 해지·해제**** 검토 **### 지체상금 감면 신청 - 계약상대자가 ****감면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 - 발주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 - 천재지변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률은 얼마인가요?

A.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기준: 공사 0.5/1,000, 물품 제조·구매 0.8/1,000, 용역(수리·가공 등) 1.3/1,000, 운송·보관 등 2.5/1,000, 임대차 1/1,000 (1일당). 최고한도는 계약금액의 30%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Q. 지체상금 계산 방법은?

A.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예: 5억원 공사가 20일 지체 → 5억 x 0.5/1,000 x 20 = 500만원. 계약금액의 30%가 최고한도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Q. 지체상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A. 천재지변(태풍·지진 등), 발주기관 귀책(설계변경 지연·용지 미확보), 관급자재 지급 지연 등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Q.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인력 확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므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등 법정 사유만 면제됩니다.

Q. 지체상금은 대금에서 공제하나요?

A. 네, 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대금이 부족한 경우 별도로 징수하거나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4. 장기계속계약

수년에 걸쳐 이행되는 공사·용역을 연도별로 분할하여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개념, 계속비계약과의 차이, 체결 방법과 연차별 계약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각 연도 예산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이행 기간이 수 년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비로 이행에 수 년도가 걸리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 총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 연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계약을 체결 - **계속비계약** : 지방의회 의결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전체를 1개 계약으로 체결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7조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총 계약금액 2. 총 이행기간 3. 각 연도별 계약금액 및 이행기간 각 연도별 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된 후 체결한다. 장기계속계약의 차년도 계약은 전년도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한 후 체결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계속비 예산이 확보된 경우에 총 공사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1개의 계약으로 체결한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장기계속계약 실무) ###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비교 | 구분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 | |-----|-----|-----| | 예산 확보 | 연도별 예산 범위 | 총액 일괄 확보 | | 의회 의결 | 불필요 (연도별 예산) | 필요 (계속비 예산) | | 계약 횟수 | 연도별 분할 체결 | 1회 체결 | | 적용 사례 | 일반 다년도 공사 | 대규모 확정 공사 | ### 장기계속계약 체결 절차 1. **1차년도** : 총 공사 입찰·낙찰 → 1차년도분 계약 체결 (총액 부기) 2. **2차년도** : 예산 확정 → 2차년도분 계약 체결 3. **3차년도~** : 동일 반복 ### 주의 사항 - 총 계약금액은 입찰 시 결정된 금액으로 고정 - 차년도 예산 미확보 시 계약 이행 중단 가능 - 설계변경은 총액 기준으로 관리 - 물가변동 적용도 총액 기준으로 산정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매년 예산 미확보 시에도 자동 계약 연장으로 착각 → 예산 확보 필수 총 계약기간 5년 초과 체결 → 법 위반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적용 → 부적정 해지 조항 미명시 → 예산 미확보 시 해지 곤란 실무 적용 포인트 장기계속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여러 해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용역 등을 한 번에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공사·제조·용역 • 총 이행기간이 5년 이내 • 예: 건물 유지관리, 시설물 경비·청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계약 체결 방식 : • 총 계약금액으로 입찰 공고 및 계약 체결 • 계약서에 회계연도별 예산 확보 조건 명시 • 각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연도 금액 확보 중요 계약 조건 : • "각 회계연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예산 미확보로 인한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산 편성 : • 1차 연도: 계약 체결 시 이미 편성됨 • 2차 연도 이후: 매년 예산 편성 시 반영 필수 • 예산 미확보 시: 계약 해지 (계약상대자 귀책 아님) 장기계속계약 vs 단년도 반복계약 : • 장기계속계약: 한 번 계약, 총 계약금액 확정 • 단년도 반복계약: 매년 새 계약 체결 주의: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연간 금액이 적어도 총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면 입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5년 초과 장기계속계약 체결" (법 위반) • "예산 미확보 시 해지 조항 누락" (계약 조건 부적정) • "장기계속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 적용" (계약방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

A. 장기계속계약은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분할 체결하며, 지방의회 의결이 불필요합니다. 계속비계약은 지방의회가 총사업비를 의결한 계속비 예산으로 1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 다년도 공사는 대부분 장기계속계약입니다.

Q. 차년도 예산이 안 잡히면?

A. 장기계속계약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차년도 계약 의사 통보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1차년도 계약서에 총액을 써야 하나요?

A. 네. 1차년도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액과 총 이행기간을 부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기계속계약의 핵심으로, 차년도 계약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Q. 장기계속계약에서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설계변경은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금액을 산출한 후 잔여 연차에 반영하며, 이미 이행 완료된 연차분은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long-term-contract>

35. 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06.03

법률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계약 방법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과 예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위임받아 예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의 결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 (낙찰하한율)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친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의 품질보전을 위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저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하한율에 따른다. 핵심: 낙찰하한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예규로 정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공사는 89.7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 (낙찰하한율)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89.745%로 한다.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월 변경사항 기준: 87.745% (2025.12.31까지) 변경: 89.745% (2026.1.2부터) 물품 및 용역 계약에는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계산 예시: 예정가격 1억원, 낙찰하한율 89.745% → 최저가격 = 1억원 × 89.745% = 8,974만 5천원 → 8,974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실무 해설

person 실무자 해설 1. 낙찰하한율이 왜 필요한가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공사 품질 저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제도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도하여 공사 품질 보장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2026년 변경사항 (87.745% → 89.745%) 중요 변경: 2026년 1월 2일부터 2% 상향 조정 기준: 87.745% (2025년까지) 변경: 89.745% (2026년부터) 적용: 2026.1.2 이후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과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업체들의 투찰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무자는 변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 시 처리 무효 처리: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 재입찰: 모든 입찰이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재입찰 실시 주의사항: 재입찰 시에도 동일한 낙찰하한율 적용 4. 계산 방법 공식: 최저가격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예시 1: 예정가격 5억원 → 최저가격 = 5억 × 89.745% = 4억 4,872만 5천원 → 4억 4,872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예시 2: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예정가격 3억원, 복수예비가격 결정 금액 3억 100만원 → 최저가격 = 3억 100만원 × 89.745% = 2억 6,991만원 → 2억 6,991만원 미만 입찰은 무효 5. 자주 하는 실수 오류: 물품·용역 계약에도 낙찰하한율 적용 정답: 낙찰하한율은 공사만 적용됩니다. 물품·용역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오류: 적격심사 대상 공사도 낙찰하한율 적용 정답: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중 최저가이므로 낙찰하한율 적용 안 됨 오류: 2025년 입찰에 89.745% 적용 정답: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12.31 이전 공고는 87.745% 6. 실무 적용 포인트 공고일 확인: 2026.1.2 전후 공고 구분 필수 투찰률 전략: 낙찰하한율 인상으로 업체 전략 변화 예상 재입찰 대비: 낙찰하한율 미만 전원 무효 시 재입찰 준비 예정가격 검증: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정확한 계산 필요 7. 감사 지적 사례 사례: 낙찰하한율 미만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례 지적 내용: 시행령 위반, 계약 무효 재발 방지: 개찰 시 자동으로 낙찰하한율 검증하는 시스템 활용 핵심 요약 • 공사 낙찰하한율: 89.745% (2026.1.2부터) • 물품·용역은 낙찰하한율 없음 • 적격심사 대상은 낙찰하한율 미적용 •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무효 •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시점 구분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현재 공사 입찰의 낙찰하한율은 몇 %인가요?

A. 2026년 1월 2일부터 예정가격의 89.745%입니다. 이 비율 미만으로 입찰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Q.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언제 바뀌었나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87.745%였고, 2026년 1월 2일부터 89.7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 낙찰하한율은 물품·용역 입찰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니요. 낙찰하한율은 공사 입찰에만 적용되며, 물품·용역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낙찰하한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낙찰자의 결정)의 위임에 따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조에서 정합니다.

36.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종합쇼핑몰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 구매하는 MAS 제도. 2단계 경쟁, 구매 절차, 일반 입찰과의 차이점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를 구매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자 중에서 구매조건, 납품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급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방법, 수요기관의 최종 공급자 선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거나 상용화된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공급업체와 단가 및 그 밖의 거래조건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MAS의 법적 성격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단가계약의 특수한 형태**입니다. - 일반 단가계약: 발주기관이 특정 공급자와 1:1로 단가 계약 체결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와 동시에 단가 계약 체결 → 수요기관이 등록된 공급자 중에서 선택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MAS 등록 물품을 검색·비교하여 구매합니다.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쇼핑몰에서 직접 선택하므로 조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고시)

시행령

MAS 계약 구조 및 2단계 경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경쟁 방법의 특례)**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쟁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 MAS 2단계 계약 구조 **1단계: 조달청 ↔ 다수 공급업체** - 조달청이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품질·가격 심사 후 등록 - 등록된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상한가격 협상 포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단가 등록 - 계약 유효기간: 통상 1~3년 (연장 가능) **2단계: 수요기관 ↔ 최종 공급업체 선정** -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등록 물품 검색·비교 - 2단계 경쟁 또는 최저가 선택으로 최종 공급자 결정 - 납품 요청서 발행 → 납품 → 검수 → 대금 지급 ### 2단계 경쟁 의무 기준 | 구매금액 | 2단계 경쟁 의무 여부 | |-----|-----| | **2천만원 이하** | 의무 아님 (최저가 선택 가능) | | **2천만원 초과** | **의무** - 3개 업체 이상 비교견적 (2단계 경쟁) | ※ 2천만원 초과 구매 시 반드시 3개 이상 등록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고 비교·선택해야 합니다. ### MAS vs 일반입찰 비교 | 구분 | MAS(다수공급자계약) | 일반입찰 | |-----|-----| | 절차 | 쇼핑몰에서 선택 | 입찰공고 → 낙찰 | | 기간 | 1~3일 | 10일 이상 | | 적용 물품 | 규격 표준화 가능 물품 | 모든 물품·공사·용역 | | 예정가격 | 등록가격(상한가) 기준 | 별도 산정 | | 공급자 수 | 다수 등록업체 중 선택 | 입찰 참여업체 중 낙찰 | | 계약서 | 납품요청서로 대체 | 별도 계약서 작성 | | 적합 분야 | 사무용품·PC·소모품 등 | 공사·특수용역·대형 구매 | ### 수요기관의 MAS 활용 기준 및 제한 **활용 가능한 경우:** -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는 물품 (사무용품, IT 기기, 소모품 등) - 긴급 구매가 필요한 경우 - 반복적으로 소량 구매하는 물품 **제한 사항:** - 공사, 특수 용역 등 규격 표준화가 어려운 계약은 MAS 대상 아님 - 연간 구매 총액 관리 의무 (분할 구매 금지) - MAS 등록 가격 초과 구매 불가

시행규칙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고시) 핵심 내용 ### 조달청 고시 주요 규정 **MAS 등록 심사 기준:** - 품질인증서 또는 성능 시험 결과 제출 - 등록 상한가격 적정성 검토 (시중가격 대비) -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가격 적정성 재검토 **2단계 경쟁 방법:** 1. **가격경쟁:** 등록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 선택 2. **가격·성능 혼합경쟁:** 가격 외 납품 기간, 유지보수 조건 등 종합 평가 후 선택 **계약 유효기간:** 통상 1년 (연장 시 재심사)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절차 **단계별 구매 절차:** 1. **물품 검색** - 나라장터(G2B) 종합쇼핑몰에서 품목 검색 2. **업체 선택** - 등록업체 목록에서 가격·납품조건 비교 - 2천만원 이하: 1개 업체 직접 선택 가능 - 2천만원 초과: 3개 이상 업체 견적 요청 필수 3. **견적 요청** - 2단계 경쟁 대상인 경우 3개 이상 업체에 전자견적 요청 4. **납품 요청** - 최종 업체 선정 후 납품요청서 발행 (계약서 역할) 5. **검수/대금지급** - 납품 확인 후 검수조사 작성 → 대금 지급 ※ G2B 시스템에서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 2단계 경쟁 방법 상세 **가격경쟁:** - 3개 이상 등록업체에 전자견적 요청 - 제출된 견적 중 최저가 업체 선정 - 절차 단순, 규격이 동일한 물품에 적합 **가격·성능 혼합경쟁:** - 가격 외 납품기간, A/S 조건, 성능 등 종합 평가 - 평가표 작성 후 종합 점수 산정 - IT 장비, 정밀기기 등 성능 차이가 중요한 물품에 적합

자주 묻는 질문

Q. MAS 계약으로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MAS는 규격이 표준화된 물품(사무용품, PC, 소모품, 일부 IT 장비 등)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공사, 규격 표준화가 어려운 특수 용역,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맞춤형 장비 등은 MAS 대상이 아니며, 일반 입찰(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Q. 나라장터 쇼핑몰 구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요기관이 G2B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납품요청서가 계약서의 역할을 합니다. 납품요청서에는 품목, 수량, 단가, 납품 기한, 장소 등이 명시됩니다. 단, 검수조서는 반드시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Q. 2단계 경쟁 없이 1개 업체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A.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단계 경쟁 없이 등록업체 중 1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등 긴급구매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등록업체가 3개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한 임의 생략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mas-contract>

37. 복수예비가격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천하고 평균하는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초금액 작성부터 예정가격 확정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봉인한 후 개찰 전까지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정가격 vs 추정가격 vs 기초금액 -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시장가격 (VAT 제외)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예정가격**: 낙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제 가격 (예비가격 추천 결과)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기준(행안부 고시)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1. 거래 실례가격 2.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감정가격 4. 유사 사례의 계약단가 5. 복수예비가격 추천 입찰에 붙이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복수예비가격 산출 방법**: 1.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거래실례가 기준) 2.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3. 입찰자 대표가 4개 추천 4. 추천된 4개의 평균 → 예정가격 확정

시행규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 복수예비가격 산출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 | | 2단계 | 기초금액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 | 3단계 | G2B 시스템에 15개 예비가격 등록 (봉인) | | 4단계 | 개찰 시 입찰자 대표 4명이 각 1개씩 추천 | | 5단계 | 추천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6단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 낙찰 심사 | ### 적용 범위 - **의무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부분의 경쟁입찰) - **면제**: 수의계약, 원가계산 방식 사용 계약 ### 예비가격 예시 기초금액 1억원이면: - 예비가격 범위: 9,700만원 ~ 1억 300만원 - 15개 예비가격을 이 범위 내에서 균등 간격으로 생성 - 4개 추천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단일 예정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적용 대상 혼동 → 낙찰 방식 오류 복수예비가격 추천 과정 비공개 → 투명성 훼손 예비가격 산출 범위 착오 → 낙찰 기준가 오류 추천 절차 없이 임의 선정 → 절차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복수예비가격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천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 추정을 어렵게 하여 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추정가격 기준): • 공사: 1억원 이상 • 물품·용역: 일반적으로 단일 예정가격 (예외적으로 복수 적용 가능) 복수예비가격 작성 방법: 기초금액 산정 (원가계산 등)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5개 이상 15개 이하의 예비가격 작성 예비가격 범위: 기초금액의 ±2% ~ ±15% 범위 내 예정가격 결정 절차: 개찰 시 입찰자 또는 입찰자 대리인 입회 복수예비가격 중 추천으로 1개 선정 선정된 예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모두 무효 단일 예정가격 vs 복수예비가격: • 단일 예정가격: 1개 예정가격 (소액 공사, 물품 등) • 복수예비가격: 여러 개 예비가격 → 추천 (대형 공사) 중요: 복수예비가격 추천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입찰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선정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투명성 확보: • 추천 과정 입찰자 입회 • 추천 결과 즉시 공개 • 추천 과정 기록 보존 (영상 촬영 권장) 감사 지적 패턴: • "복수예비가격 추천 과정 미공개" (투명성 훼손) • "예비가격 범위 설정 오류" (절차 위반) • "입찰자 입회 없이 추천" (공정성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복수예비가격을 왜 쓰나요?

A. 예정가격을 하나로 고정하면 담합·유출 위험이 큼. 15개를 만들어 추천으로 4개를 고르면 어느 업체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어 공정한 입찰이 가능합니다.

Q. 기초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또는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Q. 추천에 참여 못하면?

A. 입찰자 수가 4명 미만인 경우 입찰자 전원이 추천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대신 추천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G2B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 처리합니다.

Q. 예정가격보다 낮게 입찰하면 무조건 낙찰인가요?

A. 예정가격 이하여야 낙찰 가능하지만, 적격심사가 있는 경우 낙찰하한율(공사 89.745%~90%, 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가격보다 낮더라도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낙찰될 수 없습니다.

38.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국가계약법(국가기관)과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 적용 대상, 수의계약 한도, 낙찰방법 등 핵심 차이점 비교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국가계약법 제1조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계약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두 법의 적용 대상 기관 차이 - **국가계약법** :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그 소속 기관,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지방계약법**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그 소속 기관(교육청 포함)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속 기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두 법의 기본 비교표 | 구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 | 정식 법령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교육청) | | 주무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 관련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관련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두 법은 체계가 유사하지만 세부 기준(수의계약 한도, 낙찰방법, 예정가격 산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vs 지방계약법 시행령 핵심 차이 ### 주요 차이점 비교표 | 비교 항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수의계약 한도 (물품·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 **수의계약 한도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공종별 세분화: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6억 등 예규에서 상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공종별 세분화 기준은 행안부 예규 참조) | | **1인 견적 기준** |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30조) | 물품·용역 5백만원 이하, 공사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30조) | | **낙찰 방법**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종합심사낙찰제 | | **적격심사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 **PQ(사전심사) 기준** | 기획재정부 고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 **낙찰하한율** | 공사 규모별 상이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 공사 규모별 상이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세부 구간 차이) | | **예정가격 작성** | 기획재정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예정가격 작성기준 | | **이의신청 절차** | 조달청·중앙관서 장에게 이의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의신청 | | **부정당업자 제재** | 중앙관서 장 처분, 조달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장 처분, 행안부 통보 | | **계약심사** | 각 중앙관서 계약심사 (대규모 공사) |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또는 감사·감독 기관 확인 | 실무에서 혼용 주의사항 1. **위탁사업 혼용 금지** :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탁해도,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계약법 적용. 2. **보조금 사업** : 국가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적용(국가계약법이 아님). 3. **공동 발주**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계약 시 별도 협약으로 적용 법령 명확히 정해야 함. 4. **조달청 위임 계약** : 조달청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 기준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차이 (세부) **계약 심사 주체 차이** - 국가계약법: 중앙관서(기재부·조달청)가 대규모 계약 심사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약심사, 또는 시·도지사·교육감에게 보고 **이의신청 대상 차이** - 국가계약법: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 - 지방계약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예규 적용 차이** -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규칙

시행규칙 차이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vs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구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 주요 내용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계약서 서식, 보증서 양식, 원가계산서 서식 | | 적용 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헌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 ### 서식 차이점 두 법의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서식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서식 (내용 유사, 서식 번호 상이)** - 입찰 참가신청서 - 계약서 - 원가계산서 (재료비·노무비·경비 산출 양식) - 이행보증서 (계약보증금 관련) - 선금보증서 **차이가 있는 주요 서식** - **적격심사 평가표** : 기획재정부 고시 양식(국가) vs 행정안전부 고시 양식(지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서** : 소관 부처 명칭 상이 - **이의신청서** : 제출 대상 기관 상이 ■ 실무 주의사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서식을 제공합니다. 공고문에서 발주기관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A.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재원이 국가보조금이더라도 집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법령인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라야 합니다.

Q. 교육청 산하 학교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A.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집행기관(교육감 소속)으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청 및 그 산하 학교는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를 적용합니다.

Q. 두 법의 수의계약 한도가 같은가요?

A. 기본 한도는 동일하나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로 기본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재해·긴급 상황 등 특수 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허용 요건, 지역 특성 반영 기준 등 세부 규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소관 예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national-vs-local-contract-law>

39. 대금지급

계약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기한, 지연이자, 선금 정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대금지급 실무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6조의2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가 지급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완료한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전제조건:**** 검사(검수) 완료가 대가 지급의 선행 조건 - ****의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법률상 의무) - ****위임:**** 선금·기성금·준공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대가 지급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발주기관은 지급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17조 (선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만 그 선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금의 지급 시기·방법·한도 및 선금의 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금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상대자의 자금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계약이행 촉진 - ****성격:**** 계약대금의 선금(미리 지급하는 금액) - ****사용 제한:**** 반드시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 ****위임:**** 선금률, 지급 절차, 정산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관련 조항 - ****제16조 (검사):****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 가능 - ****제30조 (지체상금):**** 대금에서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 ****제15조 (계약보증금):**** 대금 지급과 별개로 보증금 관리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대금지급 관련 조항 ### 제68조 (대가의 지급)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부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가 지급 기한 요약 | 구분 | 기한 | 기산일 | |-----|-----|-----| | ****대가 지급**** | ****5일 이내**** |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 | | ****검사 완료**** | ****14일 이내**** |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날 | | ****전체 소요기한**** | ****최대 19일**** | 이행완료 통보 ~ 대금 지급 | **###** 제53조 (선금의 지급)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선금 지급 기준: | 계약 유형 | 선금률 | |-----|-----| | ****공사****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물품 제조·구매**** | 계약금액의 ****70% 이내**** | | ****용역**** |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선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계약 목적물의 제조·구매에 필요한 ****자재비·노무비**** 등 - ****하도급대금**** 지급 선금을 지급받은 자는 ****선금 사용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4조 (기성대가 및 기납대가의 지급)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성대가의 산정: - 기성검사 합격 부분에 대해 ****계약 단가**** 적용 - 선금 지급분은 기성비율에 따라 ****선금 공제**** 후 지급 - 기성대가 = (계약 단가 x 기성수량) - 선금공제액 기성검사 주기: - ****월별 기성:**** 매월 시공 또는 이행 부분에 대해 검사 - ****공정률 기성:**** 일정 공정률 도달 시 검사 **###** 제55조 (준공대가의 지급)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준공대가 산정: - 총 계약금액에서 기 지급한 ****선금·기성대가****를 공제 - 지체상금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공제**** 후 지급 **###** 제68조의2 (지연이자) 대가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항목 | 내용 | |-----|-----| | ****이자율****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이율 | | ****기산일**** | 지급 기한의 다음 날 | | ****종료일**** | 실제 지급일 | | ****산정**** | 미지급 금액 x 이자율 x 지연일수/365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금 지급 청구 절차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절차:**** 1. 이행 완료 후 ****검사(검수) 합격**** 확인 2. ****대금 지급 청구서**** 제출 (세금계산서 포함) 3. 발주기관이 청구 내용 검토 4. ****5일 이내**** 대금 지급 **###** 대금 지급 청구서 첨부 서류 | 내용 | |-----|-----|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재 | | ****검사조서 사본**** | 검사 합격 증빙 | | ****이행(납품) 확인서**** | 물품 인수 확인 |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서**** | 하도급 시 필수 첨부 | | ****선금 사용 내역서**** | 선금 지급 시 정산용 | **###** 선금 사용 및 정산 ****선금 사용 제한:**** -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 (타 용도 사용 금지) - 자재비,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에 사용 - 선금 사용 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선금 정산 방법:**** -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을 ****기성비율에 따라 공제**** - 정산 공식: 선금공제액 = 선금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 - 준공 시 ****잔여 선금 전액 정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직접지급 사유:****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직접지급 절차:****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 요청서 제출 2.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3.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실 통보 4.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검사 완료 전 대금 지급 → 절차 위반 지급 기한 초과 → 지연이자 발생 세금계산서 없이 지급 → 증빙 부족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임에도 원수급인에게 지급 → 법 위반 실무 적용 포인트 대금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 국가기관: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검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하도급 대금: 원수급인이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계약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원수급인에게 지급 시 법 위반이며,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 전 반드시 징구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다. 감사 지적 패턴 • "검사 전 대금 선지급" (절차 위반) • "대금 지급 기한 초과로 지연이자 발생" (예산 추가 부담)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A.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검사 기한(14일)을 포함하면 이행완료 통보부터 최대 19일이 소요됩니다.

Q. 선금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A.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금 지급 시 선금 보증서를 징구해야 하며, 해당 계약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기성대가에서 선금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선금공제액 = 선금액 x (당해 기성액 / 계약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억원, 기성 4억원이면 공제액은 1.2억원입니다.

Q.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급 기한(5일)을 초과하면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별도 청구가 없어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직접지급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ayment>

40. 지체상금 감면 절차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등 정당 사유 시 지체상금 감면 가능. 신청서 제출 → 심의 → 승인 절차

법령 기준일: 2026.04.30

법률

지방계약법 제30조 (지체상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의 **요율·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30조) → 시행령(제74조의2) → 집행기준 지체상금의 요율(1일당 1/1000)과 감면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2 (지체상금) ### 지체상금 요율 (기본)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납기일(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 매일 부과됩니다. **계산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1/1000 **최고 한도:** 계약금액의 **10%** (100분의 10,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 ### 지체상금 감면 가능 사유 (5가지) 1. **발주기관 귀책:** 설계도서 지연 제공, 부지 미확보 2. **천재지변:** 태풍, 지진, 폭우 등 불가항력 3. **관계 법령 변경:** 공사 중 법령 개정으로 지연 4. **불가항력:** 전쟁, 내란, 감염병 5. **기타 정당 사유:** 발주기관 인정하는 사유 **감면 불가 사유**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지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 감면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감면 신청서 제출** - 준공(납품) 후 30일 이내 제출 권장 - 필수 첨부: 지연 사유 증빙 자료 **2단계: 발주기관 검토** - 귀책 사유 확인 - 지연 일수 산정 **3단계: 감면 심의** -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 감면을 결정 (전액/일부) **4단계: 감면 결정 통보** - 승인 또는 기각 - 감면액 통보 --- ### 감면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 | 사유 | 첨부 서류 | |-----|-----| | **발주기관 귀책** | 자료 요청 공문, 지연 확인서 | | **천재지변** | 기상청 증명서, 피해 현장 사진 | | **법령 변경** | 개정 법령, 관련 공문 | | **불가항력** | 관계 기관 확인서 | | **증빙 자료 중요성** 구두 설명만으로는 감면 승인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세요.

실무 해설

지체상금 감면 실무 가이드 ### 지체상금 계산 예시 **예시 1: 공사계약** - 계약금액: 1억원 - 준공기한: 2026년 3월 1일 - 실제 준공: 2026년 3월 11일 (10일 지연) - 지체상금: 1억 × 10일 × 1/1000 = 100만원 **예시 2: 물품계약** - 계약금액: 5,000만원 - 납품기한: 2026년 4월 10일 - 실제 납품: 2026년 4월 25일 (15일 지연) - 지체상금: 5,000만 × 15일 × 1/1000 = 75만원 --- ## 감면 가능 vs 불가능 사례 ### 감면 가능 사례 **사례 1: 발주기관 자료 지연** - 상황: 설계도서 제공이 3주 지연됨 - 지연 일수: 21일 - 감면 결정: **전액 면제** **사례 2: 폭우로 공사 중단** - 상황: 집중호우로 10일간 공사 불가 - 지연 일수: 10일 - 감면 결정: **10일분 전액 면제** **사례 3: 법령 변경** - 상황: 환경법 개정으로 추가 절차 필요 (15일 소요) - 지연 일수: 15일 - 감면 결정: **15일분 전액 면제** --- ### 감면 불가 사례 **사례 1: 인력 부족** - 상황: 기술자 확보 실패로 공사 지연 (7일) - 감면 신청: 거부 - 이유: 계약상대자 관리 책임 **사례 2: 자재 조달 지연** - 상황: 자재 납품업체 선정 실패 (12일 지연) - 감면 신청: 거부 - 이유: 계약상대자 과실 **사례 3: 단순 착오** - 상황: 준공기한을 잘못 알고 지연 (3일) - 감면 신청: 거부 - 이유: 정당 사유 없음 --- ## 감면 신청서 작성 템플릿 지체상금 감면 신청서 1. 계약명칭: ○○○ 공사 2. 계약금액: 100,000,000원 3. 계약상대자: (주)○○건설 (대표: 홍길동) 4. 계약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3월 1일 5. 실제 준공일: 2026년 3월 11일 (10일 지연) 6. 지체상금 산정 - 지연 일수: 10일 - 지체상금: 100,000,000원 × 10일 × 1/1000 = 1,000,000원 7. 감면 신청 사유 2026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 추가 제공 지연으로 공사가 10일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한 지연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의2에 따라 지체상금 전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8. 첨부 서류 - 설계도서 요청 공문 (2026.1.5) - 설계도서 제공 지연 사유서 (발주기관 작성) - 공사 중단 확인서 - 공사 일지 (1.15 ~ 1.24) 2026년 3월 15일 (주)○○건설 대표이사 홍길동 (인)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체상금은 자동으로 부과되나요? A: 네, 준공(납품) 지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 시 공제 처리됩니다. **Q2. 감면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명확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준공(납품) 후 3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Q3. 일부 감면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체 지연 일수 중 발주기관 귀책 일수만큼 감면됩니다. **Q4. 감면 신청이 거부되면? A: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을 검토 후 진행하세요. **Q5. 지체상금 최고 한도는? A: 계약금액의 30%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예: 1억원 계약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지체일수는 계약 납기일(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품·준공일까지입니다.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공사·물품·용역)별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지체상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단서). 한도를 초과하면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발주기관 귀책(도면·부지 인도 지연, 공사 중지 지시), 천재지변, 불가항력(전쟁·감염병 등) 등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계약상대자 과실(인력 부족, 자재 조달 실패 등)로 인한 지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체상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계약상대자가 지연 사유별 일수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감면 신청하면, 발주기관이 검토해 공제 일수를 정하고 지체상금을 재산정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므로 기상청 자료·지연 확인 공문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enalty-reduction-procedure>

41. 이행보증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이행보증(계약이행보증서)의 요율, 보증기관, 면제 요건, 보증금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보증금과의 차이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이행보증 vs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계약 불이행 시 귀속되는 금전 (납부 방식) - **이행보증서**: 보증기관이 계약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보증 (보증서 방식)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행보증서(보증기관 발급)로 대체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3조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3조 (계약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 비율 | 계약 유형 | 보증금 비율 | |-----|-----| 일반 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협상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소액 계약 | 면제 가능 (2천만원 이하) | 납부 방법: 현금, 보증서(서울보증보험·공제조합), 국채·공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의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3. 계약이행 실적이 우수한 업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4. 단가계약에서 1회 발주금액이 소액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보증금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행보증 실무) ### 이행보증서 발급 기관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계약)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대한전문건설협회 | 계약이행보증서 | ### 보증금 청구 절차 계약상대자 이행 포기 또는 계약 해지 시: 1. 계약 해지(해제) 통보 2.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3. 보증기관 조사·확인 4. 보증금 지급 (또는 대체 이행) 5. 재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잔여분 이행 ### 면제 판단 기준 - 2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재량) - 국가·지자체 계약: 면제 가능 - 단가계약 소액 발주: 면제 가능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 동일시 → 개념 혼동 이행보증보험 가입 대상 착각 → 법적 의무 미준수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확인 소홀 → 보증 공백 이행보증 미가입 시 제재 조치 누락 → 관리 소홀 실무 적용 포인트 이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이행보증 vs 계약보증금: • 이행보증: 건설공사 이행을 보장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 계약보증금: 계약 이행 일반 보증 (지방계약법, 10%)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 •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 원칙: 계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전 가입 • 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이행보증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0% 이상 • 보증기간: 공사 기간 + 하자보수기간 이행보증과 계약보증금 관계: •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이행보증이 계약보증금을 대체하는 효과 이행보증 미가입 시 제재: • 계약 해지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발주기관 확인 사항: • 착공 전 이행보증서 제출 확인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공사 기간 + 하자보수기간 포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확인 중요: 이행보증은 건설공사만 대상이며, 물품·용역 계약은 이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보증금만 징수). 감사 지적 패턴 •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이행보증 미가입" (법 위반) • "이행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 "이행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누락" (관리 소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국토교통부, 조달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보증서와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A.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계약 이행 담보)이지만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국채를 납부하는 방식이고, 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행보증서를 사용합니다.

Q. 이행보증금은 몇 %인가요?

A.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계약이면 1천만원 이상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소액의 보증료를 내고 발급받습니다.

Q. 2천만원 이하 계약도 이행보증서 내야 하나요?

A.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므로, 기관의 계약 관리 규정을 확인하세요.

Q. 계약상대자가 이행을 포기하면?

A.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합니다. 보증기관은 조사 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공사를 대체 이행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도 병행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erformance-guarantee>

42. 물가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C)의 요건,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산정,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 방법, 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지방계약법 제22조는 물가변동·설계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을 포괄하는 규정입니다. 시행령에서 물가변동(제73조)과 설계변경(제74조)을 각각 구분하여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 형평성 확보 - ****성격:**** 계약금액의 사후적 변경 —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 - ****법적 근거:****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한 법정 조정 제도 - ****위임:**** 조정 요건(등락률·경과기간), 조정 방법(지수/품목),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물가변동 조정(ESC)은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등에서 공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 관련 조항 - **제22조 자체:**** 동일 조항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변경을 포괄하며, 시행령에서 각각의 조정 방법을 구분 -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물가변동 조정과 별개 사유 - ****시행령 제73조 (물가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제15조 (계약보증금):****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증금 재산정 - ****제17조 (대가의 지급):**** 조정 후 변경된 금액으로 대가 지급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물가변동 관련 조항 ### 제7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 체결일(조정 기준일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조정 방법 | 조정 요건 (등락률) | |-----|-----| | ****지수조정률**** |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 | ****품목조정률**** |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 **### 조정 요건 정리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 가능: > 1.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2. 등락률이 ****3% 이상**** 변동 **### 지수조정률 방식 (제73조 제2항)**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산정: > ****지수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등락률 x 해당 비목의 계약금액 비중**** ****계산 공식:**** | 항목 | 산식 | |-----|-----| | 등락률(K) | $K = (\text{조정기준일 지수} - \text{입찰일 지수}) / \text{입찰일 지수}$ | | 물가변동 조정금액 | $\text{조정금액} = \text{계약금액} \times K$ (각 비목별 가중평균) | ****특징:**** - 비목별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개별 품목 변동이 아닌 ****비목군 전체의 변동률**** 반영 - 산정이 비교적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 **### 품목조정률 방식 (제73조 제3항)**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비목의 가격변동****을 직접 산정: > ****품목조정률 = 각 품목의 (변동 후 단가 - 변동 전 단가) x 수량의 합계 / 계약금액**** ****특징:**** - 실제 품목별 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 - ****정확도가 높으나**** 산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이 클 때 유리 **### 조정 방법의 선택 -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 - 단,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최초 선택 방법 유지)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 제73조 (선금 지급분의 제외)** 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 지급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text{조정금액} = \text{물가변동 조정금액} \times (1 - \text{선금 비율})$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0% 지급, 지수조정률 5%인 경우 - 물가변동 조정금액: 10억 x 5% = 5,000만원 - 선금 제외 후 조정금액: 5,000만원 x (1 - 0.3) = ****3,500만원******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물가변동 조정 업무 절차 **전체 흐름:**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지수/품목) → 조정을 산정 → 조정금액 산출 → 계약금액 변경 **### 조정 기준일과 산출일 | 구분 | 의미 | 결정 방법 | |-----|-----| | ****조정기준일**** |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출하는 ****기준 시점**** |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날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날) | | ****산출일**** | 변동된 가격을 ****실제 산출하는 시점**** | 조정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산출 | **### 지수조정률 산정 절차** 1. ****비목 분류:**** 계약금액을 노무비·재료비·경비 등 비목별로 분류 2. ****지수 확인:****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또는 수입물가지수) 확인 3. ****등락률 산정:**** 각 비목별 (조정기준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입찰일 지수 4. ****가중평균:**** 비목별 등락률 x 비목별 금액 비중 5. ****조정률 산출:**** 가중평균 등락률이 3% 이상이면 조정률로 확정 **### 품목조정률 산정 절차** 1. ****품목 확인:**** 계약 내역서의 모든 품목 확인 2. ****가격 조사:**** 조정기준일 기준 각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조사 3. ****변동액 산정:**** (변동 후 단가 - 변동 전 단가) x 수량 4. ****합산:**** 전체 품목의 변동액 합산 5. ****조정률 확인:**** 합산액 / 계약금액이 3% 이상이면 조정 **### 조정 신청 및 처리 기한 - **조정 신청:****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처리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통보 - ****계약변경:****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물가변동률 3% 미만도 조정 요청 → 법적 요건 미충족 조정 신청 기한 경과 후 신청 → 권리 상실 물가지수 적용 오류 (지수 종류, 기준시점 착오) → 조정액 오산정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에도 조정 → 부당 지급 실무 적용 포인트 물가변동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물가 급등·급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정 요건: • 계약기간 90일 이상 공사·제조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경과 후 • 물가변동률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조정 산식: 조정액 = 계약잔액 × (변동지수 / 기준지수 - 1) × 조정률 조정 기준일: •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일 • 재조정: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일 조정 신청 기한: • 준공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준공 후에는 조정 불가 (권리 소멸) 중요 유의사항: • 물가지수는 한국은행 발표 지수 또는 조달청 발표 건설공사 물가지수 사용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기간은 조정 대상 제외 • 물가 하락 시에도 조정 대상 (계약금액 감액)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물가변동 조정이 예상되면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물가변동률 3% 미만임에도 조정" (법적 요건 미충족) • "계약상대자 귀책 공기 연장 기간에 대한 조정" (부당 지급) • "물가지수 적용 오류로 과다 조정" (조정액 산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A.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 물가지수를 기초로 비목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고, 품목조정률은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수조정률이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Q.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선금 지급분은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 (1 - 선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 조정금액 5,000만원, 선금 30%이면 실제 조정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Q. 물가가 하락해도 조정하나요?

A. 네. 물가가 3%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Q. 2차 이후 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은?

A. 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등락률 3% 이상이면 조정 가능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rice-escalation>

43. 수의시담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와의 가격 협상 절차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수의시담은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의 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수의시담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4조 (수의시담) 계약담당자가 제70조에 따른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견적가격이 적정한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__수의시담에 응할 것을 요청__할 수 있다. 수의시담에 응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시담 없이 업체 제시 금액 그대로 계약 체결 → 감사 지적 대상 1회 시담 후 곧바로 타결 → 협상 노력 부족으로 지적 가능 협상 과정 기록 미비 → 업체 선정의 공정성 입증 곤란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시담은 단순히 "가격 깎기"가 아니라 적정가격 산정 과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격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최소 2~3회 협상을 권장하며, 각 협상 단계별로 시담조서를 작성하여 협상 근거를 명확히 해야 감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업체 요구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낭비" (협상 미실시) • "시장가격 조사 없이 계약금액 결정" (적정성 검토 부족) • "시담 과정 기록 부재로 공정성 입증 실패"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시담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수의시담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시담 후에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 처리하거나 재공고해야 합니다.

Q. 수의시담 시 예정가격을 공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예정가격은 수의시담 시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정가격 공개는 감사 지적 사유입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rice-negotiation>

44. 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금액, 사유에 따라 1인/2인 견적 구분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구분 | 금액 기준 | |-----|-----| | 공사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 공사 (기타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 특례 적용 (더 높은 금액 적용) | 대상 기업 | 물품·용역 한도 | |-----|-----| | 소기업·소상공인 | **1억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하 | | 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 30% 이상) | **5천만원** 이하 | | ### 1인 견적 기준 (시행령 제30조) | 구분 | 1인 견적 가능 금액 | |-----|-----| | 공사·물품·용역 (일반) | **2천만원** 이하 | |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 **5천만원** 이하 |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될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1인 견적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무 해설

수의계약, 편리하지만 가장 많이 지적됩니다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지만, 그만큼 감사 지적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특히 ****금액 기준 초과****, ****분할계약****, ****견적서 사후 징구****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 분할계약**** 추정가격이 2,100만 원인 물품을 1,00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계약하는 경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금지하는 분할계약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업 목적의 계약은 하나로 봐야 한다"는 원칙은 매우 넓게 해석되므로, 별개 사업으로 처리하려면 목적의 독립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견적서 사후 징구**** 계약 체결 후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계약 전****에 징구하고, 징구 날짜가 기록에 남도록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정가격 생략**** 소액계약이라도 예정가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 확인서나 유사납품 실적으로 산출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감사 시 "가격 적정성 검토 소홀"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시, 단순히 ****"금액이 기준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이라는 문구만 기재하면 특정 업체 선정 사유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 이유(최저가 견적, 해당 분야 전문성, 기존 납품 실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시스템(나라장터·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화나 이메일로 견적을 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감사 지적 실사례 패턴** > ****사례 1. 분할계약**** — 한 학교에서 3,800만 원 규모의 PC·모니터를 1,900만 원씩 나눠 1인 견적 수의계약 두 건으로 처리. 감사 결과 "같은 시기, 동일 목적의 구매를 분리해 한도를 회피한 분할계약"으로 지적. > ****사례 2. 견적서 날짜 불일치**** — 계약서 날짜는 3월 5일, 첨부된 견적서 날짜는 3월 8일. "계약 성립 후 견적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 지적. > ****사례 3. 변경계약으로 한도 초과**** — 1,950만 원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 체결 후, 공사 범위 추가를 이유로 500만 원 변경계약. 총액 2,450만 원이 되어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반 지적.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기본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1억원,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5천만원)

▶ 1인 견적: 일반 2천만원 이하, 특례 기업 5천만원 이하

▶ 2인 이상 견적: 위 금액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Q. 1인 견적과 2인 견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견적서를 받는 업체 수의 차이입니다.

- ▶ 1인 견적: 한 업체에서만 견적서 징구 (소액)
- ▶ 2인 이상 견적: 두 업체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 선정

2인 견적 시에는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해야 합니다.

Q. 분할계약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금액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 ▶ 지방계약법 위반
- ▶ 감사 지적 1순위 사항
- ▶ 관련자 징계 가능

동일 목적의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등록이 필요한가요?

A.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 2천만원 이하: 나라장터 등록 없이 가능
- ▶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 또는 2인 견적

다만 소액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동일 업체와 반복 수의계약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면 동일 업체 반복 계약 가능
- ▶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합리적 사유 명시
- ▶ 가급적 다양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

(참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

45. 수의계약 금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및 견적 방법 총정리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종합【수의계약 가능 금액】(추정가격 기준, 부가세 별도) 1. 물품 구매·용역: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2.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3.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4. 공사 (기타): 1.6억원 이하【견적 방법별 금액 기준】1. 1인 견적 · 물품·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2. 2인 이상 견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 공사: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시행령

금액별 계약 방법 결정 플로우 [물품/용역]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초과 ~ 한도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한도 초과 → 경쟁입찰 (한도: 일반 2천만원,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1억원) [공사 - 종합공사 기준] |— 200만원 미만 → 카드결제 (계약서 생략 가능) |— 200만원 ~ 2천만원 →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 4억원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G2B 전자견적 필수 |— 4억원 초과 → 경쟁입찰 [G2B 전자견적 의무 범위]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인 수의계약은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S2B) 전자견적 의무 (시행령 제39조) ※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전화·이메일 등) 견적 가능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구분]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 계약방법(수의/입찰) 결정 기준 예정가격 = 거래실례·원가계산 등으로 산정 → 낙찰 상한(견적가격 비교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25조 (소액 수의계약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 다만, 전문공사·기타공사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 **2.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3. 용역(학술연구용역 포함)** - 추정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용역 --- ### 관련 조문: 영 제25조 제1항 각호별 세부 기준 ##### 제1호 (금액 기준) 가. 공사: 2억 원 이하 나. 물품 제조·구매·용역: 5,000만 원 이하 ##### 제2호 (경쟁입찰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 경쟁입찰 실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1인뿐이어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쳐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상:** 재공고 후에도 낙찰자 미결정 시 최초 입찰자 또는 재공고 입찰자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가능 ##### 제3호 (특허·저작권 보유)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저작권이 있는 물품·서비스로서 다른 방법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발주기관이 해당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근거를 기록·보관 ##### 제4호 (국가안보·비밀 유지) - 국가 안전보장, 군사 기밀 유지 또는 보안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 - 관계 기관(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의 보안 지정 확인 필요 ##### 제5호 (조달청 단가계약 이용) - 조달청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계약 등 해당 ##### 제6호 (천재지변·재해) - 천재지변, 재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에 있어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사유 해소 후에는 반드시 일반 입찰로 전환 --- ### 수의계약 금액 산정 주의사항 ##### 분할 금지 원칙 - 동일한 목적의 계약을 분할하여 각각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 분할 여부 판단 기준: 동일 사업 목적, 동일 기간, 동일 장소, 동일 업체 여부 - 분할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방법을 재결정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처리 - 수의계약 금액 기준(2억 원, 5,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기준 초과하더라도 세전 금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의계약 가능 ##### 2인 이상 견적 징수 의무 - 수의계약 금액 기준 이하라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는 것이 원칙 - 단, 재해·긴급 사유, 특허·저작권, 유일 공급업체 등의 경우 1인 견적 허용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공급가액만 보고 판단 → 부가세 합산 시 한도 초과 물품과 용역을 합산하여 계산 → 각각 별도 산정해야 함 연간 총액이 아닌 1회 금액만 고려 → 장기계속계약 시 오류 기존 계약과 추가 계약을 별개로 판단 → 사실상 동일 계약은 합산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금액 판단 시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서 정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 공사: 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6억 (부가세 포함) • 물품·용역: 일반 2천만원, 특례 5천만원~1억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회계연도별 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 기준 동일한 목적·시기의 계약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금액을 낮추는 행위는 분할계약 금지 위반으로 감사 1순위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 패턴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수의계약 여부 판단" (금액 산정 오류) • "동일 목적의 계약을 여러 건으로 분할" (분할계약 금지 위반) • "특례 대상 확인 없이 1억원 한도 적용" (업체 자격 미확인)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금액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A.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부가세 별도(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 부가세 포함 2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부가세 포함 2천만원 \div 1.1 = 2,000만원(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므로 물품·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정확히 한도와 같을 때는 부가세 제외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세요.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amount>

46.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작성 필수. 템플릿과 사례 제공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9조) → 시행령(제25조) → 집행기준 수의계약 사유서는 위 법령에 따른 **적법성 입증 문서**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작성·결재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 주요 수의계약 사유 (사유서에 반드시 명시) | 사유 유형 | 법령 근거 | 주요 내용 ||-----|-----|-----| **소액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추정가격 일정 금액 이하 (공사 2~4억, 물품·용역 2천만원 등) || **긴급 수의**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천재지변, 긴급 행사 등 경쟁 여유 없음 || **특정 수의**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특정 기술·위치·품질로 경쟁 불가 || **국가기관 수의**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 || **불성립 수의** |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입찰 불성립 시 최초 입찰자와 계약 | **중요** 사유서에는 **정확한 법령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만 쓰지 말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금액별 수의계약 한도 (재확인) | 계약 종류 | 수의계약 가능 금액 | |-----|-----|-----| 공사 (종합) | 4억원 이하 || 공사 (전문) | 2억원 이하 || 공사 (기타) | 1억 6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 2천만원 이하 (특례: 5천만원~1억원) |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기재 항목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기본 정보 - 계약명칭 -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계약 예정일 또는 체결일 ##### 2. 법령 근거 (필수)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조 **올바른 예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 3. 구체적 사유 - 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지 - 해당 사유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 - 긴급 수의의 경우: 긴급성 입증 자료 첨부 #####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왜 이 업체와 계약하는지 - 견적서 제출 업체 수 (1인/2인 이상) - 최저가 선정 여부 **감사 지적 주의**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령 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세요.

실무 해설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실무 가이드 ### 작성 전 체크리스트 ##### 1단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 []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한도 이하인가? - []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 [] 긴급 수의의 경우: 경쟁입찰 시간 여유가 정말 없는가? ##### 2단계: 법령 근거 정리 - [] 해당하는 법령 조항 정확히 확인 (제○조 제○항 제○호) - [] 시행령과 법률 조항 모두 명시 - [] 입찰집행기준 해당 조항 확인 ##### 3단계: 구체적 사유 작성 - [] "급해서", "예산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 금지 - []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 [] 긴급성/특정성 등을 입증할 자료 첨부 ##### 4단계: 결재 및 보관 - [] 계약 체결 **전** 사유서 결재 완료 - [] 감사 대비 사유서 사본 보관 (최소 5년) --- # 사유 유형별 작성 템플릿 ### 1. 소액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명칭: ○○○ 물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계약상대자: (주)○○○ (대표: 홍길동)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계약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 - 최저가 업체 선정: (주)○○○ (15,000,000원) - 납품 이력: 2025년 유사 물품 납품 실적 있음 7. 첨부서류 - 견적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긴급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긴급) 1. 계약명칭: ○○○ 긴급 복구 공사 2. 추정가격: 45,000,000원 3. 계약상대자: ○○건설(주) (대표: 김철수)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6년 ○월 ○일 폭우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며,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0일)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긴급성 입증 - 피해 발생일: 2026년 ○월 ○일 - 2차 피해 우려: 시설 사용 불가, 안전사고 위험 - 복구 소요 기간: 7일 (즉시 착공 필요) 7.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긴급 대응 가능) - 유사 공사 실적 보유 - 견적가격 적정성 검토 완료 8. 첨부서류 - 피해 현장 사진 - 긴급성 검토 의견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3. 특정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특정) 1. 계약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2. 추정가격: 30,000,000원 3. 계약상대자: (주)○○테크 (대표: 이영희)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용역은 2024년 (주)○○테크가 개발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으로서, 소스코드 및 개발 문서가 해당 업체에만 보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의 기술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특정성 입증 - 원 개발업체: (주)○○테크 (2024년 계약) - 소스코드 저작권: (주)○○테크 보유 - 타 업체 수행 불가 사유: · 소스코드 미공개 · 시스템 구조 문서 비공개 · 보안상 외부 공개 불가 7. 계약금액 적정성 검토 - 전년도 계약금액: 28,000,000원 - 물가 상승률 반영: 7% (2,000,000원) - 적정 단가 검토 완료 8. 첨부서류 - 원 개발 계약서 사본 - 저작권 증명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 입찰 불성립 후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입찰 불성립) 1. 계약명칭: ○○○ 공사 2. 추정가격: 150,000,000원 3. 계약상대자: ○○건설(주) (대표: 박민수)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026년 ○월 ○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 참가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최초 입찰자인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입찰 불성립 경위 - 최초 입찰 공고일: 2026년 ○월 ○일 - 입찰 참가자: 1개 업체 (○○건설(주)) - 불성립 사유: 최소 2개 업체 미달 - 재입찰 실시 여부 검토: · 공사 긴급성 고려 시 재입찰 부적합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 적정 7. 계약금액 조정 - 최초 입찰가격: 155,000,000원 - 예정가격: 150,000,000원 - 조정 후 계약금액: 150,000,000원 (예정가격 이내) 8.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 입찰 결과 조서 - 불성립 사유서 - 견적서 (조정 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작성 시 자주하는 실수...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A. 계약 목적·내용, 수의계약 사유(해당 법령 조항),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계약 예정금액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처럼 정확한 호수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Q. '급해서'나 '예산이 부족해서'도 수의계약 사유가 되나요?

A. 안 됩니다.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 집행 기한이 촉박해서'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령(지방계약법 제9조·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사실과 함께 적어야 하며, 추상적 사유는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Q.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할 때 사유서에 무엇을 적나요?

A. 1·2차 입찰 공고일·공고번호, 각 입찰의 응찰 현황과 유찰 사유, 수의계약 예정금액이 최초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임을 명시하고, 상대자 선정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2회 유찰'만 적으면 부족하며, 최초 입찰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Q. 특허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특허 등록된 핵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등한 성능의 대체품이 없어야 합니다. 사유서에 특허 등록번호·유효기간·권리자, 대체 불가 사유, 상대자가 특허권자(또는 정당한 실시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justification>

47. 수의계약 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추정가격 한도 기준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 한도)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가. 공사: 종합 4억원, 전문 2억원, 기타 1.6억원 이하 나. 물품의 제조·구매: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다. 용역: 2천만원 이하 (청년창업 5천만원, 소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1억원) 주의: 동일 구조물의 공사, 동일 품목의 물품, 동일 성격의 용역은 1건으로 보아 추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분할계약 금지)

시행령

수의계약 금액 기준 종합표 계약종류 수의한도 1인건적 2인건적 물품구매 2천만원 (특례 1억)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용역 2천만원 (특례 1억)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공사 (종합) 4억원 2천만원 이하 2천만~4억원

시행규칙

추정가격 산정 시 포함/불포함 항목 【포함】 • 물품가격, 용역대가, 공사비 • 부가가치세 (부가세 포함 계약 시) 【불포함】 • 부가가치세 (부가세 별도 계약 시) • 관급자재비 • 지급자재비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공사 종류 구분 오류 (종합 vs 전문 vs 기타) → 금액 기준 착오 부가세 포함/미포함 혼동 → 수의계약 한도 초과 특례 대상 업체 요건 미확인 (청년·소기업 등) → 1억원 한도 부적정 적용 법 개정 반영 지연 → 구법 기준으로 계약 체결 실무 적용 포인트 수의계약 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4억원, 전문공사 2억원, 기타공사 1.6억원 이하이며, 물품·용역은 일반 2천만원, 청년창업기업·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특례대상은 5천만원~1억원입니다. 중요: 추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계약금액(공급가액)만 보고 판단하면 한도 초과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추정가격이 한도를 초과하였으나 수의계약 체결" (계약방법 위반) • "특례 요건 미확인으로 1억원 한도 부적정 적용" (업체 자격 미확인) •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계산하여 한도 초과" (추정가격 산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한도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수의계약 한도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시 부가세 별도 4,500만원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Q. 설계용역과 공사를 합산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산정하나요?

A. 아니요. 설계용역과 공사는 별개의 계약이므로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단, 동일 용역을 분할하면 안 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rivate-contract-limit>

48. 공공조달 개론

공공조달의 정의, 기본 원칙(경쟁·투명성·공정성), 참여자(발주기관·공급자·조달청), 법적 체계 개요.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1권 핵심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공공조달의 법적 정의와 근거 ### 조달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고, 조달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과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란 수요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제조·가공·수리·임차하거나 설치·시공하는 물자 및 시설공사를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는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청"이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조달사업을 총괄하고 수요기관의 조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공공조달의 정의와 범위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 시장에서 **재화(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조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물품 조달**: 소모품, 장비, 비품 등 유형의 재화 구매 - **용역 조달**: 청소, 경비, 컨설팅, IT 등 서비스 구매 - **공사 조달**: 건축, 도로, 시설 등 건설공사 발주 ###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경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6조 (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계약의 공정성·투명성·경쟁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과 조달 방식 분류 ###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 5가지 | 원칙 | 내용 |-----|-----| **경쟁성** | 가능한 한 많은 공급자가 참여하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 | | **투명성** | 조달 과정(공고·심사·낙찰·계약)을 공개하여 외부 감시와 사후 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 **공정성** |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기준을 적용하고, 특혜나 차별을 배제 | | **효율성**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실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 | **책임성** | 조달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과 담당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감사·평가에 응함 | ### 조달 방식 분류 **1. 경쟁 방법** | 방식 | 개요 |-----|-----| **일반경쟁입찰** |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입찰. 원칙적 방식 | | **제한경쟁입찰** | 실적·면허·지역 등 일부 요건으로 참가자를 제한하는 입찰 | | **지명경쟁입찰** | 발주기관이 특정 적격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방식 | **2. 비경쟁 방법** | 방식 | 개요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특정 공급자와 직접 계약.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 | ### 조달 물품 분류 | 구분 | 정의 | 예시 |-----|-----|-----| **물품** | 동산() 형태의 유형 재화 | 컴퓨터, 차량, 사무용품, 소모품 | | **용역** | 노무·기술·지식 등 서비스 제공 | 청소용역, 경비용역, 컨설팅, SW 개발 | | **공사** | 토지에 정착하는 건설·설치 공사 | 건축공사, 도로공사, 전기공사 | ### 주요 참여자 | 참여자 | 역할 |-----|-----| | **수요기관 (발주자)** | 조달 수요를 발생시키고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 **공급자 (계약상대자)** | 물품·용역·공사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 **조달청** | 수요기관 대신 조달을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중앙조달기관. 나라장터 운영 주체 |

시행규칙

나라장터(G2B) 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개요 **나라장터(G2B, Government to Business)**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 **운영기관**: 조달청 - **접속 주소**: www.g2b.go.kr - **연간 처리 규모**: 약 180조원 (전체 공공조달의 70% 이상) ### 나라장터에서 처리되는 업무 | 업무 | 내용 |-----|-----| | **입찰공고** | 수요기관이 구매 수요를 나라장터에 공고. 전국 단위 공개 | | **전자입찰** | 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입찰서 제출 | | **전자계약** | 낙찰 후 계약서를 전자 서명으로 체결 (종이 계약 대체) | | **대금지급** | 기성금·준공금 청구 및 지급 처리 | | **계약이행 관리** | 납품 확인, 검수 결과 등록, 하자보증 관리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vs 일반 입찰 비교 | 구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일반 입찰 |-----|-----|-----| | **개념** | 미리 협상된 가격·규격의 제품을 쇼핑몰에서 즉시 구매 | 개별 발주마다 입찰 절차를 거쳐 공급자 선정 | | **절차** | 쇼핑물 검색 → 주문 → 납품 (1~3일) | 공고 → 입찰 → 개찰 → 계약 (2주~수개월) | | **적합 품목** | 규격·가격이 표준화된 소모품·장비 | 맞춤 제작, 대형 공사, 전문 용역 | | **가격 결정** | 조달청이 사전에 계약한 단가 | 입찰 경쟁으로 결정 | | **장점** | 절차 간소, 신속 구매 | 경쟁으로 가격 인하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조달청이 없으면 공공조달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조달청은 대행·지원 기관이며,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규모 구매나 표준화된 물품은 조달청을

통한 대행 조달이 효율적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단가계약을 활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Q. 공공조달과 정부구매는 같은 말인가요?

A.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다만 '공공조달'이 더 넓은 개념으로, 국가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구매까지 포괄합니다. '정부구매'는 국가기관(중앙정부)의 구매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서는 '공공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Q. 민간기업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나라장터(G2B)에 조달업체로 등록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 나라장터 업체 회원가입 → 해당 분야 면허·자격 등록 순입니다. 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public-procurement-overview>

49. 적격심사 탈락 사유

2억원 이상 입찰에서 95점 미만 시 탈락. 가격점수·비가격점수 합산으로 평가하며, 서류 미비나 점수 부족이 주요 사유

법령 기준일: 2026.06.03

법률

지방계약법 제13조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 (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적격심사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을 위임 구조** 법률(제13조) → 시행령(제42조) → 집행기준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점수 산정, 통과 기준 등)은 시행령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적격심사 세부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적격심사 대상 금액 | 계약 종류 | 적격심사 필수 금액 | |-----|-----|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물품 제조·구매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중요** 2억원 미만은 최저가낙찰제, 2억원 이상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단, 300억원 이상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가능) ### 적격심사 점수 구성 | 항목 | 배점 | 설명 | |-----|-----|-----| | **가격점수** | 60~70점 | 투찰가격에 따라 자동 산정 (최저가 = 만점) | | **비가격점수** | 30~40점 | 신인도, 기술능력, 이행실적 등 | | **합계** | 100점 | ### 적격 통과 기준 적격 통과 = 95점 이상 95점 미만 = 자동 탈락 (최저가라도 낙찰 불가) **낙찰자 결정 방식:** 1. 95점 이상 업체 추림 2. 그 중 **최저가** 업체가 낙찰 → 점수가 가장 높아도 가격이 높으면 2등입니다.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 비가격점수 평가 항목 (30~40점) | 평가 항목 | 배점 | 세부 내용 | |-----|-----|-----| | **신인도** | 10~15점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계약 이행 실적 | | **기술능력** | 10~15점 | 기술자 보유 현황, 자격증 등급 | | **이행실적** | 5~10점 | 최근 3년 계약 이행 실적 | | **지역업체** | 0~5점 | 지역경제 기여도 (선택 항목) | ### 적격심사 평가서 제출 서류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인도 입증 서류** -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결과 (나라장터) - 계약 이행 실적 증명원 2. **기술능력 입증 서류** - 기술자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건설업 면허증 (공사의 경우) 3. **이행실적 입증 서류** - 최근 3년 계약 이행 확인서 - 납품·준공 증명서 **서류 미제출 = 0점 처리** 평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해당 항목 0점 처리로 95점 통과 불가능합니다.

실무 해설

적격심사 탈락 8대 사유 (실무 기준) ### 1. 점수 부족 (95점 미만) **가장 흔한 탈락 사유** - **가격점수 낮음** : 너무 높게 입찰 → 가격점수 감점 - **비가격점수 부족** : 기술자 등급 낮음, 실적 부족 **실무 팁** : - 최저가 근처로 입찰하면 가격점수 만점 - 비가격점수 35점 이상 확보 권장 --- ### 2. 서류 미제출 또는 불완전 **전체 탈락의 30% 차지** - 평가서 제출 기한 초과 - 기술자 경력증명서 누락 - 자격증 사본 미첨부 **실무 팁** : - 입찰 공고문의 '제출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작성 - 제출 기한 최소 1일 전 제출 완료 --- ### 3. 기술자 자격 미달 **공사·용역 입찰의 단골 탈락 사유** - 필수 기술자 등급 미달 (예: 초급 기술자인데 중급 요구) - 유사 실적 부족 (예: 도로공사 경험 없는데 도로공사 입찰) **실무 팁** : - 공고문의 '기술자 배치 기준' 정확히 확인 - 필요 시 외부 기술자 섭외 (용역 계약) --- ### 4.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신인도 평가 0점 처리** -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이력 - 계약 불이행·부실 시공으로 제재받은 경우 **실무 팁** :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조회' 사전 확인 - 제재 기간 만료 후 입찰 참가 --- ### 5. 이행실적 입증 실패 **이행실적 점수 0점** - 최근 3년 실적 없음 - 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하도급 실적 인정 안 됨) **실무 팁** : - 유사 계약 실적 미리 확보 - 하도급 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므로 원도급 실적 위주 --- ### 6. 지역업체 가점 오인 **지역업체 가점 오해** - 지역업체 가점은 **선택 항목**입니다. - 발주기관이 설정하지 않으면 가점 없음 **실무 팁** : - 공고문에서 '지역업체 가점 여부' 확인 - 가점 없으면 타 지역 업체도 동등 경쟁 --- ### 7. 입찰가격 착오 **가격점수 대폭 감점** - 예정가격 초과 입찰 → 자동 탈락 - 과도하게 높은 입찰가 → 가격점수 최하점 **실무 팁** : - 최저가 근처 입찰 권장 - 예정가격 추정 후 입찰 (공개된 경우 확인) --- ### 8. 평가표 작성 오류 **서식 불일치** - 발주기관 제공 평가서와 다른 서식 사용 - 필수 항목 누락 (서명, 날인 등) **실무 팁** : - 나라장터에서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공된 양식 그대로 사용 --- # 적격심사 통과 전략 (체크리스트) ### 입찰 전 점검 사항 - []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지 확인 (적격심사 대상) - [] 공고문 정독 (기술자 기준, 제출 서류, 평가 배점) - [] 비가격점수 자가 평가 (35점 이상 확보 가능한지) - [] 필수 서류 준비 (경력증명서, 자격증, 실적 증명서) ### 입찰 시 주의사항 - [] 최저가 근처로 입찰 (가격점수 만점 확보) - [] 평가서 제출 기한 엄수 (최소 1일 전) - [] 모든 서류에 서명·날인 확인 ### 탈락 시 대응 - [] 나라장터에서 적격심사 결과 조회 - [] 점수 산출 내역 확인 (이의신청 가능 여부) - [] 다음 입찰 대비 취약 항목 보완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95점 넘었는데 왜 2등인가요? A: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가 낙찰됩니다. 점수가 가장 높아도 가격이 높으면 2등입니다. **Q2. 서류 1개 누락하면 탈락인가요? A: 필수 서류 누락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로 95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필수. **Q3. 지역업체 가점은 필수인가요? A: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선택적으로 설정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점 적용됩니다. **Q4. 하도급 실적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원도급 실적만 인정됩니다. (단, 일부 공고에서 하도급 실적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탈락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탈락 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재무제표·실적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불복 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순위 입찰자가 탈락하면 2순위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기회가 부여되고, 2순위도 탈락하면 3순위로 이어집니다. 모든 입찰자가 탈락하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Q.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적격심사 서류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기한 경과 제출은 해당 항목 0점 처리되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됩니다.

Q. 적격심사의 법적 근거와 통과 방식은 무엇인가요?

A. 지방계약법 제13조(계약 이행능력 심사)에 근거하며,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합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입찰이 대상이며,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이행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 등)를 합산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최저가라도 낙찰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qualification-failure>

50. 비교견적서 수집 방법

2인 이상 견적 시 비교견적서를 수집하는 합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쟁업체 선정, 견적 요청 방법, 담합 방지까지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되는 계약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는 시행령 제3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견적 대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6억원 이하 (금액에 따라 1인 견적 가능 범위 있음) 중요: 2인 이상 견적은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요청해야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2조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시에는 견적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견적서 제출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견적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다. 2인 이상 견적 시 동시 개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순차 개봉도 가능하다. 전자견적 (G2B) 의무 대상: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공사: 금액 무관 (나라장터 사용 권장)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담합 방지: 견적 요청 시 업체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견적 개봉 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해설

person 실무자 해설 1. 비교견적서 수집이 왜 어려운가요?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실무에서 어려운 이유는: 업체를 모름: 어떤 업체가 공급 가능한지 정보 부족 견적 거부: 업체들이 견적서 제출을 꺼려함 (낙찰 가능성 낮다고 판단) 담합 우려: 업체 간 정보 공유로 가격 담합 발생 가능 시간 부족: 긴급한 사업인데 견적 수집에 시간 소요 2. 경쟁업체 찾는 방법 (합법적 절차) 방법 1: 나라장터 전자견적 (2천만원 초과 필수) 나라장터(G2B)에 견적 공고 등록 물품 분류 코드, 규격 입력 등록 업체들이 자동으로 견적 제출 최저가 업체 자동 선정 장점: 담합 방지, 공정성 확보, 업체 찾기 불필요 방법 2: 유사 사례 업체 조회 (나라장터 계약실적) 나라장터 → 계약정보 → 계약실적 검색 유사 물품/용역 검색 최근 계약 업체 목록 확인 해당 업체에 견적 요청 장점: 실제 공급 가능 업체 확인 방법 3: 업체 추천 요청 (내부 부서) 유사 사업 경험 부서에 추천 요청 기존 거래 업체 목록 확보 다양한 업체에 견적 요청 주의: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방지 위해 복수 업체 확보 방법 4: 인터넷 검색 + 직접 연락 물품명으로 검색 (예: "사무용 복합기 공급 업체") 업체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견적 요청 주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필요 3. 견적 요청 공문 작성법 필수 포함 사항: 물품/용역 규격 (상세 명시) 수량 및 납품 기한 견적서 제출 기한 (최소 3~5일 부여) 제출 방법 (이메일, 팩스, 우편 등) 담당자 연락처 견적 단가 포함 여부 (VAT 별도 or 포함) 예시 문구: 제목: 견적서 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기관 ○○부서입니다. 아래 물품 구매를 위해 견적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물품명: 사무용 복합기 - 규격: A3 컬러 출력, 분당 30매 이상, 자동급지 가능 - 수량: 5대 - 납품 기한: 2026.3.15 - 견적서 제출 기한: 2026.2.28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abc@example.go.kr) - 문의: ○○○ (02-1234-5678) 4. 견적서 1개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데 1개 업체만 제출 해결 방법: 기한 연장: 견적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 업체 발굴 규격 완화: 규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참여가 적은 경우 규격 조정 재공고: 나라장터에 재공고 (더 많은 업체 노출) 1인 견적 전환 (예외): 재공고에도 1개만 들어오면 1인 수의계약 가능 조건: 재공고 증빙 자료 보관, 사유서 작성 5. 담합 방지 방법 담합 위험: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조율하여 견적 제출 동시 개봉: 모든 견적서를 동시에 개봉하여 업체 간 정보 차단 규격 동일: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규격 제공 (특정 업체 유리 규격 금지) 시간 간격: 견적 요청 시점을 업체별로 다르게 하지 않음 전자견적 활용: 나라장터 전자견적은 자동으로 담합 방지 증빙 보관: 견적 요청 공문, 견적서, 개봉 시각 모두 기록 6. 자주 하는 실수 오류: 특정 업체에만 유리한 규격 작성 정답: 모든 업체가 공급 가능한 범용 규격으로 작성 오류: 견적서 1개만 받고 계약 체결 정답: 2인 이상 견적 필요 시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오류: 견적서 순차 개봉 후 가격 공유 정답: 동시 개봉으로 공정성 확보 7. 실무 적용 포인트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견적 의무 (가장 안전) 2천만원 이하: 오프라인 견적도 가능하나 증빙 철저히 시간 여유: 최소 5일 이상 견적 제출 기한 부여 규격 명확: 애매한 표현 지양, 구체적 수치 명시 증빙 보관: 견적 요청 공문, 견적서, 선정 사유 모두 보관 8. 감사 지적 사례 사례 1: 특정 브랜드로 규격 한정 → 경쟁 제한 지적 내용: 공정한 경쟁 저해, 계약 무효 재발 방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사례 2: 견적서 1개만 받고 계약 체결 지적 내용: 시행령 제30조 위반 재발 방지: 재공고 증빙 보관 사례 3: 담합 의심 견적 (동일 금액) 지적 내용: 공정성 의심, 재입찰 조치 재발 방지: 전자견적 활용 핵심 요약

• 2천만원 초과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활용 • 경쟁업체는 계약실적 검색으로 찾기 • 견적 요청 공문에 규격·수량·기한 명시 • 견적서 1개만 들어오면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 담합 방지: 동시 개봉, 동일 규격, 증빙 보관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의계약 시 견적서는 몇 곳에서 받아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추정가격이 소액(예: 2천만원 이하)이거나 특허품·독점공급품, 긴급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1인 견적이 허용되며, 예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전화로 가격을 확인한 것도 견적으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두(전화) 확인은 요청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견적서는 공문·이메일·팩스·나라장터 등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수령하고, 요청 기록도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Q. 같은 법인의 지점 두 곳에서 견적을 받으면 2인 견적인가요?

A. 아닙니다. 동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동일)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관계에 있는 업체의 복수 견적은 형식적 경쟁에 불과해 2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실질적 경쟁 관계인 업체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Q. 비교견적 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규격·조건으로 요청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2인 이상에게서 받은 경우 최저가 견적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2항).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규격을 작성하거나 마감 후 제출된 견적을 수리하면 감사 지적 대상이며, 견적 서류는 5년간 보관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quote-collection-guide>

51. 1인견적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소액 수의계약)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구체적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 종합 4억·전문 2억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1. 추정가격이 물품구매·용역·공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 기업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9조 (1인 견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 가능: 1. 추정가격 기준 계약종류 1인 견적 한도 물품 구매 2천만원 이하 용역 2천만원 이하 공사 2천만원 이하 2. 그 외 1인 견적 가능 사유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 필요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우선구매 대상 · 긴급한 재해복구 등

시행규칙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계약종류 1인 견적 한도 비교 물품 구매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용역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공사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특례기업: 청년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가능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2천만원 초과 건을 1인견적으로 처리 → 계약 위반 금액을 쪼개서(분할) 1인견적 범위로 축소 → 감사 1순위 지적 견적서 없이 구두 합의 후 계약 → 절차 위반 예정가격 초과 견적서 수용 → 예산 초과 집행 실무 적용 포인트 1인견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청년창업기업·소기업 등 특례대상은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동일 목적의 물품을 의도적으로 나눠서 1인견적으로 처리하는 분할계약은 법 위반이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견적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업체 날인·견적 유효기간·세부 규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를 1인견적으로 처리" (금액기준 위반) · "물품을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1인견적 적용" (분할계약 금지 위반) · "견적서 규격과 납품 물품 불일치" (계약 이행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견적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물품·용역·공사 모두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 등 특례 대상은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Q. 1인 견적 시에도 예정가격 작성이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필수이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1인 견적 대상(2천만원 이하)은 대부분 이에 해당하나, 거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작성을 권장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single-quote>

52. 소액수의

소액 수의계약 (추정가격 기준 수의계약)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위임 사항: 구체적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의 범위) 제1항 제1호 【소액 수의계약 기본 한도】 추정가격이 다음 금액 이하인 계약: 구분 금액 공사 (종합) 4억원 이하 공사 (전문) 2억원 이하 공사 (기타) 1.6억원 이하 물품·용역 2천만원 이하 (특례기업 5천만원) 2025~2026년 한시적 특례 구분 특례 금액 공사 4억원 이하 물품·용역 1억원 이하 소액수의 vs 특명수의 소액수의: 금액 기준 → 시행령 §25 1호 특명수의: 특수 사유 (긴급, 특허 등) → 시행령 §25 2~6호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소액수의계약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의계약의 절차)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될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소액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 이하**이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계약보증금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 면제 대상 | 기준 | |-----|-----| | 소액수의계약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부가세 포함 기준) |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 계약 상대방 기준 | | 계약이행각서 제출 계약 | 내부 규정에 따름 | ※ 계약보증금 면제 시에도 계약이행각서 또는 지급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즉시 납부 의무 발생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예정가격 작성 생략)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생략 시: 견적가격의 적정성을 시장조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금액이 클수록(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상당액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작성을 권장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의무 모든 수의계약(소액수의 포함)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수 기재 사항: - 수의계약 근거 조문 (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추정가격 및 수의계약 한도 이하 여부 -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견적 여부) - 계약 내용 요약 (품명, 수량, 단가, 계약금액)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제30조·제39조

실무 해설

실무 적용 포인트 소액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의계약 유형으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경쟁입찰 절차 없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용역 2천만원, 공사 5천만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공급가액만으로 판단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물품을 연간 반복 구매하는 경우 건별로는 소액이더라도 연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분할계약으로 감사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연간 단가계약 또는 총괄계약 체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주요 패턴: 연간 반복구매를 건별 소액 수의로 분할 처리 견적서 제출 없이 계약체결 사전 품의 없이 사후 품의로 처리 실무 체크리스트: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반드시 계약 전 품의 및 결재를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나 물품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1인 견적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특정 업체만 공급 가능한 경우에도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 비교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소액 수의계약이라도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은 필수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명시), 이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반복 구매 물품은 처음부터 단가계약으로 발주하여 연간 물량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감사 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수의와 특명수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소액수의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가능한 수의계약이고, 특명수의는 긴급, 특허,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수의계약입니다.

Q. 소액수의도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소액수의도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액수의"라고 기재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small-amount-contract>

53. 규격가격 분리입찰

물품 구매 시 규격(기술) 심사와 가격 입찰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규격가격 분리입찰의 적용 요건, 규격심의위원회 구성, 절차를 안내합니다. 담합 방지와 기술 중심 구매의 핵심 제도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입찰) 및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9조 (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 시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 규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가격 입찰을 실시한다. ■ 제도 취지 - 특정 업체 규격으로 인한 경쟁 제한 방지 - 불필요한 고급 규격 요구 차단 - 기술 중심의 공정한 구매 실현 - 담합 가능성 차단 (규격심사와 가격입찰 분리)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운용요령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의 분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규격가격 분리입찰을 적용할 수 있다. 규격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 수: 5명 이상 - 전문가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2/3 이상 - 내부 위원: 소속 공무원 포함 가능 규격심의위원회는 제출된 규격서를 심사하여 적정 규격을 확정한다. **절차:** 1. 구매 수요 파악 → 규격 초안 작성 2.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 규격 확정 3. 확정된 규격으로 입찰공고 4. 규격 심사 통과 업체만 가격 입찰 참가 5. 최저가 업체 낙찰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운용요령 (규격심의 실무) ### 적용 대상 | 구분 | 기준 | |-----|-----| 의무 적용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행안부 기준) | 임의 적용 | 1억원 이상 물품 (지자체 재량) | 면제 가능 | 규격이 단순·명확한 소모품 | ### 규격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 외부전문가 3명 이상 + 내부위원 - **심의 내용:** 특정 업체 규격 여부, 기술 과잉 여부, 성능 기준 적정성 - **결과:** 규격 승인 / 수정 후 승인 / 반려 ### 분리입찰의 효과 - 특정 브랜드 규격 차단 → 경쟁 촉진 - 과도한 스펙 요구 방지 → 예산 절감 - 규격·가격 분리 → 담합 차단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일반 입찰과 분리입찰 구분 착각 → 낙찰 방식 오류 규격 적격 판정 기준 미공고 → 입찰자 민원 규격과 가격 동시 개봉 → 공정성 훼손 규격 부적격 판정 사유 불명확 → 소송 위험 실무 적용 포인트 규격가격 분리입찰은 규격(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입찰 방식으로, 저가 낙찰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입찰 절차: 1단계 (규격 평가): 규격(기술제안서) 먼저 평가 → 적격·부적격 판정 2단계 (가격 개봉): 규격 적격자만 가격 개봉 → 최저가 낙찰 일반 입찰과의 차이: • 일반 입찰: 가격만 경쟁 (또는 가격+품질 동시 평가) • 분리입찰: 규격 먼저 평가 후 가격 경쟁 규격 적격 판정 기준: • 공고 시 필수 규격 명시 • 기술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 • 일반적으로 70점 이상 적격 판정 적용 대상: • 정보화 사업 (SW 개발, 시스템 구축) • 복잡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 품질이 중요한 용역 분리입찰의 장점: • 저가 낙찰 방지 (품질 확보) •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 입찰 담합 방지 (규격 평가 후 가격 개봉) 중요: 규격 적격 판정은 가격 개봉 전에 완료해야 하며, 가격을 알고 난 후 규격을 평가하면 공정성이 훼손되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규격 부적격 시: • 해당 업체는 가격 개봉 대상 제외 • 입찰보증금 반환 • 부적격 사유 통보 (소명 기회 부여) 감사 지적 패턴 • "규격 적격 기준 미공고 상태에서 평가" (절차 위반) • "가격 개봉 후 규격 평가" (공정성 훼손) • "부적격 판정 사유 불명확" (입찰자 권리 침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규격가격 분리입찰이 왜 필요한가요?

A. 특정 업체 제품만 납품 가능하도록 규격을 짜는 '맞춤 발주'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격심의위원회가 규격의 적정성을 먼저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한 규격으로만 입찰을 진행합니다.

Q. 규격심의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나요?

A. 추정가격 2억원 이상 물품 구매는 원칙적으로 규격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복사지, 사무용품 등)은 규격이 명확하므로 면제 가능합니다.

Q. 규격심사 결과 반려되면?

A. 규격심의위원회가 규격을 반려하면 해당 규격을 수정하거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반려된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내면 위법입니다.

Q. 규격 심사 통과 안 된 업체는?

A. 제출한 규격서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규격 적합 업체만 가격 입찰에 참가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spec-price-split-bid>

54. 분할계약 금지

동일 목적물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자주 발생하는 감사 지적 사례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계약) ### 분할계약 금지의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단서:**** > 같은 목적을 위한 계약이 분할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수의계약 참고사항):**** > 수의계약의 추정가격 산정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분할계약 금지의 취지 - 목적:**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경쟁입찰을 통한 적정가격 확보 - ****방지대상:**** 수의계약 기준금액(물품·용역·공사 모두 2,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 분할 - ****원칙:**** 동일한 목적물·용역을 여러 건으로 나눠 각각 수의계약 처리하는 행위 금지 **### 추정가격 합산의 법적 근거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 수의계약 기준 | 시행령 제25조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용역·공사 공통) | | 분할금지 원칙 |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27조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 합산 산정 | | 시행령 제77조 제1항 | 동일 목적 계약은 합산하여 추정가격 산정 |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계약예규 제4조 | 동일 목적의 계약은 합산하여 계약방법 결정 | **### 추정가격 산정의 원칙 (시행령 제77조) **연간 또는 회계연도 단위 합산:**** - 정기적·반복적 물품 구매: 연간 소요 예상량 합산 - 동일 장소의 공사: 전체 공사금액 합산 - 동일 업무의 용역: 계약기간 전체 금액 합산

시행령

분할계약 판단 기준 — 시행령·예규 기준 ### 분할계약 해당 여부 판단 기준 (5가지) | 판단 기준 | 분할계약 해당 | 분할계약 아님 | |-----|-----|-----| ****목적·용도**** | 동일한 목적·용도 | 서로 다른 목적·용도 | | ****물품·규격**** | 동일 또는 유사한 규격 | 명확히 다른 규격·품목 | | ****예산과목**** | 동일한 세목·비목 | 서로 다른 예산과목 | | ****시기·장소**** | 동시기·동일 장소 필요 | 시·공간적 독립성 명확 | | ****계약상대자**** |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 | 독립적 경쟁으로 각각 선정 | **### 분할계약으로 보는 사례 (판단 예시) **예시 1 — 분할계약 해당:**** - 사무용품 구매: 1월 1,800만원 + 3월 1,900만원 → ****합산 3,700만원**** (물품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 → 분할계약) - 동일 청사 소규모 보수: A동 1,500만원 + B동 2,000만원 → ****합산 3,500만원**** (공사 수의계약 기준 2,000만원 초과이며 동일 공사로 분할계약에 해당) ****예시 2 — 분할계약 아님:**** - 서로 다른 사업 목적의 별도 구매 (차량 수리 + 사무용품 구매) - 예산이 별도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구매 필요성이 독립적으로 발생 - 긴급 상황으로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단, 사유 명시 필요) **### 정당한 분할의 요건** 분할이 허용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독립된 사업목적:**** 각 계약의 목적이 서로 독립적으로 구별됨 2. ****예산의 독립성:**** 서로 다른 예산과목에서 집행되고 목적도 다름 3. ****긴급·불가피 사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추가 계약이 불가피 (사유 명시 필요) 4. ****전문 분야 분리:**** 전문 면허가 다른 별개의 공사·용역 **### 소액수의계약 기준 금액 | 계약 유형 | 수의계약 기준 | 주의사항 |** |-----|-----|-----| | ****물품·용역****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공사**** |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 부가세 제외 기준 | | ****합산 산정**** | 연간 또는 동일 목적 전체 | 정당한 이유 없는 분할 금지 |

시행규칙

분할계약 금지 실무 적용 기준 ### 분할계약 의심 패턴 점검 담당자가 계약 체결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사항:** 1. 이번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계약을 과거 1~3개월 내에 체결한 적이 있는가? 2.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품목·규격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것은 아닌가? 3. 각 계약의 추정가격은 얼마이며, 합산하면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는가? 4. 분할이 필요한 정당한 업무상 이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 분할계약 예방 절차 | 단계 | 내용 | 담당자 |** |-----|-----|-----| | ****연초 수요조사**** | 연간 소요 물품·서비스 일괄 수요 파악 | 부서별 | | ****통합구매 검토**** | 동일 목적의 건을 통합하여 입찰 가능 여부 검토 | 계약담당 | | ****계약방식 결정**** | 합산 추정가격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 계약담당 | | ****문서화**** |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문서로 남김 | 담당자 | **### 기획재정부 기준 분할계약 여부 판단 흐름** 1. ****동일 목적·규격 여부**** → 동일하면 합산 검토 2. ****합산 추정가격**** →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 확인 3. ****분할 사유**** → 정당한 분할 사유가 있는가? 4. ****계약방식 결정**** → 사유 없으면 합산 기준으로 계약방식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동일한 목적의 물품·공사·용역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계약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입찰 회피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됩니다.

Q. 분할계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목적·용도의 동일성, 규격의 동일·유사성, 예산과목의 동일성, 시기·장소의 동일성, 합산 추정가격의 수의계약 기준 초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2,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공사는 추정가격 4,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입니다.

Q. 긴급 상황에서 추가 구매도 분할계약인가요?

A.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의 추가 구매는 분할계약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긴급성의 사유와 불가피성을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Q. 분할계약 적발 시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담당자 경고·정직 등 징계, 계약 취소 및 재입찰 명령, 부당 지급분 환수, 관여 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 자격 제한)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split-contract>

55. 분할발주 금지

하나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 지적 1순위 사항으로 관련자 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는 것은 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발주 등의 제한)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분할발주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행위: •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서 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만드는 행위 •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행위 • 수의계약 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기를 나누어 계약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핵심: 사업의 동일성 판단 기준 → 목적, 내용, 시기, 장소가 동일한지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규칙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4조 (분할발주 금지) 동일한 사업은 총액을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부득이하게 분할하는 경우에도 입찰 또는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동일 사업 판단 기준: • 사업 목적의 동일성: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인가? • 사업 내용의 동일성: 유사한 공종, 물품, 용역인가? • 시간적 연속성: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사업인가? • 공간적 연속성: 같은 장소 또는 연결한 지역인가? 정당한 분할 사례: • 긴급한 사업과 일반 사업의 분리 (시급성 차이) • 예산 연도가 다른 사업 (회계연도 구분) • 공종이 명확히 다른 사업 (건축 vs 전기 등) • 발주 시기가 6개월 이상 차이 나는 사업

실무 해설

person 실무자 해설 1. 분할발주가 왜 금지되나요? 수의계약 한도를 회피하여 경쟁입찰을 피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쟁성 저해: 입찰로 했다면 더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는데 부당하게 수의계약 특정업체 특혜: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사업 분할 예산 낭비: 경쟁 없는 계약으로 고가 계약 가능성 부패 위험: 담합, 청탁 등 비리 발생 소지 감사원, 행안부, 지방의회 등에서 감사 지적 1순위로 적발하며, 관련자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됩니다. 2. 분할발주 위반 사례 위반 사례 1: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갬 사업: 학교 건물 전체 리모델링 (총액 5억원) 분할: 1층 리모델링 1.8억원, 2층 리모델링 1.9억원, 3층 리모델링 1.3억원 문제: 동일한 목적(리모델링)을 총액으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총합공사 4억원 이하) 올바른 방법: 총액 5억원으로 입찰 위반 사례 2: 물품을 시기별로 분할 사업: 사무용 복합기 20대 구매 (총액 5천만원) 분할: 1차 10대 (2,500만원), 2차 10대 (2,500만원) - 1개월 간격 문제: 동일 규격 물품을 시기만 나누어 2인 견적 회피 올바른 방법: 총 20대로 나라장터 전자견적 (2천만원 초과) 위반 사례 3: 용역을 구간별로 분할 사업: 도로 전체 구간 보수 (총 1km, 3억원) 분할: 0~300m (8천만원), 300~600m (1.1억원), 600~1000m (1.1억원) 문제: 연속된 도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 올바른 방법: 전체 1km로 입찰 3. 정당한 분할 vs 부당한 분할 구분 정당한 분할 부당한 분할 시기 예산연도가 다름(2025년 vs 2026년) 같은 달에 2회 계약(2026.3.1, 2026.3.15) 공종 건축 vs 전기설비(공종이 명확히 다름) 건축 공사를 총액 분리(동일 공종) 장소 A동 vs B동(별도 건물) 같은 건물 1층 vs 2층(연속된 공간) 목적 신축 vs 리모델링(사업 목적 다름) 같은 리모델링 사업(목적 동일) 긴급성 긴급 vs 일반(시급성 차이) 모두 일반 사업(시급성 동일) 4. 감사 지적 시 처벌 행정적 처분: • 계약 무효 또는 해지 •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산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인사상 처분: • 담당 공무원: 경고 ~ 감봉 (고의성 있으면 정직 가능) • 결재권자: 주의 ~ 경고 • 반복 위반 시: 징계 수위 상향 형사상 처벌: • 특정 업체와 담합하여 분할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 • 금품 수수 시: 뇌물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5. 자주 하는 실수 오류: "예산이 연도별로 나뉘어 있으니 분할 계약해도 되겠지?" 정답: 예산 연도가 다르면 정당한 분할이지만, 같은 회계연도 내 분할은 위법 오류: "공종이 다르니까 분할해도 되겠지? (건축 + 전기)" 정답: 공종이 명확히 다르면 정당하지만, 애매한 경우 총액으로 입찰 후 분리 발주 오류: "긴급한 부분만 먼저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답: 긴급한 부분은 별도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하나, 사유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6. 실무 적용 포인트 사전 검토: 유사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 (최근 6개월 내) 총액 계산: 동일 목적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사유서 작성: 불가피하게 분할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 명시 증빙 보관: 분할이 정당함을 입증할 자료 (예산서, 설계서 등) 법무 자문: 애매한 경우 법무팀 또는 감사팀에 사전 문의 7.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자가 점검 항목: 최근 6개월 내 유사 사업이 있는가? 사업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가? 같은 장소 또는 연속된 공간인가? 같은 회계연도 내 계약인가? 공종이 명확히 구분되는가? 분할 사유가 합리적인가? 총액 기준으로 입찰 대상인가? 하나라도 의심스러우면 총액으로 입찰하세요! 8.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사례 1: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을 남자·여자 화장실로 분할 계약 지적 내용: 동일 사업을 공간별로 분할, 시행령 제77조 위반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경고, 예산 회수 재발 방지: 전체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입찰 사례 2: 사무용품 구매를 월별로 나누어 12회 수의계약 지적 내용: 연간 총액 1억원인데 월 800만원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감봉 재발 방지: 연간 단가계약 또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사례 3: 도로 포장 공사를 구간별로 3회 분할 지적
내용: 연속된 1km 도로를 300m씩 분할 조치: 계약 무효, 담당자 정직 1개월 재발 방지: 전체 구간으로 입찰 핵심 요약 • 동일
목적·내용 사업은 총액으로 계약방법 결정 • 수의계약 한도 회피 목적 분할은 엄격 금지 • 감사 지적 1순위, 징계 및 계약 무효
처리 • 정당한 분할: 예산연도 다름, 공종 명확히 다름, 긴급성 차이 • 의심스러우면 총액 입찰 또는 법무팀 자문 면책: 본 해설은
일반적인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기관 내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할계약과 합법적인 분리발주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핵심은 인위적 의도와 경쟁 회피 목적입니다. 업무 성격상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계약(예: 건축공사와 전기·소방 전문공사)은 적법한
분리발주입니다. 반면 하나로 발주해야 할 사업을 경쟁입찰·수의계약 한도 이하로 쪼개는 것은 위법한 분할계약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Q. 분할계약이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담당자는 징계(감봉·정직·파면 등)와 변상 책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배임·직무유기)을 받을 수 있고, 계약 자체가 취소·재입찰되며
관련 업체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1순위 항목입니다.

Q. 비슷한 물품을 연간 여러 번 구매하면 분할계약인가요?

A.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추가 수요이거나 집행 시기가 다른 경우는 분할계약이 아닙니다. 문제는 합산하면 입찰 의무 금액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목적의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약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7조
제2항).

Q.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발주해야 하나요?

A. 연간 소요량을 예측하여 단가계약 또는 연간 구매계약 방식으로 일괄 입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 분할계약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split-contract-prohibition>

56. 하도급

하도급의 허용 범위, 통지 의무, 대금 지급, 재하도급 제한 등 하도급 관리 실무를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18조 (하도급의 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자)의 시공능력 등이 부족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하도급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 이행의 품질 확보와 불공정 하도급 방지 - ****성격:**** 계약상대자의 이행 책임을 전제로 부분적 하도급 허용 - ****핵심 원칙:**** 일괄하도급(전부 하도급) 금지, 통지 의무 - ****위임:**** 하도급 통지, 제한, 대금 지급 등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하도급은 전문 분야의 효율적 시공을 위해 허용되나, 일괄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원도급자가 이행 불능 시 보증금 귀속 - ****제16조 (검사):**** 하도급 부분을 포함한 전체 이행에 대해 검사 -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 발생 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제31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 하도급 시 제재 가능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도급 관련 조항 **###** 제56조 (하도급의 통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 사항 | 내용 | |-----|-----| ****하수급인**** |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 내용**** | 하도급 공종·범위·금액 |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 ****하도급 사유**** | 하도급이 필요한 사유 | ****시공능력**** | 하수급인의 등록·면허·실적 등 | 통지 시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도급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7조 (하도급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일괄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다시 하도급(재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의 비율에 관한 제한: | 구분 | 하도급 제한 비율 | |-----|-----| ****일반 원칙**** |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 | ****전문공사**** | 해당 전문공사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 ****공동도급**** | 각 구성원의 분담 부분에 대해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 계약의 성질상 직접 이행이 필요한 경우 -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한 경우 -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58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건: | 직접지급 사유 | 내용 | |-----|-----| ****원도급자 부도·파산**** | 원도급자가 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하수급인 직접지급 요청****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원도급자가 동의한 경우 | ****원도급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 직접지급 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 직접지급한 금액은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으로 간주**** **###** 하도급 관련 벌칙·제재 - 일괄하도급 적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하도급 통지 의무 위반: 시정 요구, 반복 시 제재 -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하도급 관리 절차 ****전체 흐름:**** 하도급 사전 통지 → 하수급인 적격 심사 → 하도급 계약 체결 → 이행 중 관리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준공 시 하도급 부분 검사 **###** 하도급 통지 접수 시 확인 사항 |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 일괄하도급 여부 |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하도급 아닌지 | 하수급인 자격 | 해당 공종 면허·등록 보유 여부 | 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의 50% 이상 직접 시공 여부 | 하도급대금 적정성 | 부당하게 낮은 금액 아닌지 |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받은 부분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지 | **###**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60일 초과 시 ****지연이자**** 발생 (연 이율 고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하도급법 제14조):**** -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등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미지급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규정 ****일괄하도급 금지 (제29조):****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불가 - 주요 부분: 총 공사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재하도급 제한 (제29조의2):****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불가**** (원칙) - 예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 제한:**** -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전문건설사업자: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50% 이상 직접 시공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능 - 부당하게 낮은 금액의 하도급 시 시정 요구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하도급 신고 누락 →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임에도 원수급인에게

지급 → 법 위반 불법 재하도급 방치 → 발주기관 책임 문제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목인 → 하도급법 위반 방조 실무 적용
포인트 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발주기관도 하도급 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도급 신고 의무 (하도급법 제13조):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 용역: 3억원 이상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신고 필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하도급법 제14조): • 건설공사 5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불법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법 제14조의2): • 원수급인이 받은 하도급을 다시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외: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 발주기관의 하도급 관리 의무: • 하도급 신고
접수 및 확인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의무 대상) • 불법 재하도급 확인 및 시정 조치 •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여부 점검 중요: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발주기관이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주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 지적 패턴 • "하도급 직접지급 의무 대상을 원수급인에게 지급"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 신고 누락 확인 소홀" (관리 의무
소홀) • "불법 재하도급 방치" (하도급 관리 부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도급과 일괄하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하도급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도급금액의 50% 미만이면 허용됩니다(사전 통지 필요). 일괄하도급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금지됩니다.

Q. 하도급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하도급 계약 체결 전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정보, 하도급 공종·금액·비율, 사유를 기재하고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Q. 재하도급은 허용되나요?

A. 하도급받은 부분 전부의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공사 중 업종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한 부분 재하도급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원도급자 부도·파산, 원도급자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합의, 원도급자의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Q.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은?

A.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출처: <https://silmu.kr/topics/subcontract>

57. 단가계약

품목별 단가를 미리 계약하고 필요 시 수량을 정해 납품·이행하는 단가계약의 요건, 체결 절차, 이행 관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총액계약과의 차이와 수요기관 발주 절차도 포함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04.29

법률

지방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제22조 (단가계약)**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단가의 적정성, 예정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 위임 체계 법률은 단가계약의 허용 요건과 상한금액 설정 의무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과 운영기준으로 위임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71조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단가계약 체결)** 단가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체결할 수 있다. 1. 품목의 성질상 미리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2. 같은 품목을 여러 수요기관이 이용할 경우 3. 계속적으로 소량씩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가계약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이행 요청)** 수요기관은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이행)을 요청할 때에는 발주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주서에는 품목, 수량, 납품 장소 및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상한금액 이내에서 수요기관별로 발주한다.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단가계약 실무) ### 단가계약 vs 총액계약 비교 | 구분 | 단가계약 | 총액계약 | |-----|-----|-----| 수량 확정 | 계약 시 미확정 | 계약 시 확정 | | 금액 기준 | 단가 × 발주 수량 | 전체 계약금액 | | 적합 물품 | 소모품, 반복 발주 | 단일 프로젝트 | | 이행 방식 | 발주서별 이행 | 계약 일괄 이행 | ### 단가계약 적합 품목 - **소모성 물품**:
복사지, 사무용품, 청소용품 - **반복 서비스**:
시설 유지보수, 청소용역 - **다빈도 수리**:
차량 수리, 장비 유지 ### 이행 절차 1. 단가계약 체결 (품목별 단가 확정) 2. 수요기관 발주서 발행 3. 계약상대자 납품·이행 4. 검수·검사 5. 대금 지급 (발주서별)

실무 해설

실무자 해설 자주 하는 실수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구분 착오 → 대금 산정 오류 단가계약 한도(총 공급 한도) 초과 발주 → 계약 위반 실제 수량 확정 전 총액 지급 → 예산 부당 집행 단가 조정 조항 누락 → 물가변동 시 분쟁 실무 적용 포인트 단가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단가만 결정하고, 실제 공급 시 수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단가계약 vs 총액계약: • 총액계약: 수량·금액 모두 확정 (일반적 계약) • 단가계약: 단가만 확정, 수량은 필요 시 발주 단가계약 적합 사례: • 수량 예측이 어려운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유류 등) • 수시로 필요한 물품 (인쇄물, 간식, 청소용품 등) • 기간 중 여러 차례 공급받는 물품 단가계약 체결 시 명시 사항: • 품목별 단가 (부가세 포함 여부 명시) • 총 공급 한도 (계약기간 중 총 공급 가능 최대 금액) • 계약기간 (보통 1년, 회계연도 기준) • 발주 방법 (전화, 이메일, 전자발주 등) • 단가 조정 조건 (물가변동 시) 대금 지급 방법: • 실제 공급받은 수량을 확인 (검수) • 단가 × 수량 = 지급액 산정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 총 공급 한도: • 계약 시 정한 최대 금액까지만 발주 가능 • 한도 초과 시: 추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 필요 주의: 단가계약은 총 공급 한도 기준으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므로, 단가는 낮아도 총 한도가 수의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 패턴 • "총 공급 한도 초과 발주" (계약 위반) • "실제 공급받지 않은 수량에 대해 대금 지급" (예산 부당 집행) • "단가계약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 적용" (계약방법 오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가계약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입찰·재계약이 필요합니다.

Q. 단가계약인데 수량이 예상보다 많으면?

A. 계약서에 명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만 발주할 수 있습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입찰을 해야 합니다. 상한금액 없이 무제한 발주는 위법입니다.

Q. 여러 수요기관이 같이 쓸 수 있나요?

A. 네. 단가계약의 장점 중 하나가 여러 수요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산하 각 학교가 발주서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서 없이 납품 요청하면 안 되나요?

A. 단가계약에서는 반드시 발주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두로 납품 요청하고 나중에 발주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